

선거보도 심의 사례 분석

권 오 근

언론중재위원회 심의팀장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심의팀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실무 담당

I.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 동조 제4항을 통해 우리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도 제4조 제1항¹⁾에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일상적인 보도에서 언론보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양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보도에서는 선거라는 보도환경의 특수성과 선거보도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선거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녔다는 점 등으로 언론의 자유보다는 국민기본권 보호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는 '신문·방송·통신·잡지·인터넷 언론 등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언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거 때마다 언론 매체들은 후보자들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기사들을 다량으로 생산해 내고, 이러한 기사는 곧바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후보자들의 당락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언론의 선거보도는 선거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 정치가 정착돼 가고 미디어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러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유권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선거보도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있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보도 유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의 심의대

1)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함.

**선거보도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언론은 유권자가 최적의 선택 할 수 있도록
불편부당한 보도태도 갖춰야**

상인 일간신문 등 인쇄매체를 중심²⁾으로 살펴보고 불공정보도의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예방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국내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 선거 등으로 대별되지만 각 선거별 선거보도 양태의 차(差)가 크지 않아 최근 두 선거 관련 보도의 사례분석이 근래의 선거보도 전반에 있어 나름대로 대표성을 띤다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선거보도의 일반적 유형

1.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의 공약 보도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의 공약 보도는 선거보도의 가장 바람직한 보도유형이라 할 수 있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이 시대의 정치상황에서 언론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지지정당을 선별하게 된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후보의 공약보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메니페스트(menifest)운동³⁾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후보공약에 대한 언론의 검증보도를 통해 유권자는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쉽게 파악하게 되고 지지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2. 여론조사 결과 인용보도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보도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보도 유형이다. 각 선거의 경선과 공천과정에서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언론사는 여론조사 자체가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들(과학적 조사방법, 표본의 대표성 등)을 지니고 있어 선거보도 시 수시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시의성 있는 조사공표가 주를 이루지만 시기별 추이분석보도, 과거 특정시기 조사의 재차 인용보도 등과 같이 보도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3. 정당관계자 및 후보자 인터뷰

인터뷰 기사의 대부분이 정당 및 후보의 홍보내용으로써 선거전략, 의정실적, 공약, 인생역정 등을 바

2) 선거보도심의기구가 매체유형별(인쇄매체, 방송, 인터넷)로 삼분되어 있으나 각 기구의 심의기준과 결정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과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각 심의기구의 심의결과를 소개하는 선에서 정리함.

3)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계량화하여 유권자가 투표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운동으로써 그 평가기법[스마트(SMART) 지수]은 첫째가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둘째가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셋째가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 넷째가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다섯째가 추진 일정을 명시하였는가(Timetable) 등이며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산정함.

탕으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제반 사항이 다뤄지고 있다. 군소정당·무소속, 정치신인 등과 같은 소수자 인터뷰 기사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 사실, 논평, 칼럼을 통한 비판보도

언론은 사실과 논평을 통해 선거의제를 제시하거나 선거환경을 감시하여 옳고 그름을 비판·보도한다. 후보자는 특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칼럼을 통해 알리고 선거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제3자의 칼럼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5. 정당 및 후보자 광고

대부분의 선거보도가 언론의 능동적 취재에 따라 이뤄지지만 정당 및 후보자의 광고는 정당과 후보

자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간에 제한된 횟수의 정강·정책, 정견 등을 언론을 통해 공표⁴⁾하고 있다.

Ⅲ. 불공정 선거보도 유형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

1.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경우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편향된 기사가 게재된 경우는 대부분이 ① 편파적인 기사와 함께 인물 사진이나 활약상(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담긴 사진을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하거나 ② 경력, 의정활동, 공약, 정견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하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③ 과도한 비난으로 폄하하거나 ④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동정만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거나 ⑤ 보도제목을 과장·왜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표 1> 참조).

<표 1> 편파보도에 대한 각 심의기구별 결정(제재조치)건수

(자체심의건)

편파보도 유형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기사·사진 양적 과다	4	27	2	-	14	45
정당·후보 상세 소개	6	16	2	4	7	13
정당·후보 폄하	-	-	5	-	14	19
특정 정당 소속 후보 위주 선별 소개	-	5	1 (출연자 구성 불공정)	-	4 (보도량 불균형)	-
정당·후보 사실(논평)	지 지	4	1	-	-	-
	편 하	4	1	-	-	-
보도제목 과장·왜곡	1	1	-	-	9	8
계	19	51	10	4	48	85

4) 선거법 제69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 횟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7조 제1항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중앙당)의 광고를 일정 횟수에 한해 허용함.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관련 보도 중
선심위를 통해 불공정 보도로 지적된 사례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편파보도

(시정요구건)

편파보도 유형	선거기사심의회		선거방송심의회		인터넷선거제도심의회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기사·사진 양적 과다	-	1	-	-	-	-
견해 불균형	-	-	-	-	1	-

〈표 1〉과 같은 선심위의 편파보도에 대한 선별은 법적 개념인 ‘공정성’의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제도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선심위의 결정은 처벌에 준하는 징계조치에 가깝다. 선심위의 결정이 징계조치의 성격을 지닌 이상 객관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보도에 대해서는 그 위반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선심위는 가급적이면 편파보도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보도’로 한정짓게 되었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불편부당’과 ‘기회균등’을 그 판단의 적정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정당 및 후보에 대한 ‘불편부당’과 ‘기회균등’ 보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계적 형평성 준수에 의해서가 아닌,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편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과다한가에 따라 정해지고, ‘그 기사로 인해 유리한 정당 또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정당 또는 후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면서 유·불리를 의도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나타내는가를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려진다.

선심위가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을 통해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지적한 전체 132건 중 대부분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편파보도로써 71건(53.8%)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의 편파보도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유형이 거대 정당 소속 후보자

또는 유력 후보자에 대한 기사의 양적 과다 배분과 그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보도라 할 수 있다. 이들이 71건 중 각각 32건(45.1%), 22건(31%)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편파 보도건이 10건(14.1%),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만을 언론이 자의적으로 선별해 이들의 동정을 보도한 건이 5건(7%), 기사 본문과 제목이 서로 상반되게 왜곡·과장된 건이 2건(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보도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언론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유·불리하게 하는 기사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 및 후보에게 유리한 찬사일변도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당과 후보가 홍보수단으로 언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언론이 유권자에 대한 알 권리 충족 또는 정보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과 후보의 홍보성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경선과 공천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시작된 홍보성 기사는 대체적으로 단독 인터뷰 형식의 기획기사가 많았는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부각·보도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할 수 있다. 물론 언론이 특정인을 선정해 인터뷰, 대담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 고유의 편집권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나 일반 기사가 아닌 선거 기사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공정성·형평성 준수 의무는 언론

의 특정 후보에 대한 의도성 있는 자의적 선별·보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보도는 마땅히 제재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폼하보도로 문제가 된 건은 7.1%(5/71)에 불과했다. 이러한 폼하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폼하보도가 거의 대부분 사실, 칼럼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 의견기사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여타 편파보도에 비해 언론의 능동성·적극성이 반영되는 의견, 평가기사는 언론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심색선으로써 선심위도 일반 스트레이트성 기사와는 달리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의도성·노골성이 내용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공정성 위반으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에 대한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는 여느 때의 선거보도보다 거대 정당, 유력 후보위주의 보도가 많았다. 이러한 보도 속에 군소정당, 무소속, 무명의 정치신인 등 소수세력은 유력 정당·후보 주연의 선거보도 시리즈에 등장한 조연 역할에 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획일적인 유력 후보 위주의 보도는 설령 지면과 시간의 제한이라는 보도한계를 인정한다면 할지라도 선거라는 특수 환경에서 군소 정당 및 약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언론의 노출 정도에 따라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움직이고 언론의 음·양적 지지가 유권자들을 무의식중에 따라오게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판단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선거보도 시 한정된 지면일지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도가 높거나 유력한 후보 위주의 보도를 지양(止揚)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여타 후보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루 보도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제11조 제1항⁵⁾)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제116조 제1항⁶⁾)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이에 언론사가 특정 선거의 후보 모두를 다루는 상세분석 보도 및 소개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순위, 유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참작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였다는 불균등 보도의 이유를 밝히고, 후보를 차별·보도한다면 그로 인해 특정 후보가 다소 부각·보도되어 여타 후보에 비하여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리적·상대적 차별보도가 당해 선거에서 보도횟수의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것은

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음.

6)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객관적 사실성 결여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개연성 높아

아니다. 특정한 계기와 이슈에 따른 합당한 보도만을 일회적 혹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정당 소속 후보만을 선별적으로 보도한 사례는 대부분이 영·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들이 지역 정서에 부합한 정당의 소속 후보들만을 다룬 기사다. 이러한 보도는 우리 선거문화의 가장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행태로서 탈 지역주의를 이끌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객관적 사실성이 결여된 보도

언론의 객관적 사실성 결여보도는 ①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보도하거나 ② 객관적 근거 없이 판세를 분석·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③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하는 경우 등이다(〈표 2〉참조).

선심위가 문제 삼은 객관적 사실성 결여보도는 총 8건으로 모두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보도한 경우들이다. 이들 보도는 대부분이 역술가, 풍수지리가 등의 비과학적 예측과 예언을 여과 없이 담아낸 것이다.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보도를 단순한 흥미기사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개연성 또한 높다 할 것이다.

〈표 2〉 객관적 사실성 결여보도에 대한 각 심의기구별 결정(제재조치) 건수

(자체심의건)

객관적 사실성 결여 세부 유형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선거결과 단정적 예측	8	1	-	-	8	-
허위왜곡	-	-	-	-	6	8
계	8	1	-	-	14	8

(시정요구건)

객관적 사실성 결여 세부 유형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허위왜곡	2	6	-	-	-	-

(반론보도청구회부건)

객관적 사실성 결여 세부 유형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허위왜곡	-	-	-	1	-	-

또 언론은 선거에 대한 판세분석을 주기적으로 보도하는데 그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할 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판세분석 보도와 관련해서는 선거 기간 중 객관적 근거 없이 2파전이니 양강구도니 하며 두 후보 위주로 압축·보도하거나 특정 후보 독주니 하며 한 후보만을 부각시킨 기사가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에 따른 단순 판세분석 기사는 허용되고 있다. 다만, 단순 판세분석 기사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현저하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사실을 달리 왜곡보도하는 경우다. 이들 보도는 언론이 보도 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거나 이해관계자 중 일방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그의 입장을 편향되게 혹은 사실인양 보도한 경우들이다.

허위왜곡보도건은 거의 대부분 정당 또는 후보 측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시비(是非)를 요구인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 선거 관련 기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명백한 허위왜곡이 아닌 이상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로는 시정되기가 어렵고 요구인의 입증책임 부담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선심위는 허위왜곡 보도와 관련해 시정요구건에서만 8건의 제재결정을 내렸다.

3. 후보의 칼럼을 게재금지 기간에 게재한 경우

제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국회는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등이 개최하던 연설회를 폐지했

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여, 고비용 선거 구조를 혁신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이 당시의 폐지이유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디어가 후보자 유세의 가장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인쇄매체의 경우는 후보자의 칼럼이 대표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써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칼럼이 적법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의 칼럼은 자칫 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연설 및 칼럼의 특성상 필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내용의 공정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선심위는 제17대 총선부터 게재된 칼럼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칼럼 자체를 “선거법 제93조 제2항⁷⁾에서 광고를 금한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로 보고, 제재조치를 내렸다(〈표 3〉 참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도 후보의 칼럼게재에 대해 선심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8대 총선부터 후보 칼럼게재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후

7)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선거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신문법상의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 광고는 무관).

선거여론조사 결과보고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유형은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의 공표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보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후보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다시 말해 상업광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칼럼은 분명 후보자의 저작물이고 그 저작물은 후보자 홍보를 충실히 수행한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을 의제광고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특정기간 동안은 후보자들의 칼럼을 내용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에 후보자와 칼럼기고 계약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기고계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속적으로 연재해왔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4.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문제되었던 유형은 ① 보도 시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기본 요건(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미비하거나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② 편향된 제목, 분석, 해석의 경우 ③ 객관성이 결여된 온라인포 보도 등이 있었다(〈표 4〉 참조).

선거제도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위반유형은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

〈표 3〉 후보 칼럼게재 제한 위반에 대한 각 심의기구별 결정(제재조치) 건수

구 분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후보 칼럼게재	-	25	2 (후보방송출연)	4 (후보방송출연)	-	4

※ 후보칼럼 게재와 후보 방송출연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로 봄

〈표 4〉 여론조사 보도 관련 위반 건에 대한 각 심의기구별 결정(제재조치) 건수

구 분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공표준수 요건미비	4	4	16	5	97	9
편향적 제목, 분석, 해석	-	1	-	3	-	-
조사의 공정성·정확성 결여	1 (온라인 풀)	-	1 (출연자 구성 불공정)	-	33 (온라인 풀)	-
계	5	5	17	8	130	9

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다. 이 중 가장 많이 누락되는 사항이 응답률이다. 미국의 경우, 응답률 30% 이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확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대부분 응답률이 20%대이다. 여론조사에 있어서 샘플의 대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표성 있는 샘플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응답률이 낮으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는 응답률 최소 30% 이상의 조사건 위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든지 응답률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공표준수사항의 법적 요구는 여론조사에 요구되는 과학성과 객관성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보도 시 10여 가지의 준수사항 모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질문내용의 경우는 보도공간의 한계상 전체내용 중 쟁점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으로 대체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경쟁집단 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순위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지지도 보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오차범위 내 순위는 의미가 없음에도 이를 제목 혹은 본문에서 순위를 단정적으로 부각·보도하는 경우들이다.

그리고 온라인폴을 인용·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폴은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실제 유권자가 아닌 선거법상 미성년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복수 투표도 할 수 있어 그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러모로 인터넷 여론조사는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에 있어 많은 결함이 있다 할 것이다.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선거보도에 비해 그 영향이 막대하다. 매스컴이론에서 말하는 밴드왜건(Band-wagon)이나 언더독(Underdog) 효과가 모두 여론조사 보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언론의 조사전문기자 고용 등 조사연구시스템은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여론조사 보도를 하는 경우, 보도 시 준수요건을 최대한 적시해야 할 것이며, 조사결과가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과장·왜곡돼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를 인용·보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밖에도 피조사자 선정 시 사용된 표집방법을 명시하고, 패널조사에는 최초 패널의 구성과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밝혀야 하며, 전화면접조사와 ARS 전화조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며,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경우도 그 출처를 표시하고, 지난 여론조사 결과보도의 일부만을 재차 보도할 때는 최초 보도 시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일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표금지기간 동안 시의성이 떨어지는 과거 여론조사 결과들이 특정 정당·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게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언론사의 특정 후보 지지는
국내 언론 환경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를 게재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선거 관련 광고의 보도유형으로는 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⁸⁾ ② 후보자의 저술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 또는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표 5〉 참조) 등이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정당·후보의 명목이 나타나는 의견광고는 그 광고가 의견공표의 목적 외에 특정 정당·후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위 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광고 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하는 것도 특정 후보의 당선

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행위성의견광고로 간주되므로 보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언론이 특정 후보·정당에 대해 공개 지지하는
경우

언론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와 관련해 최근 학계, 언론계 등에서는 세계적 추세⁹⁾에 따라 우리 언론도 각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정당과 후보를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지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공개지지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이중적 보도행태를 극복하고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표 5〉 광고제한 위반 건에 대한 각 심의기구별 결정(제재조치) 건수

구 분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의견광고	3	2	2 (후보방송출연)	4 (후보방송출연)	-	-
상업광고	-	6	-	-	-	1
계	3	8	2	4	-	1

8)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9) 미국(대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지지), 유럽(프랑스는 특정 후보지지, 영국·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 후보지지 보다는 특정 정당 지지).

수 있고,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라는 고정 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의 특정 후보 지지는 국내 언론 환경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미국 등 외국의 선진 언론들은 특정 후보 공개 지지를 사실을 통해 분명히 밝히면서도 사실의 입장과는 달리 일반 기사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의견과 사실의 분리전통이 확립돼 있는 반면 우리는 의견과 사실 보도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사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제6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와 제2호는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방송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운동'이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선거법 제58조 제1항)임을 비취볼 때 언론사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의 음성적 지지 방지 등과 같은 이유로 공개지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우리 언론이 처한 현실적 문제와 현행 법규를 고려할 때 특정 후보 공개 지지는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언론이 지난 선심위 설치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경우는 단 한 차례(16대 대선 당시 중앙월간지) 있었다.

IV.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결정 유형 분석 및 개선방향

1. 결정 유형 분석

선심위가 불공정 보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게재, 반론보도문 등과 같은 계재이행 명령과 경고, 주의, 권고 등과 같은 계도성 명령이 있다(〈표 6〉 참조).

선심위는 사과문 게재 명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¹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사를

〈표 6〉 각 심의기구의 결정유형별 조치건수

구 분	계재이행 명령								계도성 명령						계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반론보도문		경고		주의		권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대 선	총 선	
선거기사심의위		1	-	1	2	45	2	-	13	40	19	7	1	1	132
선거방송심의위	-	-	-	-	-	-	-	1	4	-	14	8	16	8	5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			1	18	5	-	-	77	37	98	65	3	4	308

※ 선거방송심의위의 경고와 주의는 공정보도 명령임. 인터넷선심위의 권고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공문발송임

10)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의 양심에 반하는 사죄를 강요하는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1991. 4. 1. 선고 89헌마 160결정).

**일상적 보도에 대한 언론의 기본권 보호가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제한될 필요 있어**

자제하기로 하고, 지난 17대 대선까지 단 한 건도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제18대 총선 선심위에 들어서 언론의 양심의 자유가 선거보도의 공정성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처음으로 특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렸다.

선거보도는 그 보도가 지닌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파급력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타 보도에 비해 막대하다. 따라서 일상적 보도에 대한 언론의 기본권 보호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사유인 공공복리 확보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은 한정된 선거 관련 기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정정보도 게재 명령은 명백히 사실과 달리 보도되었음이 인정되거나 언론사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내려지고 있다. 선심위는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에서 단 1건의 조치만을 취한 바 있다.

경고문 게재 명령은 선심위가 제17대 총선부터 도입한 조치로써 주로 특정 언론이 일반적인 공정성 위반으로 계도성 명령인 주의, 경고 등을 받고도 또 다시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되풀이 하는 경우 결정하는 강제이행 명령이다. 앞의 사과문, 정정보도문 등과 같은 강제이행명령의 결정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경고문게재결정이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아닌가 싶다. 선심위는 제17대 대선에서 2건, 제18대 총선에서 45건의 경고문 게재조

치를 취했는데 이는 선거마다 새로이 구성되는 선심위의 적용기준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많은 매체들이 총선의 많은 후보를 제한된 기간과 지면에서 골고루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 일부 후보를 반복적으로 부각·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론보도문 게재 명령은 정정보도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보다는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었는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청구 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론보도에 따른 청구인의 해명보도가 유권자들에게 자칫 구차한 변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과 반론보도가 특정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정리보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구절차의 번잡함 등으로 인해 정당이나 후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심위는 제17대 대선에서 2건의 반론보도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경고, 주의, 권고 등과 같은 계도성 명령의 경우, 선심위는 표현상 어감의 차이 외에 각 조치가 지니는 실질적 효력이 다르지 않음에도 공정성, 형평성 준수 위반의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별 적용하였다. 선심위는 제17대 대선에서 경고 13건, 주의 19건, 권고 1건 그리고 제18대 총선에서 경고 40건, 주의 7건, 권고 1건의 계도성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각 심의위가 지난 대선, 총선에서 내린 전체 조치 중 계도성 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선심위가 61%(81/132), 선거방송심의위가 98%(50/51),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가 92%(284/308)로 나타나, 계도성 명령에 대한 기구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방송심의위의 경고, 주의는 공개명령이라 단순 계도성명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2. 개선방향

선거법상 선심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는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게재 명령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위원회 규칙에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다. 심의위 결정은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반론보도문 등과 같은 보도이행 명령과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계도성 명령으로 양분돼 있지만 심의위 결정의 대부분은 계도성 명령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위 결정에 따른 후속·교정보도가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심의위 결정이 불공정보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과 같은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차원이 아닌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데서 초래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심의위의 소극적 조치는 동일 언론에 의한 동일 유형의 불공정 보도가 반복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구제기구인 심의위의 위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심의위의 소극적 대처가 계속되고 언론이 불공정 선거보도로 입게 되는 불명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보도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실리를 먼저 챙기는 한 특정 언론의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편향적 보도는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가 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심의기구가 이끌어 내야 할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 확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심의위는 언론보도의 지나친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다양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고, 피해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결정을 보완하는

등 결정유형의 정비 또한 조속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V. 선거제도 심의기구 개선방안

선거법에 따라 선거제도심의기구로 제15대 대통령 선거 시 방송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시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심의기구의 분산은 매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방송의 경우는 방송심의 전담 기구인 당시 방송위원회에, 인쇄매체의 경우는 인쇄매체 전담 심의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둔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그러나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가 중앙선관위 산하에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시 방송위나 언론중재위 모두 독립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구에 선거제도 심의를 함께 담당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지만 인터넷매체가 인터넷 신문이라는 간행물 개념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중앙선관위 소관에 둔 것은 합당치 않았다고 본다.

아무튼 이러한 심의기구의 분산으로 인해 후보자, 정당 등 신청인들은 피해구제를 얻기 위해 세 기구를 일일이 찾아 상이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 혼란과 불편을 느끼게 되었고, 동일한 분쟁내용에 대한 법리나 심의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필요함에도 각 기관별 심의결과가 서로 다를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었다. 실제 매 선거 때마다 여러 유형의 매체에 보도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건이 각 기구별로 접수되고 있고, 각 기구별 자체심의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피해의 구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

절차를 통해서도 개별 처리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가 특정 유형의 매체들에게만 한정돼 보도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질 매체 동일내용 보도건'에 대한 매체유형별 시정요구건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정당·후보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피해의 구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체유형을 불문하고 언론의 모든 잘못된 보도를 상시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기구로써 선거보도심의 기구의 설치와 관계없이 정당·후보자의 요구 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조정·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어디로 통합되든 언론중재위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 산하에 통합 선거보도심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매체 유형별 독립 소위를 구성해 매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이들 소위가 서로 그리고 언론중재위와 상호협력하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법이 절차와 형식에 대한 규제법이고, 언론중재법은 보도내용에 대한 심의를 토대로 한 순수 피해구제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보도의 잘못으로 인한 정당·후보자 구제차원의 심의절차를 선거법에 두는 것은 선거법의 입법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 할 수 있어 선거법상의 선거보도 심의 관련 조항을 언론중재법 하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선심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150일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에 불과한데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만 보더라도 1년여 이상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예비주자들의 행보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선거일수록 선거 관련 보도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선거법상 배제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외의 재·보궐 선거가 연중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VI.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공정 선거보도는 우리 언론이 거대정당, 유력 후보를 집중적으로 부각·보고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언론이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보도 특별취재단을 발족하고 보도준칙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언론이 정당과 후보자들의 전략적인 미디어 접근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 선거가 미디어전의 양상을 띠면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미디어 접근에 적극적이지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상 그에 대한 접

근권이 그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언론이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다는 보도 공간'을 이유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유력 정당·후보에게만 다가서거나, 매체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력 정당·후보가 다가선다고 쉽게 공간을 내준다면 합법적 선거운동의 장(場)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불균등 보도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차별보도를 한다면이라도 언론사별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별보도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이 모든 정당과 후보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정당·후보가 1위, 2위고 누가 얼마나

앞서나가고 있는지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과거 우리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른 순위 위주의 경마식 보도행태 탓이 아닌가 싶다.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거보도 관점을 바로잡을 책임은 언론에 있다. 유권자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 단지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거보도는 흥미위주의 경쟁보도가 아니다. 그들은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심층적 검증보도를 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선거보도의 궁극적 목표인 공정성·형평성 확보는 언론이 약소 정당, 후보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욕구를 받아들이는 데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보며 글을 맺고자 한다. □

지역신문에 나타난 18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논의

- 폭로, 여론조사, 연고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

이 효 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졸
- MI University of Wisconsin - Whitewater 언론학 석사 및
MI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Carbondale 언론학 박사
- 부산일보 기자, 청주총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위원
- 현(現) 언론중재위원회 총복중재위원
- 논문 및 저서 : "미디어 이용이 정치지도자
평가와 정당 지지에 미치는 효과",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의식, 16대
대선관심, 정치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1. 문제제기

유권자들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직접 접촉보다는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곤 한다. 특히 투표와 같은 정치적 행위는 이제 언론을 통해 그려지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대중적 이미지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투명하고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정치적 행위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언론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벌써 다섯 번이나 치렀다. 그 외 국회의원 총선거 및 다양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또한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미디어 선거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와 발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각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거 캠페인 보도에 있어 언론은 유권자의 정보욕구 충족이라는 본연의 공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8 총선 미디어연대'는 지역별 총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역신문이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ww.vote2008.or.kr). 신문사의 전직 임원들을 집중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에 호의적인 기사가 다른 신문보다 몇 배 가량 많았던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신문들은 편파성 폭로 기사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지면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www.hani.co.kr, 2008년 4월 3일자). 이러한 불공정 선거보도 행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할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은 물론, 지역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불공정 보도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온 언론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언론으로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그동안 지적돼온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캠페인 보도에서도 나타났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지역언론의 보도 행태를 폭로 저널리즘, 여론조사, 연고주의 저널리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들 문제와 연관 지어 지역언론 선거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2. 흥미보도와 공정성, 객관성 문제

현대 정치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 행태는 여전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이 많다. 언론은 선거 캠페인 보도에서 정책이슈와 같은 공익적 보도보다는 경마 저널리즘이나 폭로 저널리즘과 같은 흥미위주 보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언론의 행태가 유권자들의 유익보다는 흥미에 영합하는 등 선정성에 치우침으로써 선거를 단순히 흥밋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디어의 정책이슈 보도의 양은 정치집단에서 발표하는 정책이슈의 양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기간 동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도하는 이슈의 양은 정당 등 정치권에서 내놓는 이슈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raber, 1997).

우리나라 언론 역시 선거의 이슈보도에 미진한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원우현, 1988) 국회의원 선거(이관열, 1992)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이렇다 할 선거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또한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그 이슈의 중요성 보다는 흥미성 등에 뉴스가치의 주안점을 두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은 아

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된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네트워크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기사 여섯 건 중 한 건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예비후보의 섹스 스캔들, 대학생 시절 마약복용 문제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들이었다(Graber, 1997). 반면 언론은 빈곤, 환경, 노인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폭력이나 액션, 갈등과 같은 극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선거보도에서 외면하고 있다. 실업, 인플레이션, 세금 등 경제적 이슈 역시 보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저널리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평형을 잃지 않고 언론으로서의 초연함을 지키며 보도함을 의미한다(이배영 외, 2006). 특정 입장이나 사실을 다른 입장이나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양적·질적 차원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 배열, 보도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하지 않으면 사실이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윤리강령은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윤리강령을 보면 공정성은 포괄성, 형평성, 정직성, 솔직성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의 실천을 통해 도달되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주 중요하거나 특별한 요소를 제외시킨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특별한 사실을 희생시키면서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를 포함한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형평성을 의미한다. 셋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독자를 오도하거나 심지어 기만한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독자에 대한 정직성을 포함한다. 넷째, 교묘하게 멸시적인 단어들 뒤에 편견이나 감정을 숨긴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교활성이 아닌 솔직

특히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

성을 요구한다.

또한 객관성 혹은 객관 보도란 한마디로 사건을 취재·보도하는데 있어 언론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배영 외, 2006). 즉 객관보도란 기자가 관찰한바 그대로를 개인적 의견이나 편견 없이 사실적으로 보도함을 의미한다. 기자 개인적 선호에 근거한 가치 지향적 용어나 관점의 사용에 신중하며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논평이나 칼럼 등과 같은 의견기사가 아닌 보도기사(straight news)에서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본고는 이 같은 맥락에서 18대 총선 캠페인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우선 폭로 저널리즘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어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표본오차 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방법론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인 2008년 3월 27일(목)~4월 8일(화) 13일 간의 기사를 분석했다.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중에서 3개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대전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3개 지역일간지는 한국언론재단의 DB(www.mediagaon.or.kr)에 등재된 2개 지역 일간지 중에서 채택됐다. 이들 매체를 대상으로 '선거'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제

18대 총선과 관련된 기사를 추출했다. 이들 기사 중에서 '폭로성'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론조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추출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 보도행태 분석을 위해 '지역주의', '지역감정', '연고주의'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연고주의 관련 기사를 추출해 분석했다.

4. 지역일간지의 보도 분석

1) 폭로 저널리즘 분석

선거 관련 기사 중에서 폭로 저널리즘으로 분류할 만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전일보의 선거 관련 기사가 204건이었는데 이중 '폭로성' 기사는 25건에 달했다. 매일신문은 선거기사 219건 중 29건, 광주일보는 152건 중 20건이 폭로성 기사로 분류되었다. 폭로 저널리즘 기사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지역일간지의 선거 및 폭로성 기사 건수

	선거기사	폭로성 기사
대전일보	204건	25건
매일신문	219건	29건
광주일보	152건	20건

(1) 대전일보

폭로 저널리즘에 해당되는 25건의 기사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선거 운동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대전지검이 충남 연기군 재선거 관련,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이라거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한 김택기 전 후보가 측근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는 기사 등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후보들 간 부정·비리 폭로나 고소·고발 내용 자체를 보도한 기사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예를 들어 친박연대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등장시켜 ‘저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박근혜 죽이거다’라는 내용의 총선 홍보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를 다룬 기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폭로성 기사로 분류될 만했다. 4월 4일자 신문에서는 충남 부여·청양의 자유선진당 이진삼 후보가 한나라당 김학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김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이 군에 안 갔다’는 의미로 발언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및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후보가 고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후보가 유성구 무소속 이병령 후보에 대해 ‘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란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고발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의 대전일보가 4월 3일자에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항응제공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검찰에 고발됐다’ 등의 기사들도 폭로 저널리즘으로 간주할만한 내용들이었다.

(2) 매일신문

앞서 밝힌 대로 매일신문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

219건 중 폭로 저널리즘에 해당되는 기사는 모두 29건이었다. 이들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영장 신청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어 경북경찰청은 경주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주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거나 거액의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식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폭로성 주장들을 보도하는 기사도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묻지마 출마자’, ‘급조된 친박연대는 철새정당’ 등과 같은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홍지만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학위 증명서와 홈페이지 및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학위 명칭이 달라 친박연대 박종근 후보 측이 선관위에 허위학력 기재가 아니냐며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박팔용 후보 측이 금품을 돌렸다는 시민 신고가 있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도 게재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 후보 진영은 이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상호 간에 공방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구 달서을의 한나라당 권용범 후보 측은 ‘무소속 이해봉 후보가 권 후보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전형적인 폭로 저널리즘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흑색선전이나 폭로전에 대해 매일신문은 4월 4일자 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선거구일수록 수위가 높으며 흑색선전은 고발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경고’ 등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데다 대응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언론은 신중히 생각하고 보도해야**

방법도 마땅치 않아 후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처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언론도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겠다.

(3) 광주일보

선거 관련 기사 152건 중 폭로 저널리즘으로 분류된 기사는 모두 20건이었다. 광주일보에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수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광주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경선 상대후보를 비방한 광주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타났다. 선관위가 해남의 모씨가 특정 후보 진영에서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또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전개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향응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음을 우려하는 기사도 게재됐다. 이는 물론 언론으로서의 환경감시 차원에서 필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치나 유권자 의식 수준의 단면을 보여주는 폭로성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후보들 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을 기사화한 전형적인 폭로 저널리즘 행태도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4월 7일자에서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송병태 후보 자원봉사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민주당 김동철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동철 후보 측의 해명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게재한 것은 명백한 폭로 저널리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신문은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은평 뉴타운 현장을 방문해 최측근인 이재오 후보를 간접 지원하고 수도권 선거의 핵심인 통합민주당 김진표, 한명숙 후보에 대해 음해공작을 획책하며 관련선거를 통한 야당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광주일보는 이러한 통합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오히려 금권선거를 자행하고 구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불어 게재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다루고 있지만 명백한 근거 없이 후보나 정당 간 주고받는 폭로성 주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도 행태가 아니었다.

2) 여론조사 기사 분석

여론조사 기사 건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전일보의 선거 관련 기사는 204건이었는데 그중 여론조사 관련 기사는 32건이었다. 매일신문은 선거 기사 219건 중 여론조사 기사가 47건으로 수적으로는 가장 많았다. 광주일보는 선거기사 152건 중 여론조사 기사가 40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일간지의 선거기사 및 여론조사 기사 건수

	선거기사	여론조사 기사
대전일보	204건	32건
매일신문	219건	47건
광주일보	152건	40건

(1) 대전일보

공식 선거캠페인 기간 중 대전일보는 조선일보, SBS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총선 관련 2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 모두 32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중 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한 판세 분석 기사는 1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여론조사에 의하면' 식으로 출처미상의 여론조사를 기사에 인용하는 정도였다.

우선 3월 2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3월 27일자 1면과 5면에 걸쳐 2건의 기사로 게재됐다. 충청권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의 격전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처럼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와 오차범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여론조사가 충청권 5개 선거구 별로 509명 ~ 51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샘플링 절차,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어 4월 2일자에서도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27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거구에서 1, 2위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혼전양상임을 보도했다. 특히 부동층이 두터워 선거막판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27일자 보도와 달리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범위를 기사의 마지막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 보도 역시 1면 기사에서만 제시됐을 뿐 3, 4, 5면 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오차범위 등 자세한 사항이 제시되지 못했다. 물론 샘플링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합법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4월 3일자에 그동안의 자체 조사결과와 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¹⁾ 이들 기사 역시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4일자에서 '무소속 이인제 후보(19.8%)와 통합민주당 양승숙 후보(17.2%)는 오차범위 내 초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오차범위나 샘플링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여론조사를 간단히 인용하는 정도의 기사에서는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전일보는 '조선일보, SBS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가 한국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했음을 내세워 충청권 표심의 향배를 제대로 파악하는 등 각 후보별 전략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2) 매일신문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매일신문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포함해 여론조사 내용을 주로 다룬 기사는 모두 21건이었다. 나머지는 막연히 '여론조사에 의하면' 식으로 출처미상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정도의 기사였다. 이들 여론조사 인용 기사는 모두 오차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주로 여론조사를 다룬 21건의 기사에서 간략하게나마 오차범위를 언급한 기사는 3건이었다. 다시 말해 전체 여론조사 관련 기사 47건 중에서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언급한 기사는 단 3건이었다.

3월 31일자 기사에서 매일신문은 대구·안동MBC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회사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

1) 선거법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6일 전인 3월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론조사 관련 보도 시 과학적인
무작위 표집절차와 신뢰수준, 응답률 등의
정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줘야*

해 3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매일신문은 한나라당 후보와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초반에 이어 중반에도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4개 선거구별로 각각 500명 ~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과 선거구별 표본 오차 범위를 표기했다. 하지만 표집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많은 기사에서 신뢰수준이나 오차범위, 샘플 크기, 표집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일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보 간 지지율이 '표본오차 범위 내'라고 하면서도 그 표본오차 범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대구, 경북의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기사에도 유사한 보도 행태가 나타났다. 즉 첫 여론조사 분석기사의 경우는 표본오차 범위 등이 언급됐지만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다른 면이나 다른 날짜의 기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총선 투표일 하루 전이자 공식선거 캠페인 마지막 날인 4월 8일 '들쭉날쭉 여론조사... 신뢰성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론조사가 조사 주체마다 큰 차이를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조사를 하지 못해 조사결과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저조한 응답률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자체나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본과 신뢰수준, 표본오차 범위 등과 같은 과학적 절차는 물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보도 태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광주일보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여론조사 기사를 40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한 판세 분석 기사는 9건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기사 작성에 출처미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정도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한 이들 기사 9건 중에서 신뢰도와 표본오차 범위 등을 언급한 기사는 5건이었다. 특히 '오차범위 내 접전지역은 몇 곳' 등의 기사가 자주 등장했지만 그런 접전지역에 대한 설명에서조차 오차범위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월 30일자 기사에서 3월 26일 광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하지만 표본오차 범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전남 목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후보가 27.5%의 지지율을 기록, 민주당 공천을 확보한 정영식 전 행자부 차관을 불과 0.6%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표본오차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앞선다거나 뒤진다는 식으로 분석·보도하는 것은 판세를 호도하는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선두마차(Band wagon effect) 이론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선행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도되면 그 후보는 다음 조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유권자들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꺼려 우세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박지원 후보는 상당히 유리하게, 반대로 정영식 후보는 불리하게 보도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의 부정확성과 관련, 광주일보는 '숨은 표

심 5%'를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즉 '숨어있는 5%'는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때 표심을 일부러 숨긴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인용하며 '3 ~ 5%' 정도의 유권자들은 조사 때 나타나지 않다가 실제 개표 때 공개되면서 승패 예측을 뒤집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리화 할 수 없다. 이런 변명 이전에 과학적인 무작위 표집절차와 신뢰수준,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보도하는 자세가 우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고주의 기사 분석

전체 선거 관련 기사와 연고주의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전일보의 연고주의 관련 기사는 15건이었다. 매일신문과 광주일보의 연고주의 기사는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과 광주일보에 비해 대전일보에서 연고주의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등장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지역일간지의 선거기사 및 연고주의 기사 건수

	선거기사	연고주의 기사
대전일보	204건	15건
매일신문	219건	5건
광주일보	152건	5건

(1) 대전일보

우선 제목에서조차 지역주의 차원의 연고주의를 확연히 드러내는 기사가 5건이나 게재됐다. 예를 들어, '선진당, 충청인 자존심·명예 회복할 때', '관록 류

근찬 - 충청 자존심 되찾아야', '충청은 우리 땅', '충청 공정', '이회창 텃밭 민심잡기' 등이 등장하는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온 국민에게 보여줄 때가 온 만큼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충청인의 일꾼으로 선진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는 이 총재의 연설을 인용했다. 보령·서천 류근찬 후보의 '그동안 영남·호남 정권에 속고 또 속아왔다. 이번이야 말로 잃어버린 충청의 자존심을 찾고 보령·서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지지연설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권창출 이후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충남 출신 기업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내세워 경제활성화를 강조' 하고 있음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충청도를 대변하는 자유선진당', '지역주의에 기대는 선진당', '자유선진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만 일삼고 있다.', '지역감정으로 뽑힌 국회의원', '자유선진당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세력', '충청홀대' 등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매일신문

연고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5건 게재됐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 '안동 총선은 문중의 힘?', '고향사람 뽑자 - 소지역 대결', '안동금배지 다산될까', '안동 출신 국회의원 4명 탄생하나' 등이 게재됐다. 이처럼 매일신문은 혈연 및 지연 차원의 연고주의 기사를 주로 다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동 지역 만큼 대문중의 입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곳도 드물다', '정당공천도 중요하지만 문중공천을 받기 위해' 등의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다. 또한 2 ~ 4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복합선거구에서는 소지역 대결구도가 드러난다는 점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을 다루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이 인구수가 적은 시·군 지역 출신일 경우, 인구가 많은 시·군 지역 출신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역정서를 파고 들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특히 안동 지역구를 포함하면 안동 지역 출신이 한꺼번에 4명의 의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동 지역 주민들의 지연 차원의 연고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김정현 안동시 의원이 '4명의 안동 출신 국회의원을 얻는다면 안동 발전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4배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유권자들 사이에 안동 사람이 더 당선될 수 있도록 정당표도 한 곳으로 몰아주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바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3) 광주일보

광주일보에서도 매일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고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5건 게재됐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 '지역출신 뽑아야죠', '소지역주의 되살아나나'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해남·진도·완도 선거구는 대부분 섬지역인 탓에 타 지역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배타적인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소지역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사에서도 도심 생활권인 광주보다는 2~3개 군이 1개의 지역구로 묶여있는 전남에서 소지역주의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각 정당의 공천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졌고 쟁점이 분명치 않아 소지역주의가 되살아날 것 인지가 관심거리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일보의 한 기사에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지역주의에 대해 영·호남 갈등처럼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며 소지역주의 편승보다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주의 혹은 연고주의를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는 전반적으로 광주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등 모두에서 극히 드물었다.

5. 결 론

1) 요약

지역신문들은 우선 폭로성 기사를 상당수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문제 그리고 후보 간 고소, 고발과 관련된 단순 폭로성 내용을 다룬 기사가 많았다. 하지만 금품, 군복무, 학력, 폭행 등과 관련된 후보들 간 비방과 폭로성 주장을 명확한 증거 없이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가 분석 대상 지역신문들에 매우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샘플링 과정이나 표본오차 범위 등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접전인 경우 오차범위를 제시하지 않거나 혹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리한 후보를 더욱 유리하게 하고 불리한 후보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식으로 조사방법은

물론 조사기관이나 출처조차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채 보도하는 행태도 문제였다. 이는 여론조사를 남용 내지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연고주의 문제와 관련, 대전일보의 경우 지역주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됐다. 이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의 등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권과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일신문의 경우는 혈연·지연 차원의 연고주의 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안동이라는 '특수' 지역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보도 태도 역시 문제다. 광주일보는 여러 소단위 지역이 묶여 이루어진 선거구에서 나타난 '소지역주의'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논의

폭로 저널리즘은 선거 분위기를 타락한 모습으로 보이게 함은 물론 선거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치게 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감이나 냉소주의를 더욱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폭로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지킴이로서 언론 자신의 막중한 공익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폭로 저널리즘에 의존할 경우 언론은 수용자로부터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법적 다툼에 휘말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 우열가리거나 선두다툼을

주로 다루는 경마 저널리즘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부상하면 이후부터 그 후보는 더욱 언론의 각광을 받게 되고 여론조사의 인지도는 더욱 상승세를 타게 된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드러난 후보는 정반대의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론조사 보도는 조사절차와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물론 표본오차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언론, 특히 지역언론은 표본오차를 포함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보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정확성을 핵심으로 하는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 문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마 저널리즘에 동원되는 여론조사는 종종 부정확하거나 과장돼 보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이래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는 이제 국민과 유권자의 생활과 정치적 판단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 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보도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문제성 있는 여론조사와 보도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됨은 물론 여론조작의 한 방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보도하는 언론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언론, 특히 지역언론의 선거 보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주의 저널리즘이다. 선거 캠페인이 과열돼 지역감정 혹은 연고주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의 해

폭로 저널리즘, 부실한 여론조사 보도,
지역주의에 편승한 보도 등의 행태는
우리 지역언론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결에 대한 인식과 노력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언론 보도 행태 역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역신문들은 선거 캠페인 과정을 지역 기반의 정당 간 대결 국면으로 보도함은 물론 이를 특히 소지역주의, 혈연 등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정치사회적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연고주의 문제를 악용하는 정치권도 문제이지만 선정적으로 확대보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언론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남시욱(2001). 「인터넷 시대의 취재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원우현(1988, 1월). 13대 대통령 선거보도 검증: 언론보도 총평. 『신문과 방송』. pp. 19 ~ 23.
- 이관열(1992, 4월). 14대 총선보도 검증: 방송. 『신문과 방송』. p. 96.
- 이배영 외(2006). 「멋진 편집 좋은 신문」. 서울: 한울아카데미.
- Graber, D. A. (1997). *Chapter one: Media power and government control.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p. 6). Washington, DC: CQ Press.

인터넷을 통한 선거 관련 의사 표현의 자유와 한계

이 화 행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졸업
- 독일 보훔(Ruhr-Univ. Bochum)대학교 언론학 석·박사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한국방송학회 이사
- (사)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사)한국여성언론연합 미디어운동본부 자문 교수, 부산일보 뉴미디어연구소 자문교수
- 논문 및 저서 : 『동영상 UCC와 선거 보도 심의』, 『대선에서 UCC활용의 문제점과 역할』 외 다수

1. 들어가는 말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각각 실시된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은 보수진영에 의한 10년 만의 정권교체의 실현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양대 선거를 앞두고 그 영향력 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인터넷 미디어였다. 그 이유는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이 선거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16대 대선에서 예상치를 뒤엎은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노사모의 바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명명할 정도였다.¹⁾

제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초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치권계의 관심은 2006년에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 UCC에 쏠렸다. 과연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UCC가 국내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각 정당은 물론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동영상 UCC를 활용한 선거전략 수립에 부심하면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 UCC를 정당의 홈페이지나 후보의 개인 블로그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UCC가 선거 운동 과정과 선거 결과에 미칠 파장에 대비하여 선거관련 UCC 운용기준을 서둘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에서 인터넷 미디어를 둘러싸고 발생한 또 하나의 쟁점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였다.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게 된 시점은 2004년 제17대 총선이었으나, 당시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의 개정이 총선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뤄지면서 기술적 조치를 위한 시간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적용이 유보되었다. 따라서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은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들로서 인터넷 실명제 적용의 적절성

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4일 보도했다”(“세계 최초 인터넷 대통령 취임” 가디언, 한겨레신문, 2003년 2월 24일자).

이번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는
동영상 UCC, 인터넷 실명제, 포털 등의
인터넷 관련 논의들이 관심 끌어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밖에도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에서 인터넷을 둘러싸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영향력 및 포털의 책임에 대한 논의였다. 포털은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 당시만 하여도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이 미미한 존재였으나, 그 사이 뉴스의 재매개를 통해 뉴스 유통 시장 점유율을 일거에 높이면서 인터넷 뉴스 유통을 장악하는 거대 미디어 권력으로 성장하였다. 포털 초기화면의 뉴스박스가 제공하는 뉴스가 그 도달률과 의제 선점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높게 가치평가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포털 자체적인 게이트키퍼 과정과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본고에서는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이라는 논란과 연관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는 이번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UCC에 대한 선관위의 운용기준과 규제가 가져다준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의 선거를 고려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본 논문은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전개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참여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하

여 서술할 것이다. 특히 정치 참여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을 가장 잘 살려내는 선거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거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활동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과 표현을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남효순·정상조, 2005).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일컫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우리의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구두나 인쇄물뿐 아니라 회화, 사진, 영화, 음악, 레코드, 연극, 라디오, TV 등 사상·의견을 발표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으며, 표현의 매개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권형돈, 2006).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헌재 1992. 2. 25. 89헌가104)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표현행위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 원칙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검열금지 원칙이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는 중대한 척도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이념으로 인식된 것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바탕이 된 17세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신에 의해 부여된 인간의 권리의 하나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시했으며, 1791년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였다. 표현을 금지하는 모든 법률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표현의 자유가 자율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송경재, 2005; 권형돈, 2006). 표현의 자유 보장의 사상적 토대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흄즈 대법관은 이를 “진리발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상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어떤 사상이 최선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제약할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권형돈, 2006).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방송과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제1항 3문의 검열금지 조항은 이상의 기본권을 강화한다. 이 독일의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자유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배려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권형돈, 2006).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선거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 그리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 원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이승선, 2007). 선거 관련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현재는 “선거 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 운동을 통해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며, 따라서 선거 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병합), 이승선, 2007 재인용].

이승선(2007)은 표현의 자유가 선거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권리이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자유선거 원칙을 실현하는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디어 선거 시대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의

현대 사회에서 선거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 둘째,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 특히 미디어의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셋째, 현행 선거관련 법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대 사회가 '미디어 정치시대'라고 불릴 만큼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생활 영역에 두루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의 활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선거 관련 미디어 정책의 방향도 국민에게 다양하고 공정한 정치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이승선, 2007).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선거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미디어 선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법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유형으로는 사전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유형, 허용을 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제한하는 유형 그리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의 선거 운동 규제가 공정성이라는 규범적 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는 공정성을 위한 법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선거 법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정만희, 2007; 이승선, 2007, 재인용). 현행 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적 의미의 '참여' 보다는 '관리'를 중시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후진적인 선거풍토의 현실적 상황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문재완, 2006; 이승선, 2007, 재인용). 현재는 선거 운동과 관련한 표현방식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이런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능동적인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유권자를 선거사범으로 내몰게 되어 선거 주체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만희, 2007).

3. 정치 참여 매체로서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20세기 들어 산업화를 거치면서 등장한 다양한 미디어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시민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알 권리의 확대와 여론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언론의 자유의 의미 역시 국가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에서 능동적인 여론형성의 자유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문상현, 2004). 정치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디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하나의 거대 권력으로 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이윤추구 및 선전도구로 변질되어 갔다는 지적이다(McQuail, 2000).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변질되어 가는 시민과 미디어의 언론자유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 중의 하나가 하버마스에 의해 제기된 공론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 정치제도에서 미디어가 공적 토론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공론장으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표현 촉진적이고 참여 촉진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등장은 공론장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은다고 하겠다.

인터넷이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모습을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주체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자이크 민주주의'로 설명한 토플러는 정보화 시대의 세 가지 정치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소수 세력(minority power)의 원리로서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자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준(準) 직접 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의 원리로서 대표자들에 의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대표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결정권의 분산(decision division)을 통한 엘리트층 확대의 원리로서 새로운 기술이 결정권의 분산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발맞추어 결정권의 분산을 통한 엘리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Toffler, 1995; 윤성이, 2001, 재인용).

이 같은 토플러가 제시하는 정치원리는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있는 인터넷이 가진 민주적 참여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

트성, 멀티미디어성, 동시성/비동시성, 개방성 등 기존의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많은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호작용성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구분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구현을 의미한다. 기존의 미디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 머물렀던 반면에 인터넷은 뉴스원과 뉴스제작자, 뉴스제공자와 수용자 그리고 수용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피드백의 기회가 댓글쓰기나 자유게시판 글쓰기 및 토론방 등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주어진다. 피드백의 기회의 확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에 의한 기사쓰기, 즉 이용자에 의한 뉴스의 생산까지를 가능하게 하면서 인터넷이 참여적 매체로서 공론장을 복원하고 속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의 다른 특성인 하이퍼텍스트성은 텍스트의 비선형성과 다중심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일컫는다. 다양한 루트의 선별적 기사읽기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뉴스나 메시지 생산자에 의한 이용자 통제가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멀티미디어성은 텍스트, 음성, 영상 정보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등의 제한적으로 밖에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복합적 콘텐츠를 무제한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멀티미디어성은 압축 및 전송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복합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특성이 되고 있다.

동시성과 비동시성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성에서

웹 2.0 패러다임은 인터넷을
자기표출의 장이자 정치 참여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기반

자유로워지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의미한다. 동시성에 의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먼 대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구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동시성은 시간적 여유에 의한 심층적 커뮤니케이션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의 개방성은 인터넷 초기부터 표방되어온 대표적인 인터넷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익명성을 기반으로 참여자들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파괴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통제되지 않은 의견의 개진과 토론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비방과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유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익명성의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인터넷이 전통적인 미디어들과는 달리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 참여 매체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더군다나 공유와 개방으로 표현되는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웹2.0은 인터넷이 타 미디어와 달리 태생적으로 가지는 기술적 우월성에 기반한 특성의 진화된 형태이다. 플랫폼으로서 웹을 지향하는 웹2.0은 인터넷을 단순히 읽고 보는 미디어에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처럼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미디어로 바꾸었다. 참여의 편의성, 정보의 공개성, 교류의 개방성 등이 현실화되는 웹2.0 패러다임은 인터넷을 명실상부한 자기표출의 장이자 정치 참여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직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터넷 규제

표현의 자유의 의미는 현실 공간에서보다 어쩌면 사이버 공간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현의 행위가 현실 공간에서보다 시공간적으로 더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형성의 가능성도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최우정, 2007).

공직선거법에 의한 미디어의 규제는 상당부분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직결된다. 따라서 선거법에서의 미디어 관련 규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에 따라 규제에 대한 법적 원리가 달라야 한다. 황성기는 이를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a medium specific analysis)' 이라고 하는데, 즉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 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매체에 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의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원리들을 재구성해야하고 정책과 법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황승흠·황성기, 2003). 신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텔레비전이 전통적으로 주파수의 희소성의 이유로 소수의 제공자에 의한 독점적 성격의 강력한 영향력을 특성으로 가지는 반면에, 인터넷은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구현하고, 다수의 제공자에 의한 복합 경쟁적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신문·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서로 다른 매체적 특성은 선거법과 같은 법 규제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 현실 공간과 동일한 법 규제가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도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과약을 전제로 해야 한다. 물리적인 제약을 가진 현실 공간에서의 정치적인 표현의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다. 퍼 나르기와 같은 행위를 통한 인터넷의 신속한 전파력은 사이버 공간의 메시지를 표현자의 의사와는 달리 더 광범위하게 전파한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현실 공간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명예훼손적 표현, 허위사실 및 왜곡된 정보의 전파를 유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하여 현실 공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어느 정도의 현실 공간의 법체계의 직접 적용이나 변형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우정, 2007). 하지만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규제가 인터넷, 즉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헌재 결정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제14권 1집, 632면)이라고 인터넷의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관련 규정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선거행위의 방지

라는 원칙에 매몰되어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간과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권의 증대를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조소영, 2007). 조소영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헌법 원리상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자유 보장 중에서 당연히 선거의 자유가 우위에 놓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공정성 확보장치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궁극적인 당위성이 선거의 자유 실현에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도와 장치들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면보다 선거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면이 있는가를 헌법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가의 개입은 국민들이 최대한의 선택의 가능성과 이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적이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차원의 사고의 과정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국가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수행은 윤곽형성과 베이스구축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조소영, 2007).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시민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항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 즉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이다. 동법 제82조의 6항의 1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

인터넷 공간에 현실 공간과 동일한
법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파악을 전제로 해야

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에 의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대에 대한 조직적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 상황을 경험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소영(2007)은 실명을 통한 본인확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수용여부는 달리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이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책임과 공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수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에 대한 실명의 강제는 인권침해의 혐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처벌을 각오한 자들의 의도적인 난장의 조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위축되게 하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익명성의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중대한 반증이나 예외의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하는 우선적인 조건부 권리라는 점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범위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그 형량의 상대가치로 등장하는 다른 이익들의 중대성과의 저울질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의 헌법적 의미에서 볼 때 인터넷 실명제의 강제적 이행이 실명제를 통한 사전 검열 의지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인지

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최후적인 방법론이 되어야 하며, 강제조치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황용석(2007)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가 전제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가 추구하는 정책적 효과와 정책도구의 개념적 불일치를 지적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의도하는 추적 가능한 가명성이 이미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이유이다. 셋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의 결정권한은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시행은 입법원칙으로서의 법의 보충성 개념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에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가 네티즌의 사이버 공간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에 실제로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일부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선거 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인터넷 실명제 거부를 조직화하고,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게시판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 등을 택해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미디어오늘, 2007. 11. 21).

또한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에는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과 '인터넷 선거 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터넷 언론, 언론단체, 인권단체가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인터넷 공간이 서서히 위축되어 활발한 정치 토론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독자의 참여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 있어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미디어행동 보도자료, 2007. 3. 25).

인터넷에서의 선거 관련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이슈가 UCC이다. UCC에 대한 관심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 과정에서 동영상 UCC가 후보들의 당락에 부분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이다.²⁾ 웹2.0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웹 미디어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에는 초고속통신 기술의 발전, 디지털카메라 등 개인 창작 미디어의 보급, 손쉬운 저작 소프트웨어의 보급, 개인형 미디어 블로그의 확대 및 소위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웹2.0 환경의 근간인 통합 플랫폼 기능은 그야말로 개방을 통한 네티즌의 손쉬운 참여와 공유를 촉진한다. 제도권 언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진 인터넷에서 복사와 재전송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사적 정보와 공적 정보가 구분 없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개인 미디어로서의 UCC는 사

이버 공간을 통한 현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진다. 정치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UCC의 확산은 제도화된 소수 권력에 의한 정보 및 의제의 소유와 독점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분산되면서 기존의 하향식 패턴과 다른 정치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UCC는 강력한 선거캠페인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여론 형성 패러다임으로서의 UCC 미디어의 등장과 미국에서의 경험은 선거매체로서의 UCC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UCC가 선거과정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의 해인 2007년 1월에 공직선거법상의 '사전 선거 운동' 및 '후보자 비방죄' 등을 근거로 하는 '선거 UCC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8조부터 제60조와 제254조를 근거로 UCC의 내용이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19세 유권자에 대한 선거 운동 제한에 따라 19세 미만은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다. 그리고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동법 제250조와 제251조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된다. 또 동법 제93조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배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선관위

2) 미 중간선거 과정에서의 동영상 UCC 사례에 대해서는 이원태(2007)를 참조.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미디어나 현상들을
경계하거나 배척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기초가 바람직 할 것

는 UCC 운용기준을 근거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대선주자들의 동영상 UCC의 삭제를 요청하였다.³⁾ 선관위의 UCC 운용 기준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대하여 “국가의 인터넷 감시통제”(유영주, 2007)라는 등의 과잉규제 논란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확산력과 속도 측면에서 UCC가 가지는 과급력을 고려할 때 허위정보나 왜곡·조작된 정보의 악의적인 유포를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뿐만 아니라, 선거 막바지에 미확인 정보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UCC라고 하는 새로운 선거 미디어의 등장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5. 나가는 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불가피하다. 분명한 것은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정치적인 성숙도에 따라 선거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규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선거 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 속에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본고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정보 인프라 환경과 인터넷 참여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규제 현황 및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 있어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불리는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새로운 웹 패러다임과 함께 대두된 UCC에 대한 규제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는 다른 많은 특성들을 가진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현실 공간에서 제한적이던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장시켜주는 정치 참여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익명성은 허위사실의 적시, 왜곡되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추상적 개념인 익명성의 허용 내지 제재의 수위에 대한 선명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 이 문제는 이익 집단 및 사회 구성 집합체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선거 규제, 즉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효율성 위주의 일방적인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관련 사회 구성체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관련 사회 구성체와의

3) 하나의 예로 중앙선관위는 2007년 2월 14일 다음과 엠앤캐스트에 대해 ‘피아노 치는 근혜공주’, ‘명박이’, ‘민심체조’ 등 대선 예비후보 관련 동영상 게시물 14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심도 있는 속의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보다는 선거권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규제 기조가 우선시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새로운 매체 환경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터넷의 특성과 네티즌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선거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매체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특성인 상호작용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댓글쓰기, 게시판 글쓰기, 토론방 등에서 현재보다 진전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UCC는 제작자가 비전문가라는 특성상 맥락성보다는 일회성, 이성보다는 감성, 규범보다는 일탈이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C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속에서 하나의 미디어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현실을 마냥 부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 진화의 산물로서의 UCC를 선거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는 미디어로 재발견해내는 방향으로 선거 UCC 규제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UCC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이버 공간의 산물인 만큼 UCC가 갖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규제수위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정치 활동과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속속 등장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미디어나 현상들을 경계하거나 배척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수용하

려는 기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형돈(2006).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비교고찰. 『중앙법학』, 제8집 제2호, pp. 7 ~ 34.

남효순·정상조(2005). 『인터넷과 법률II』, 서울: 법문사.

문상현(2004).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법학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최 세미나 자료집.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불복할 것". 미디어오늘, 2007년 11월 21일자.

" "세계 최초 인터넷 대통령 취임" 가디언". 한겨레신문, 2003년 2월 24일자.

송경재(2005). 인터넷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사회적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가을/겨울호, pp. 7 ~ 38.

유영주(2007).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증의 관계. 대선미디어연대 주최 '대선보도 연속토론회' 발제문. 12월 11일.

윤성이(2001).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 이상과 현실. 『사회이론』, 봄/여름, pp. 37 ~ 61.

이승선(2007). 선거와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6권 제2호, pp. 207 ~ 244.

이원태(2007). UCC와 미 중간선거: '유튜브' 정치 동영상에 중심으로. 한국학술연구원 제8차 코리아포럼 및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 쟁점 세미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17대 대선의 쟁점들> 자료집. 3월 16일.

정만희(2007).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pp. 149 ~ 194.

조소영(2007).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3권 1호, pp. 41 ~ 64.

최우정(2007). 사이버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 사이버 기본권의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3호, pp. 261 ~ 303.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황용석(2007).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5권 2호, pp. 97 ~ 130.

"2008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08. 3. 25). 미디어 행동 보도자료.

McQuilail, D.(2000). *McQuil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London: Sage.

Toffler, A., Toffler, H.(1995). *Creating a New Civilization: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Turner Publishing.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터넷 자료 근거한 오보의 발생구조를 중심으로 -

이 용 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머리말

인터넷 환경의 도래는 기본적으로 취재보도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뉴스의 사실 검증 메커니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언론 환경은 언론인들이 발전시켜온 검증 방법론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도 그 요인 중에 하나다. 인터넷 등의 서비스로 기자들이 직접조사 하지 않고서도 뉴스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4시간 뉴스시대에 언론인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발로 뛰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의 뉴스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를 첨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자들이 각종 뉴스 포털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에 따라 더욱 수동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제는 취재자라기 보다는 자료의 수신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¹⁾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언론보도가 탐사보도와 맞물려 각광을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저널리즘, 사이버 저널리즘, 컴퓨터 활용 저널리즘 등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바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 취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바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취재도 저널리즘에 속하므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정확성과 사실 확인 등은 그대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차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²⁾ 따라서 인터넷 활용취재는 전통적인 취재경로를 통한 취재도 동반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에 주의해야 하며 그 출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활용 언론보도가 미디어 간 속보 경쟁의 과열로 오보를 발생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

1)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서울: 한국언론재단, pp. 109~110.

2) 김경희 외(2003). 「인터넷취재보도」,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23~24.

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취재보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자료 근거한 오보의 발생구조

1) 인터넷 게시판에서 기사화 - 오보의 발생구조 1

양희은 간호조무사 비하 오보 사건³⁾

2005년 5월 18일 MBC의 <양희은·송승환의 여성시대> 방송 도중 양희은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신생아 학대사건 사건'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를 비하했다는 오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뉴스스에 의료 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메디'의 5월 18일자 "못 배운 조무사 여서? 네티즌 시끌"이란 기사에서 양희은이 라디오 방송 도중 간호조무사를 비하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하였다.⁴⁾ 이를 뉴스스가 검증과정 없이 받아 다시 보도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데일리 메디'의 기자는 MBC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있던 '의료계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려진 네티즌의 글을 보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 네티즌은 방송내용을 잘못 듣고 그런 내용을 올려놓은 것이었다. 현장취재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취재보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여성시대> 제작진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다. 뉴스스가 보도한 뒤, 이어서 인터넷미디어인 대자보와 한국아이닷컴 등이 이 기사를 받았고 이는 포털사이트로 유포되면서 오보가 확대재생산되었다. <여성시대> 제작진의 강력한 항의로 오보에 연루된 모든 미디어가 정정보도를 하고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사과한바 있다. 이러한 사실검증 없는 인터넷 베끼기 취재방식은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희은 비하발언 오보의 경우에도 인터넷미디어 -> 뉴스통신사 -> 일간지닷컴 -> 포털이라는 오보의 연쇄고리가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를 넘어가면서 뉴스내용이 교류하게 됐지만, 이 하나 하나의 미디어가 사실검증의 단계이어야 함에도 어떤 미디어도 검증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자들이 현장취재에 주력하기 보다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에 의존하는 취재를 하고 있는 한계가 반영된 오보였다. 뉴스의 아이টে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에서 얻었다고 해도 관련 사실을 검증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단계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

2) 인터넷 블로그에서 기사화 - 오보의 발생구조 2

'지하철 결혼식' 오보사건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은 그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개인 블로그를 넘어 포털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언론은 이 미담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미담'으로 확대재생산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동영상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인터넷 책임론'

3) 미디어오늘. 2005. 5. 25. 자 "‘양희은 연쇄오보’ 원인은 ‘인터넷 베끼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4) '데일리 메디'가 게시판 댓글을 취재하게 된 계기는 문제 댓글이 장착된 게시판이 '의료계에게 바란다'였고 이 게시판에 대해 취재 보도한바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나 ‘당사자 책임론’을 강력하게 개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 포털을 통해 확산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회적 사건’으로 만든 것은 언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인 사실 확인의 의무조차 등한시 한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오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정리한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 오보 사건의 전개과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⁵⁾

• 최초 촬영자 - 루나틱감

네이버 블로그로 활동하는 루나틱감은 10일 오후 3시 30분께 5호선 지하철 화곡역 부근에서 우연히 목격한 지하철 결혼식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14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음.

• 최초 보도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월 14일 15시 59분에 <‘지하철 결혼식’ 영상 인터넷에서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동영상을 연합뉴스 TV를 통해 보도했음.

• 확대보도 - 쿠키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14일(화) 오후 2시 54분 ‘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의 이메일 제보로 ‘지하철 결혼식’을 알게 됨. 이때는 이미 결혼식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에 인기 게시물로 게재된 상황. 쿠키뉴스는 <‘아름다운 지하철 도깨비 결혼식’ 인터넷 감동의 눈물비다>, <“지하철 커플에 도

움 주겠다” 무료 웨딩촬영 등 성금 속속 답지> 등의 기사를 내보내 파장이 확산되었음.

• 확대·재생산

- 네이버, 다음 등 대부분의 포털이 연합뉴스와 쿠키뉴스의 보도를 미디어면에 전진배치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파장이 확대·재생산됨

- 결혼업체 10여 곳에서 동영상 주인공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책임지겠다고 나섬.

- 세종대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이라는 루머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됨(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언론과 KBS가 14일 보도했음.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 신문도 15일 보도함.

- 쿠키뉴스는 15일 오전까지 동영상 주인을 찾지 못하자 연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사실 확인 보도 - 국민일보 쿠키뉴스

15일(수) 저녁 11시 30분에 호서대 연극학과 학생들의 지하철 상황극이라는 네티즌의 제보를 받고, 16일 새벽 2시 연출자 신모 씨와 인터뷰. 지하철 결혼식이 대학생들 실험극이라고 보도

연합뉴스와 함께 ‘지하철 결혼식’을 처음 보도한 쿠키뉴스 담당자는 취재보도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게재하여 반성한바 있다.⁶⁾ 쿠키뉴스 담당자는 “처음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 장면을 보고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설마 감동의 결혼식이 ‘연극’일 수도

5) 민주언론시민연합, 2006년 2월 17일,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 관련 신문방송 보도>에 대한 논평.

6) 국민일보, 2006. 2. 21. 자. [포털저널의 허와 실(4)] 두 얼굴의 인터넷...“지하철 결혼식 사실 확인 소홀 사과”

있다는 생각보다 네티즌과 함께 이 감동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취재기자에게 주인공의 신원을 확인토록 했으나 시민이 촬영한 장면이라 누구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터넷에서 동영상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마냥 보도를 늦출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성급하게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사실 검증이나 사실 확인보다 동영상의 확산속도 등 인터넷의 뉴스전파속도 혹은 속보성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보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검증이라는 언론의 핵심시스템이 인터넷의 속도 등에 의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결혼식’이 기사화되고 나서도 연극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확인하질 못했다고 밝혔다. “연극의 주인공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연극을 실제 결혼식으로 보도한 오보는 지금도 계속되었을지 모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 보도에 관련해서 오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미디어는 KBS와 오마이뉴스 정도였다. 오마이뉴스는 16일 오전 <좀더 신중했어야 할 ‘지하철 결혼식’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를 게재했고 <KBS 8뉴스타임>도 같은 날 저녁 “공영방송으로서 사실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방송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뉴스타임을 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미디어는 연극을 공연한 대학생들과 인터넷 포털 등에게 책임을 전

가하였다.

일찍부터 인터넷의 익명성과 부정확성, 당파성을 비판해온 미디어들이 인터넷 정보와 그 전파속도에 압도되어 오보를 발생해놓고도 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UCC 등의 동영상은 포털 등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이를 신문이나 방송이 빈번하게 기사화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사실 검증 기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것은 인터넷의 전파속도를 언론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속보주의에 더 매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간통신사로 신문방송의 연쇄오보를 야기할 수 있는 연합뉴스가 ‘지하철 결혼식’ 동영상에 대하여 쿠키뉴스와는 다르게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추측기사까지 냈다가 16일 오후 뒤늦게 오보임을 인정하였고 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본질을 흐리는 후속 기사를 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⁷⁾ 연쇄오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 검증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야 하는 연합뉴스마저도 쿠키뉴스와 노컷뉴스 등 인터넷 뉴스사이트 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속보성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거짓기사(자료) 받아쓰기 - 오보의 발생구조 3

■ 만우절 거짓기사 받아쓰기

지난 4월 2일, 중앙일보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내놓은 거짓 기사를 그대로 받아 오보를 발생한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4월 3일자 <만우절 오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란 기사에서 2일 “브루니, 영국인 좀 세련되

7) 노컷뉴스, 2006. 2. 16. 자. “지하철 결혼식이 ‘장난’ 이었다면 뉴스도 ‘장난’ 인가?”.

게 해 주세요”는 오보였다고 사과하였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가 영국의 권위자 가디언 인터넷판뿐 아니라 종이신문에도 보도됐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개연성도 있어 보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의 이름이 프랑스어의 ‘만우절에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이란 의미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 대통령 부인의 패션 감각에 감명 받은 영국총리가 그녀를 영국 패션 자문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점이 만우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국 보도 맹신주의나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실 검증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속보주의가 가세했다고 볼 수 있다.⁸⁾ 사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만우절 기사 오보가 중앙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도 동일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만우절 기사로 확인하여 취소한바 있다. 또 4월 2일 송고하였던 “알프스 소녀 하이디, 파란만장했던 80년 회상”이란 기사도 만우절 기사로 확인해 전문을 취소한바 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기사 역시 명작동화의 실존 모델인 92세의 할머니가 인터뷰를 통해 일생을 회고했다는 스위스 국제방송 인용 기사였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기사 출고 후 독자의 부탁으로 할머니의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보임을 파악했다고 한다.⁹⁾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원작이 1880년 무렵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한번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 없이 기사화하여 오보를 낸 것이다.

■ 중앙일보는 2월 14일 중국 폭설 피해사진으로 3년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여 오보를 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꽁꽁 언 중국’이란 사진기사에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중국의 20개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다고 보도했는데 이때 사용한 사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촬영되고 2005년 ‘도깨비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사진으로 확인되었다.¹⁰⁾ 결국 중앙일보는 2월 15일 ‘바로잡습니다’란을 통해 중국 포털사이트인 ‘Baidu.com’에 올라 있는 사진을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의 촬영위치, 시간, 사진가의 이름 등 주요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미디어가 자료사진을 인터넷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면밀한 출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오보의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 강석주 연설 오보 사건

2006년 9월 24일 또 다시 북한 관련 대형오보가 터졌다. 연합뉴스가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이 작성한 에세이를 그해 7월중에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재외공관장 회의 중 강석주의 연설 내용으로 알고 보도하면서 대형오보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로버트 칼린이란 나름대

8) 기자협회보. 2008. 4. 9. 자. “중앙·연합, 만우절 기사 뉘였다”.

9) 기자협회보. 2008. 4. 4. 자. “연합뉴스도 만우절 기사 뉘여”.

10) 도깨비뉴스에 게재된 사진조차도 처음에는 미국 뉴저지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스위스 제네바의 레만 호수 풍경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프레시안. 2008. 2. 14. 자. “중국 누리꾼에게 뉘인 <중앙>, 1면 오보 ‘망신’”).

로 믿을 만한 취재원이 입수한 북한의 재외공관장 회의 기록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무기 보유 발언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던 이 자료는 연합뉴스 이외에도 여러 신문들이 입수하였다. 결국 신문들은 이 기사를 1면 등에 게재하면서 북한관련 대형오보 파문이 확대되었다.

연합뉴스는 “강석주 ‘북 최소 핵무기 5-6개 보유’라는 표제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도하면서 칼린이 북한에 자료를 전달받아 영어로 번역한 뒤 미국의 한반도관련 연구소인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통제불능의 토끼(Rabbit in Free Fall)’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연설 전문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 자료가 칼린의 전문가적인 정보와 식견을 담아 꾸며낸 에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취소하는 동시에 인터넷판에서는 기사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마감시간이 지나버린 신문들은 오보를 정정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대표적인 북한전문가가 충격적인 강석주 북한외무성 제1부상의 연설을 전했다. “조간신문들이 경황없이 받아쓸 수밖에 없는 밤 시간”에 “연합 기사를 안 받고, 남들보다 하루 늦게 쓰더라도 정확히 써보자는 ‘강심장’이 우리 언론에게는 없었다.”¹¹⁾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에 이 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도 전문은 아니나 연설내용을 요약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더욱이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연합뉴스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거의 베껴 쓰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오

보 베껴 쓰기’를 한 격이 되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를 적극적으로 사과한 신문은 얼마 되지 않았다.

칼린이 북한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이 글에는 강석주의 연설문이 아님을 암시하는 내용이 서두부터 담겨져 있었다. 칼린이 마치 무당처럼 강석주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듯한 보도 태도에 의심을 갖지 않았으며, 북한에서 이런 자료가 유출가능한지,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이 글이 올려진지 10일이 지났는데도 미국 언론이 왜 주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칼린은 이미 9월 14일 브루킹스 연구소와 스탠퍼드 대학교가 공동주최한 북한관련 세미나에서 ‘가상연설’임을 밝히면서 이 글을 발표한 바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실 검증을 게을리 하여 오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노틸러스연구소는 가상연설임을 알려주는 안내가 부족했다고 여겨서인지 그 글의 도입부에 ‘가상연설로서 실제 북한 관리의 연설이 아니다’는 설명을 첨부했다고 한다.¹³⁾

이 때문에 한 방송사의 기자는 그 에세이의 내용이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느껴, 직접 칼린 전 동북아담당관에게 확인을 해서 오보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나름대로 자료를 회의적으로 접근했던 방송사들은 칼린의 자료가 에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형오보를 피해갔지만, 신문들은 대형오보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한관련 보도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특수성 그리고 우리 언론의 안보상업주의 등으로 인해 추

11) 프레시안. 2006. 9. 25. 자. “칼린 ‘강석주’를 통해 미국과 북한에 경고한다”.

12) 정대필(2006, 11월). 오보는 초대형, 사과는? 『신문과 방송』, p. 17.

13) 프레시안. 2006. 9. 25. 자. “강석주 연설 파문 ... 대형 오보사태의 막후는?”.

측보도나 왜곡보도가 자주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동향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미국 관계자를 통해 보도되는 경향도 칼린의 에세이 오보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제 우리 신문도 이러한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가 되었는데 다시 대형오보가 반복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관련 뉴스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북한 보도의 오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보에 노출될 뿐 아니라, 대북 보도에서도 미국 언론이나 국내 일부 언론의 의제설정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의 강석주 연설 오보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기억할 만하다.

“마감시간 때문에 팩트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기자들끼리 통하는 변명은 될 수 있을지언정 독자에 대한 해명은 될 수 없다.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팩트지, 마감시간은 관심 밖이다. 확인이 안 되면 안 쓰면 그만이다...노틸러스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기자라면 자주 들어가 보는 사이트다. 그런데도 시간이 없어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부족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신문들이 무리를 해가며 칼린의 글을 기사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강석주가 했다는 연설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흥미진진해서 기사화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것이다. 우리가 안 써도 다른 데션 틀림 없이 쓸 것이라는 경계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내용만 재미

있으면 사실 확인은 다음 문제라는 센세이션널리즘, 눈 뜨고 당하느니 일단 쓰고 보는 게 안전하다는 보신주의 탓이 컸다는 얘기다.”¹⁵⁾

4) 위키피디아 인용하기 - 오보의 발생구조 4

우장춘 박사 딸 오보사건

지난 4월 26일 중앙일보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문리대·대학원 학장을 맡은 우정은 교수가 우장춘 박사의 딸이라는 오보를 냈고 결국 28일 정정보도를 했다. 중앙일보는 ‘바로잡습니다’란에 우정은 교수는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의 딸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를 지낸 우용해 전 쌍용 회장의 딸이라고 바로 잡았다.

그런데 이상일 워싱턴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원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내용은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출처는 ‘위키피디아(Wikipedia)’였다. 25일 무료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판 우 교수 항목 내용에는 ‘우장춘 박사의 딸’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밝혔듯이 위키피디아가 이용자들이 수시로 내용을 수정해 올릴 수 있고 전문가 검증시스템이 한계가 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오보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 이후 연합뉴스와 문화일보, YTN 등 다수의 언론도 역시 우 교수를 우장춘 박사의 딸로 보도하며 연쇄오보를 이어 갔다.

14) “우리 언론이 약한 대상이 미국 언론이요, 미국 전문가라는 사실이 이번 오보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미국에서 나온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는 이유로 확인 없이 보도했다가 오보를 낸 것이다”(강미은(2006, 11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 『신문과 방송』, p. 23.)

15) 중앙일보, 2006. 9. 28. 자. “[배명복칼럼] 과욕이 빚은 오보 참사”.

오마이뉴스는 26일 중앙일보가 우정은 교수에 대해 오보했음을 밝혀내고 취재보도 이후 위키피디아의 해당 항목이 수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4일 우 교수의 버지니아대 학장 임명 사실을 보도한 <미주중앙일보> 기사에는 우 교수를 '우장춘 박사의 딸'이라고 적시한 대목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주중앙일보>의 기사는 버지니아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내용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추측했다.¹⁶⁾

결국 중앙일보의 우장춘 박사 딸 오보는 미국에서 보내온 기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위키피디아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추가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을 잘못 평가한 것이다.

기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보검색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그 위험성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위키피디아의 개방적 시스템은 성공의 열쇠이자 신뢰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¹⁷⁾ 이 기사에 따르면 2007년 위키피디아에 2만 건의 정보를 올리고 편집위원, 관리자로 활동했던 자칭 종교학과 중신교수가 24세의 무직자로 밝혀지는 등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실명으로 정보를 올리고 해당 전문가가 올려진 자료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 사전을 구성하는 방식의 대안 사이트도 등장했다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위키피디아가 많은 기사에 인용되고 있으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다. 특

히 필자와 편집자가 모두 익명이라는 점과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사이트라기 보다는 그냥 취재의 이정표 정도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¹⁸⁾

Ⅲ.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취재보도의 문제점은 그것이 오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희생양을 만드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정보의 익명성과 부정확성 등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성이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정보를 언론이 사실 검증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제할 경우, 오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검증이 안 된 인터넷 정보가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정보가 뉴스기사가 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실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검증의 책임을 인터넷 공간이나 포털이나 개인블로그 등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오보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맞는 검증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취재보도를 압박하는 속보성이 더욱 강화되는 인터넷에 기반한 언론현실에서 더욱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올드미디어 시대의 사실 검증 장치가 무력해졌음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취재보도 환경

16) 오마이뉴스, 2008. 4. 26. 자. "위키피디아에도 '우장춘 박사 딸'로 기재".

17) 조선일보, 2008. 4. 25. 자. "독립성·중립성 고집 신뢰성엔 위기 징후-위키피디아의 실험과 한계".

18) 언론사 편집국 침범한 위키피디아. 『미디어월드와이드』, 2008년 3월호.

을 압박하는 인터넷의 엄청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오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올드미디어적 취재 경로와 인터넷 활용 취재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가치인 진실 추구하고 사실 확인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저널리즘의 첫째 의무가 그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 인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자료의 속도와 흥미진진함에 저널리즘은 압도되어 버릴 것이다. 또한 놀라운 속도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보와 지식, 경험을 갖춰야만 인터넷에 넘쳐 나는 정보에 대해 의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확한 사실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의사공시자유권의 헌법적 제한에 관한 고찰

이진구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1. 문제 제기

의사공시자유(Kommunikationsfreiheit)¹⁾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여타의 모든 기본권적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원적 자유이다. 따라서 의사공시자유는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 예외 없이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고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이 절대적 자유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의사공시자유는 상대적 제한을 통해서만이 실질적 보장이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의사공시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긴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의사공시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곧 그의 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명시한다.

그러나 의사공시자유를 제한하는 관점은 헌법이념에 따라 참여하고 긴장된 의미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가당착적 관견(管見)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같은 제한의 관점은 일반적 논의의 구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는 애써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점은 보장의 관점처럼 인구에 회자하지는 않지만 항상 폭풍의 눈이 되어 무궁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의 본질적 의미를 석명(釋明)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를 위해 독일헌법(Grundgesetz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명시한 제한의 사유를 헌법 내재적 해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비록 불변적 전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 헌법에서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같이 도출된 보편적 관점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 제한사유로 명시한 언론 미디어의 설립기준과 기능 그리고 명예권을 보호하는 의미를 재조명해 볼 수 있다.

2. 연구 범위

1) 의사공시자유(Kommunikationsfreiheit)는 의사공시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이때의 의사공시(意思公示/Kommunikation)는 공시자가 수용자에게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내재적 의사를 공적으로(öffentlich) 표현하고(äußern) 확산하는(verbreiten)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해석의 대상으로 삼은 독일헌법(Grundgesetz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5조(Artikel)는 모두 세 개의 항(Absatz)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의 제1항은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의 법 구문이고, 제2항은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법 구문이며, 제3항은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법 구문이다. 이 세 법 구문들 중에서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는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Schranken/制限)하는 사유를 명시한 독일헌법 제5조 2항의 법 구문을 해석하는 데 국한된다.

원칙적으로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보장한 제5조의 1항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5조의 2항에 대한 광의적 의미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5조 1항을 원용의 연구범위로 포함시키고자 한다.²⁾ 그러나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제5조의 3항은 법조문의 내용상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한다.³⁾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한 제5조의 2항을 핵심적 연구범위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범위의 설정은 의사공시자유도를 제한한 구문적 구성형태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본질적 의미까지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연구범위로 설정한 제5조 2항의 법 구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 2항 :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 제한〉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Artikel 5 Absatz 2) : “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

여기에서 “이러한 권리들(Diese Rechte)”이란 제5조 1항에서 보장한 공시자의 의사공시권, 수용자의 의사공시권, 매체의 의사공시권, 검열거부권을 말한다.⁴⁾

3. 연구 방법

그간 광범한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의사공시자유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의 관점에 의거하여 의사공시자유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소신을 피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차후의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헌법 내재적 해석(die verfassung-sinnerliche Interpretation/憲法內在的 解釋)의 연구방

2)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보장한 제5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 공시자와 수용자의 의사공시권〉**: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 문자, 화상(畫像)에 의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rtikel 5 Absatz 1 Satz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 **〈제2절 : 매체의 의사공시권〉**: “출판의 자유 그리고 방송과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Artikel 5 Absatz 1 Satz 2)〉**: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 **〈제3절 : 검열거부권〉**: “검열은 행할 수 없다.” **〈(Artikel 5 Absatz 1 Satz 3)〉**: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3)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제 5조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롭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Kunst und Wissenschaft, Forschung und Lehre sind frei. Die Freiheit der Lehre entbindet nicht von der Treue zur Verfassung.”)

4) 앞의 2번 각주 법조문 참조.

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Schranken)의 의미를 석명(釋明)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헌법 내재적 해석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Bundes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과 그 결정을 뒷받침한 매체법이론(Medienrechtstheorie)에 의거하여 독일헌법 제5조 2항에서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이론(Theorie der Kommunikation)을 헌법 내재적 해석을 위한 배경의 관점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헌법(Grundgesetz) 제5조 2항에서 명시한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크게 세 개의 구문으로 나눈다. 즉 첫째, 일반 법률의 조항, 둘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셋째, 개인의 명예권이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이다. 이들 세 가지 제한사유들이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석의 편의상 각각의 독립된 법 구문으로 나누어 제한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제한의 의미는 곧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에 대한 독일헌법의 제한적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서론에서 문제제기, 연구범위,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본문에서 제한 조문의 구성, 제한되는 의사의 본질,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사유를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위와 같은 고찰에 입각하여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의 본질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한 조문의 구성

현행 독일헌법은 1949년 5월 23일에 제정·공포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 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통일 이전부터 서독의 헌법으로 유지되어 왔다. 엄격한 의미에서 헌법(Verfassung)과 기본법(Grundgesetz) 간에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독일헌법으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법과 헌법을 혼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독일헌법(Grundgesetz)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명시한 독일헌법(Grundgesetz) 제5조는 전혀 개정되지 않은 법 구문의 구성형태를 제한 당시부터 통일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래 제5조(Artikel)는 크게 의사공시의 자유와 학문 및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두 개의 기본권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두 기본권은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통적 특성 때문에 동일한 조항에 명시되었으나 전체적 비중으로 볼 때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보장한 내용이 제5조를 압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5조를 구성하는 총 세 개의 항(Absätze) 중에서 제1항과 2항이 의사공시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3항 하나만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제5조는 그 첫 번째 항(Absatz)에서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보장하고, 두 번째 항(Absatz)에서 의사공시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각 독립된 법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제5조는 세 번째 항(Absatz)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묶어 명시하는 법 구문의 구성형태를 취했다. 이미 앞의 연구범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록 학문 및 예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동일한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용면에서 의사공시자유 기본권과는 의미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3항을 법조문의 구성형태에 대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 의사공시자유권의 보장과 제한 조문 구성

조 Artikel	5 조			
항 Absatz	1항		2항	
절 Satz	1 절	2 절	3 절	1 절
	기본권의 보장 Gewährleistung des Grundrechts			기본권의 제한 Schränken des Grundrechts
	- 공시자의 의사공시권 : - 의사표현의 자유 - 의사확산의 자유	- 매체의 의사공시권 : - 출판의 자유 - 방송과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	- 검열거부권 :	- 제한 사유: - 일반 법률의 조항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 개인의 명예권
	- 수용자의 의사공시권: - 알 권리			

〈표 1〉에서와 같이, 현행 독일헌법 제5조는 의사공시자유권의 기본권을 보장한 1항과 의사공시자유권의 기본권을 제한한 2항을 병렬로 구성한 상반된 법구문의 형태이다. 즉 제5조의 1항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 문자, 화상(畫像)에 의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되지 않고 알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행할 수 없다(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라고 의사공시자유권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바로 이어서 제5조의 2항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

그리고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서 제한된다(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라고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의사공시자유권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동일한 조항에서 보장과 제한의 상반된 내용이 이원적 구성형태로 규정된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5조를 규정한 법적 취지에서 볼 때, 이 같은 상반된 대립적 구성형태는 오히려 의사공시자유권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견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조항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내용을 보장의 내용과 병렬로 구성한 점은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의사공시자유권의 기본권을 제한한 제5조의 2항은 세 개의 제한사유를 하나의 법 구문으로 명시한 구성형태이다. 첫 번째의 제한사유로, 일반 법률의 조항(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에 의해 의

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두 번째의 제한사유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을 통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세 번째의 제한사유로, 개인의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III. 제한되는 의사의 본질

의사의 본질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곧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의사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이루는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 의사의 개념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일반적 개념을 토대로 독일 헌법 제5조 2항에서 제한하는 의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의사(Meinung/意思)는 사실적 또는 비사실적 대상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확신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일정한 견해이다.⁵⁾ 이러한 정신 활동을 통해 빚어지는 의사가 반드시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로 구별되어야 하거나, 보편타당하여야 하거나, 근원적 의미를 내포할 필요는 없다.⁶⁾ 즉 의사는 반드시 합당한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 전제적 또는 의무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⁷⁾

이 같은 의사의 일반적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사의 구체적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의사(Meinung/意思)란 마음속에서 어느 대상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구체화시킨 의식적 자태(Bewußtseinsbild)이다. 이러한 의사는 자신 이외로 공시되지 않은 정신 활동으로 내적 진행과정에 머물러 있는 마음 속의 의식일 뿐이다. 비록 그 같은 의사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공시되지 않은 생각으로서의 의사 그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의사는 인식(Erkenntnis)을 토대로 한 헤아림의 정신적 결실(Frucht)이다. 즉 정신적 결실로서의 의사는 나름대로 분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인 의식(Bewußtsein)이 감각(Sinn)과 경험(Erlebnis)을 통해 알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지각(Wahrnehmung)과 함께 어우러져 마음 속에 맺힌다. 따라서 진지하게 숙성되는 헤아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각은 자신의 마음 속에 의사로 내재화될 수 없다. 내재화되지 않은 의사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멸을 반복하는 수많은 생각의 편린(片鱗)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정신적 결실로 구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의사는 공시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고 만다.

의사의 철저한 주관성을 통해서도 의사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의사는 반드시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구속될 수 없다. 의사는 단순히 자신의 상상과 환상을 통해서 얼마

5) Bundes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이하 BVerfGE로 표기) 33, 1, 15 / BVerfGE 30, 336 / v. Mangoldt/Klein(1985): Das Bonner Grundgesetz(이하 BG로 표기), p. 238.

6) von Mangoldt/Klein(1985): BG, S. 238. / BVerfGE 30, 336, 347. / BVerfGE 33, 1, 14 f.

7) von Münch, Ingo(1992): Grundgesetz-Kommentar, Band 1(이하 GK로 표기), Art. 5 Rdnr. 5. / BVerfGE 30, 336, 347.

든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이렇게 형성된 의사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확신이 되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그 같은 의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나 결과를 미리 고려하여 형성되는 예단(豫斷)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또 선의적 차원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의사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가능한 의사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실이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의사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 의사는 주관성을 갖는다.⁹⁾ 그러나 단순히 인용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의 특별한 의사는 주관성을 갖지 않는다.

그 같은 폐쇄적 주관성의 의사가 일반적 예상대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사가 형성되는 데 의사의 주관성이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비록 진실하지 않은 주관적 내용으로 형성되었다라도 그 의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¹⁰⁾ 어느 대상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주관적 의사일지라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¹¹⁾ 따라서 가치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사의 정당성이 판정된다면, 이는 독일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¹²⁾ 이상과 같은 본질적 의미에 입각하면, 독일헌법 제5조 2항에서의 의사는 당연히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주관적 의사(subjektive Meinung)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의사의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독일헌법은 상대적 또는 객관적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중시

하는 차원에서 공시되는 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 또는 여론과 같은 사회적 의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다. 본래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천성적 욕구인 구지욕(求知慾/Wissensdurst)과 구산욕(求散慾/Verbreitensdurst)의 상호적 순환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는 어느 대상을 알고자 하는 구지욕과 어느 대상에게 알리고자 하는 구산욕이 서로 함께 작용하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의사를 형성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닫힌 내부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열려진 상대적 관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 의사는 객관성을 갖게 된다.

본질적으로 의사(Meinung/意思)는 제한될 수 없는 자유로움 그 자체이다. 그러나 공시되는 의사(öffentlich geäußerte Meinung)는 헌법에서 설정한 의사공시자유도의 한계를 통해 제한된다. 즉 자유롭게 공시되는 의사는 헌법이 규정한 제한의 사유에 의해 제한된다. 헌법에서의 이와 같은 한계의 설정은 사실상 의사공시자유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설정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계의 설정은 단순히 제한하기 위한 한계의 설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사를 공시할 수 있는 자유의 범주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사공시자유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계의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헌법 제5조 2항에서 제한되는 의사는 미디어를 통해 공시되는 의사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의사는 구체적으로 네 개의 의사공시

8) Leisner, Walter(1962): Begriffliche Grenzen verfassungsrechtlicher Meinungsfreiheit. in: UFITA 37. p. 144. / Herzog, Roman(1982): in: Maunz/Dürig/Herzog/Scholz u.a.: Grundgesetz-Kommentar(이하 GG로 표기), Art. 5 Abs. I, II. Rdnr. 54.

9) Hesse, Konrad(1985):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dnr. 391.

1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1965, pp. 294-295. / BVerfGE 61, 1, 7 f.

11) BVerfGE 54, 129, 139. / BVerfGE 61, 1, 7 f.

12) BVerfGE 33, 1, 15.

자유 의 기본권들을 이루고 있는 의사들이다. 첫째, 미디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공시자의 의사공시권, 둘째, 미디어를 통해 알 권리가 보장되는 수용자의 의사공시권, 셋째, 출판·방송·필름을 통한 보도를 보장하는 매체의 의사공시권, 넷째, 의사공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의 검열거부권과 같은 이 네 가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이루고 있는 의사가 곧 제한되는 의사에 속한다. 이 같은 네 개의 의사공시권은 제5조 1항에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제5조 2항에 열거한 일반 법률의 조항(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개인적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의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의 세 가지 사유는 단순히 제한을 위한 제한의 의미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보장의 명확한 범주설정을 위한 제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제한사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독일헌법 제5조 2항에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

IV.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사유

1. 일반 법률의 조항에 의한 제한

제5조의 1항에서 보장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동일 조문의 2항에서 일반 법률의 조항(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에 의해 제한된다. 이 같은 법조문의 구성 때문에 제5조 2항에서 제한의 사유가 되는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이 헌법

(Verfassung)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하위법인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법률에 의해 헌법이 제약되는 이 같은 법률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1항과 2항은 통일된 독일의 헌법에서도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그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서 이론의 여지가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이 예견되는 해석상의 상이한 관점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동일 조항에 병렬로 명시한 근본적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좁혀지거나 극복될 수 있다.

우선 일반 법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5조 2항에 명시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 법률의 조항(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 법률의 개념에 대한 고질적 논쟁은 이미 바이마르 시대의 국법학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상충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법률을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 간의 법적 경계점을 초헌법적 차원에서 설정한 특별법으로 여기는 관점 때문이다.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서 이 같은 상충적 논쟁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의 사유로 명시한 일반 법률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가 제기된다.

일반 법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강압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규정한 특별법(Sonderrecht)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일반적 법을 뜻한다.¹³⁾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공시를 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금지된다.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추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용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정신적 목표를 지향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정신 활동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사공시의 행위를 특별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싹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잘라버림으로써 절대 희생불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법률은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집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은 특정한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 법익의 보호를 우선하는 법을 뜻한다.¹⁴⁾ 따라서 특정한 권익을 위해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법은 일반 법률이 될 수 없다. 만일 일반 법률이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권익을 위해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면,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래의 헌법정신은 그 즉시 상실된다.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제한적 자유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은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 그 자체보다 오히려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뜻한다.¹⁵⁾ 따라서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만을 특정하게 보장하는 법은 일반 법률이 될 수 없다. 일반 법률은 특정한 자유의 영역인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 보다는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는 법일 뿐이다.

이처럼 상이하게 제시되는 일반 법률의 개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속적인 판결을 통해 통합적으로 정립했다. 즉 일반 법률은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만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되어야 하는 공동가치(Gemeinschaftswert)의 법익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일반적 모든 법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¹⁶⁾ 그 같은 관점에 따르면, 특정한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만을 반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은 일반 법률이 될 수 없다.¹⁷⁾ 즉 어떤 특정한 의사공시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제정한 특별법은 당연히 일반 법률의 성격을 벗어난다. 따라서 일반 법률은 제5조 1항의 1절과 2절에서 보장한 의사공시 자유의 네 가지 기본권들¹⁸⁾ 중에서 어느 특정한 기본권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¹⁹⁾ 즉 일반 법률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확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시자의 의사공시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수용자의 의사공시권 출판과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매체의 의사공시권 그리고 이 세 가지 의사공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검열

13) Häntzschel, Kurt(1932):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HdbStR II, p. 659.

14) Rothenbücher, Karl(1928):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VVdStRL 4, p. 20.

15) Smend, Rudolf(1928):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VVdStRL 4, p. 52.

16) BVerfGE 7, 198[209/210] - Lüth-Urteil /BVerfGE 28, 282[292] - SoldatenG /BVerfGE 50, 234[241] - Ausschluss aus Gerichtsverhandlung.

17) Maunz/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 24 II 2 /z. B. Gesetz gegen die Verbreitung der Lehre des Darwinismus im US-Staat Arkansas von 1928.

18) 공시자의 의사공시권, 수용자의 의사공시권, 매체의 의사공시권, 검열거부권.

19) Bettermann, Karl-August(1964): Die allgemeinen Gesetze als Schranken der Pressefreiheit. in: JZ, p. 604.

거부권 모두에게 제한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일 뿐이다.

일반 법률의 개념을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과 결부시키는 이 같은 관점은 의사공시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공시된 의사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확증은 없다. 다만 의사공시의 추정적 영향만을 중시하거나 기대할 뿐이다. 더욱이 그 같은 추정은 대부분 의사공시의 긍정적 영향에만 집중된다. 그러나 공시되는 의사(Meinung/意思)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쌍방향 순환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생동성을 갖기 때문에, 의사공시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 같은 성격을 가진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 법률은 반드시 법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적 내용을 동시에 갖추고 제정되어야 한다.²⁰⁾ 일정한 법체계 내에서 법적 타당성을 갖고 제정된 일반 법률만이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결코 일반 법률은 특정한 목적만을 지향하는 특별법이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편의성만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없다.

그와 같은 법적 체계와 타당성을 갖추고 제정된 다음과 같은 법들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 법률에 해당한다. 일반 법률에 해당하는 이들 법의 규정들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노동지위기본법(Grundregeln über Arbeitsverhältnis),²¹⁾ 외국인법(Ausländergesetz),²²⁾ 공무원법(Beamtengesetz),²³⁾ 영업법(Betriebsverfassungsgesetz), 민법(Bürgerliches Recht), 법정법(Gerichtsverfassungsgesetz),²⁴⁾ 카르텔법(Kartellrecht),²⁵⁾ 교회업무지위법(Kirchliches Arbeitsverhältnis),²⁶⁾ 연금법(Kontaktssperregesetz),²⁷⁾ 예술저작권법(Kunsturhebergesetz),²⁸⁾ 시장질서법(Marktordnung),²⁹⁾ 경찰 및 질서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우편법(Postordnung),³⁰⁾ 법관법(Richtergesetz),³¹⁾ 군법(Soldatengesetz),³²⁾ 호적법(Standesrecht), 형법(Strafgesetze),³³⁾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도로법(Straßenengesetze),³⁴⁾ 부당경쟁금지법(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 집회법(Versammlungsgesetz),³⁵⁾ 경쟁제한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

20) v. Mangoldt/Klein(1992): BG. Anm. IX 3a /OVG Münster DVBl. 1972, 509 - Düsseldorfer Straßengesetz.

21) 자유 경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밀접한 노동관계가 제약된다. 그러나 노동의 본질과 목적을 간과한 권위적 명령에 의해 그 같은 노동관계를 제약할 수는 없다.

22) 법적 전제조건 내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고 금지함으로써 외국인의 의사공시의 자유가 제한된다.

23)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해 공무원상의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의사공시자유의 제한은 적법하다.

24) 법정 공개와 배석 경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의 참관을 배제함으로써 기자의 보도의 자유가 제한된다.

25) 과도한 기업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26) 가톨릭 병원의 의사에게 낙태에 관한 공적 연금의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따라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의사에게 부과되는 이 같은 금지규정은 교회의 자율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법하다.

27) 연금 상태의 사람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28) 예술저작의 보호를 위해 저작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의사공시는 금지된다.

29) 시장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광고전단의 살포는 금지된다.

30) 형법, 공공복지, 관습에 반하는 내용 또는 정치적·종교적 내용을 겉표지에 신거나 또는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우편물을 통해 송부하는 의사공시는 제한된다.

31)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거하지 않은 정치적 의사공시는 제한된다.

32)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의사공시는 제한된다.

33)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경우에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34) 공동도로에서 확성기와 선전물을 통한 비공익적 의사공시는 제한된다.

35) 나치복장을 착용한 공중집회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비평화적 집회는 제한된다.

kungen)³⁶⁾ 등이다.

이처럼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의 효력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따라서 연방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호작용이론(Wechselwirkungslehre)과 사안별 법익형량 원칙(Gebot der Rechtsgüterabwägung im Einzelfall)의 관점을 통해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 법률의 효력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론(Wechselwirkungslehre)의 관점에 의거하면, 일반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 즉 일반 법률의 제한작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이 갖는 법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뿐이다. 결코 일반 법률이 기본권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호작용(Wechselwirkung)은 일반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순한 문구적 표현 이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의 법적 가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 법률의 제한작용 그 자체를 다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장화가 커질수록 그에 따라 장화의 뒤꿈치가 커진다 (Je größer der Stiefel, desto größer der Absatz)”³⁷⁾는 이처럼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은 제한되면 될수록 오히려 보장의 가치는 더욱 증시된다.

사안별 법익형량 원칙(Gebot der Rechtsgüterabwägung im Einzelfall)의 관점에 의거하면,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

는 상위의 법익이 훼손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은 양보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상위의 법익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해당 사안에 대한 타당한 검증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³⁸⁾ 예를 들면, 인격의 진작(Entfaltung)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검증을 통해 상위의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코 일반 법률의 일반성을 통해 모든 기본권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실상 일반 법률의 개념에는 법익형량(Rechtsgüterabwägung)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위의 법익에 의해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일반 법률의 개념에서 도출해 낼 수 없다. 동시에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이 다른 모든 법익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당성 역시 일반 법률의 개념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과 법익들 간의 상충에서 법익형량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결코 법익형량은 이 둘 간의 상충에서 선회(旋回)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해당 사안의 상충을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기준에 의거한 추상적 형량(abstrakte Abwägung)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기준에 의거한 구체적 형량(konkrete Abwägung)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안별 법익형량(Rechtsgüterabwägung im Einzelfall)의 적용에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 즉 일반 법률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헌법정신에 따라 정당하게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제한의 법익형량이

36) 미디어의 독점화를 금지함으로써 의사공시자유도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37) BVerfGE 12, 113[124] - R. Schmid-Urteil(Pressefehde-Urteil).

38) BVerfGE 35, 202[221] - ZDF-Sendung Soldatenmord von Lebach.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StGB)에서 나치 선전물의 유포, 제조, 도입을 금지하는 규정³⁹⁾과 나치 상징물의 사용과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⁴⁰⁾이 나치를 찬양하는 특정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그 법률규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적 조치에는 사안별 법익형량이 적용될 수 없다. 즉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정서의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기에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안별 법익형량의 예외적 적용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⁴¹⁾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에 의해 제한된다. 이 같은 법률 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은 미디어의 유해한 내용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확실하고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보호가 그 같은 법률 규정을 존속시키기 위한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은 반드시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적용되어야 한다.⁴²⁾ 실제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협하는 내용은 인쇄물, 방송물, 영상물,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폭력과 비행을 찬양하거나, 인종 간의 증오심을 유발시키거나, 전쟁을 찬미하거나, 성행위를 수치심 없이 과감하게 묘사하는 것들이다. 즉 청

소년의 일상 생활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하고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의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미지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순수하고도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미디어의 위대한 내용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나쳐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높은 호기심과 예리한 민감성을 갖고 몰입하게 된다. 청소년의 이 같은 심리적 특성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경험을 현실적 사실로 혼동하는 일방적 수용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규정함에 있어서 고도의 신중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포괄적 보호가 요구되는 기본권의 균형성과 청소년 보호의 우선적 가치 간의 법익형량(Rechts-güterabwägung)에 의거하여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적절하게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⁴³⁾ 결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 여타의 모든 기본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절대적 규범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이 과연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들의 균형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법치주의적 차원에서 제한의 권능을 갖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영될 텔레비전의 필름에 대한 사전검열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의 견해가 대립될 수 있다. 즉 위해한 필름은 반드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은 방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열을 찬성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자유

39) § 86 I Nr. 4 StGB.

40) § 86a StGB.

41) Frowein, Jochen Abr.(1980): Reform durch Meinungsfreiheit, in: AÖR 105, p. 169. (Unzulässigkeit des Verbotes von NS-Propaganda auf Art. 139)

42) BVerfGe 30, 336 [354] - Sonnenfreunde.

43) BVerfGe 30, 336 [348] - Sonnenfreunde.

민주주의 국가의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는 관점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필름의 방영을 사전검열을 통해 무조건 금지하는 조치를 반대하게 된다.

독일 형법(StGB)은 폭력의 묘사를 금지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청소년을 위해할 수 있는 폭력을 묘사한 비디오물의 대여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반대의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⁴⁵⁾ 폭력 비디오물의 대여 금지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취지가 오히려 성인의 탐닉만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불필요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묘사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 밖의 법적 결과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 헌법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청소년의 불명확한 개념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폭력을 조장하고 포르노 행위를 노출하고 증오심을 부추기는 미디어의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 청소년과 성인 간의 개념적 경계가 모호해 진다. 즉 보호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청소년이 성인만큼 조속한 청소년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호될 필요가 없는 성인이 청소년같이 미숙한 성인일 수 있다. 더욱이 뉴미디어의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 같은 청소년과 성인은 상호 간의 개념적 경계 없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정의 일반적 적용은 곧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약도독도 될 수 있는 상반된 법적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정의 적용에서 야기하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점은 청소년과 성인

간의 개념적 경계를 법률적 연령에 의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연령에 의해 판단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

3. 개인의 명예권에 의한 제한

개인의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에 의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권은 제한사유로서의 법률 규정이다.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은 오로지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의 명예권은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가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명예권은 전통적으로 선언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문율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권을 법적 규범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습법(Gewohnheitsrecht)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⁴⁶⁾

관습법의 차원에서 개인의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을 이해하는 관점은 명예권의 핵심요소인 권리(Recht)가 갖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인한다. 앞에서 파악했듯이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과 법률 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비하여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은 개인의 명예(Ehre)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으로서의 주관적이고 개인적 권리(persönliches

44) § 131 StGB

45) Gehrhardt, Erwin(1975): Gewaltdarstellungsverbot und Grundgesetz, in: NJW, 357ff. /Scheffold, Dian(1982): Politische Zeitschriften jugendgefährdend? in: RdJB, p. 121.

46) v. Mangoldt/Klein: Anm. IX3c.

Recht)로만 이해할 수 있다.⁴⁷⁾ 따라서 정당한 제한의 사유로 명시한 개인의 명예권은 권리의 당사자에 따라 충분히 관습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헌법정신에 의하면, 단순히 개인의 명예권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의 명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통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이다. 즉 독일헌법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습법이 아닌 명확한 실정법의 규정을 요구한다. 그에 따라 형법(StGB) 제185조와 193조, 형사소송법(StPo) 제374조, 민법(BGB) 제823조 등과 같은 명예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명문화되었고, 그 법률 규정들이 정하는 구체적 범위 내에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은 정당하게 제한된다.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된 경우에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한 상충적 관점이 대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법 제193조의 “정당한 관심의 인지(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명예권 보호 간의 법익형량(Rechtsgüterabwägung)이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당한 관심의 인지는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는 궁극적 목적에 입각할 때 그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진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의사공시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같은 정당한 관심의 인지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어느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의사공시 간에는 현격한 의미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가치판단과 의사공시 그 자체는 공시자의 주관적 임의성(Dafürhalten)과 확실성(Fürwahrhalten)에 입각하여 내려진 결정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치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공시의 정당성과 비정당성은 순전히 공시자 개인의 신념에 해당된다.⁴⁸⁾ 따라서 명예권의 침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침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하여 진다. 이 같은 구체적 경계설정에 입각하여 명예권의 침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권의 침해는 자유로운 의사공시행위를 통한 공시자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관심이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거나 고려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관심을 능가하거나 압도할 때 성립한다.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얼마나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가의 법익형량(Rechtsgüterabwägung)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중심으로 그 같은 법익형량이 상이한 관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은 우선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즉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보다 중시된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프라이버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본래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적 영역인 인격권에 속한다.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의사

47) 이외에도, “민주주의 연방국(Demokratischer Bundesstaat)”을 규정한 독일헌법 제20조 3항에서 법을 지칭하는 Recht는 개인의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에서 권리를 지칭하는 Recht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의해 구속된다(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48) BVerGE 61 1, 9.

공시자유는 기본권보다 중시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인격권을 중시함으로써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점은 독일헌법 제2조 1항에 명시한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의 보장을 통해 충분히 지지되고 있다.⁴⁹⁾ 즉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와 도덕률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진작시킬 수 있음(Entfalten)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격권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 같이 보호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명예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공적 이익의 실현을 담당하는 공인의 개인적 프라이버시 내용이 본인의 인격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면,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인격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코 타인의 의사공시자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벼이 침해될 수 없다. 즉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공인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원초적 요소로서 우선은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인의 개인적 인격을 구성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공적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 즉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보다 중시될 수 없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명예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일지라도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보다 우선적

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개인의 명예권을 구성하는 프라이버시가 공적 영역과 밀접히 관련된다면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은 개인의 명예권을 극심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반적 정치성을 가진 공적 영역에 해당되고, 그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진솔하게 공시되어 공익의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권 보호가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 보장보다 우선될 수 없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용이 수용자의 정당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일반적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이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 제한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이 아닌 특정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공시하는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공시가 정당한 관심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 편승하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의 신분이나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에서 개인의 명예권 침해와 실상에 대한 알 권리의 보장 간에 이 같은 상충이 야기된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단순한 욕구가 결코 알 권리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알 권리는 호기심의 충족을 벗어난 정당한 관심을 토대로 요구될 경우에만 본연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면 그 개인의 명예권은 의사공시자유는 기본권을 제한할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더욱이 공인의 명예권은 이미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관심을 통해 신장되기 때문에,

49) Art. 2 GG[Persönlichkeitsrecht]: (1)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der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인격권]: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와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진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인 개인의 명예권은 곧 공공의 명예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코 공인 개인만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

V. 결 론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 독일헌법(Grundgesetz) 제5조 2항의 명문화에 헌법의 전통주의가 입법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⁵⁰⁾ 따라서 헌법에 명시한 제한사유의 내용은 크게 독창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환경의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본래 의사는 인식을 통해 구체화된 의식적 자태이다.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의사는 공시되는 의사이다. 공시되는 의사는 헌법의 한계 설정을 통해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 설정은 곧 의사공시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근거 설정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반 법률의 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개인의 명예권이 헌법이 설정한 의사공시자유의 한계이다. 동시에 이들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제한의 사유가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해석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일반 법률의 규정(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은 그의 개념과 효력범위의 측면에서 제한사유의 의미를 갖는다.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법률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집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적 법이다. 또 일반 법률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고 일반의 법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역시 일반 법률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 그 자체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공익 실현에 일차적 목적을 두는 법이다. 이들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면, 일반 법률이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공동가치의 법익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일반적 모든 법이다. 효력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법률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미치는 효력의 범위에 따라 그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 법률의 효력범위는 상호작용이론(Wechselwirkungslehre)과 사안별 법익형량 원칙(Gebot der Rechtsgüterabwägung im Einzelfall)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상호작용이론의 관점에 의거하면, 일반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사안별 법익형량 원칙의 관점에 의거하면, 일반 법률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위의 법익이 훼손될 경우에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양보의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은 포괄적 보호가 요구되는 기본권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는 측면에서 제한사유의 의미를 갖는다. 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정의 우선적 가치가 여타의 모든 기본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절대적 규범성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법률 규정이 청소년의 보호에만 우선적 가치를 둔다면 오히려 위대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성인의 반사적 권한만을 집중적으로 보호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보호되는 성인의 반사적 권한을 통해 위대한 내용이 재생산되어 확산됨으로써 도리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50) 이진구(2006). 독일헌법 제5조의 의사공시권 보장에 관한 고찰. 동아대 사회과학논집 제25집 2호. pp. 62 ~ 68.

규정은 스스로 자신의 제한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끝으로 개인의 명예권(Rechte der Persönlichen Ehre)은 주관적인 개인적 권리의 측면에서 제한사유의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관습법적 관점에서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이 요구된다. 본래 명예권의 침해는 자유로운 의사공시행위를 통한 공시자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관심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고려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관심을 능가하거나 압도할 때 성립한다. 이 같은 인격권을 구성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상충적이다.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원초적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제한된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가 공익실현을 위한 일반적 정치성을 갖고 진솔하게 공시될 경우에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결코 제한될 수 없다. 이 때 보호되는 프라이버시의 내용은 특정한 호기심이 아닌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공인의 명예권은 이미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관심을 통해 신장되기 때문에, 공인 개인의 명예권만을 위해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전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다. □

〈참고문헌〉

* 해설서:

- Bonner Kommentar(1994): Kommentar zum Bonner Grundgesetz (Loseblatt), Bd. 1.
- Jescheck, Hans-Heinrich/ Ruβ, Wolfgang/Willms, Gü-

ntner(1989):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Bd. 5, 10. Aufl.

- v. Mangoldt, Hermann/Klein, Friedrich(1992): Das Bonner Grundgesetz, Bd. 1, 3. Aufl.
- Maunz, Theodor/Dürig, Günter(1994): Grundgesetz-Kommentar (Loseblatte), Bd. 1.
- von Münch, Ingo(1992): Grundgesetz-Kommentar, Bd. 1, 4. Aufl.
- Starck, Christian(1985): Das Bonner Grundgesetz, Bd. 1, 3. Aufl.

* 일반문헌:

- Bettermann, Karl-August(1964): Die allgemeinen Gesetze als Schranken der Pressefreiheit, in: JZ, p. 604.
- Branahl, Udo(1994): Medienrecht. Eine Einführung. Westdeutscher Verlag.
- Frowein, Jochen Abr.(1980): Reform durch Meinungsfreiheit, in: AöR 105, p. 169.
- Gehrhardt, Erwin(1975): Gewaltdarstellungsverbot und Grundgesetz, in: NJW, p. 357 ff.
- Häntzschel, Kurt(1932):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HdbStR II, p. 659.
- Hermann, Günter(1994): Rundfunkrecht, Fernsehen und Hörfunk mit neuen Medien, Verlag Beck.
- Hesse, Konrad(1993):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 Aufl.
- Kübler, Hans-Dieter(2000): Mediale Kommunikation, Niemeyer.
- 이진구(2006): 독일헌법 제5조의 의사공시권 보장에 관한 고찰, 동아대 사회과학논집 제25집 2호, pp. 59 ~ 91.
- Leisner, Walter(1962): Begriffliche Grenzen verfassungsrechtlicher Meinungsfreiheit, in: UFITA 37, p. 129, 144.
- Maunz, Theodor/Zippelius, Reinhold(1994): Deutsches Staatsrecht, 29. Aufl.
- Paschke, Marian(1993): Medienrecht, Springer Verlag.
- Rothenbücher, Karl(1928):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VVdStRL 4, p. 20.
- Schefold, Dian(1982): Politische Zeitschriften jugendgefährdend? in: RdJB, p. 121.
- Smend, Rudolf(1928):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VVdStRL 4, p. 52.
- Zelezny, John D.(1997): Communications Law: Liberties, Restraints, and the Modern Media, 2. Edition.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

최 낙 진

제주 중재위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23일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낙진 위원(제주 중재위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이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제주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현주 중재부장(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시회로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서론

‘언론분쟁’ 해결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언론중재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언론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년도 이용만족도 조사’¹⁾에 의하면 언론조정제도가 취재보도과정 및 편집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굳이 앞선 평가들이 아니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언

론피해자들에게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언론인들 스스로에게도 언론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적 자세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활동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구제를 오히려 지연시키기도 한다는 견해와 이 제도가 어느 면에서는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또한 언론사들이 언론 분쟁이 종료되고 나면 예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긍정적 평가든 부정적 평가든 언론중재위원회의 무용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입장 모두 언론중재제도의 활

1) 언론중재위원회, 2007. 12.

주제논문

성화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고, 그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의 보도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논의들 속에는 언론의 사회적 환경감시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담겨져 있다. 이들 논의들은 각자 여러 가지 다른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나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언론조정 및 중재신청이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언론조정신청이라는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단순화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오보와 허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신청대상 뉴스보도가 잘못된 경우이다. 기사 작성 및 표현상의 잘못으로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을 가져온 경우이다.

둘째는, 기사작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 '정보(正報)'라 가정하더라도 신청인이 그 기사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직접적 발단은 공표된 언론보도 뉴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이 어떠한 뉴스구조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

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신문사별로 조정신청 사건의 신청인과 중심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떠한가?

- 2-1 : 신문사별로 보도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 2-2 : 신문사별 취재원 실명·익명 처리는 어떠한가?
- 2-3 : 신문사별 취재원 인용유형과 그 표현 형태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분석대상 기사 표본추출은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중앙일간지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앙일간지 조정신청건수는 206건이었으나, 하나의 기사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 손해배상청구 등이 함께 신청된, 즉 병합청구가 이루어진 건수를 감안하면 169건의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69건의 조정신청대상 기사 가운데도 동일 기사가 각각 다른 신청인에 의해 청구된 사례를 감안한 결과 실제 분석대상 기사로 추출된 기사는 총 164건이었다. 기사 추출은 2007년도 연차보고서에 근거하여 중앙일간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기사 전문(全文)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측정항목

이 연구의 기본 취지는 조정신청대상 기사가 어떠한 뉴스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여 기사분류를 하였다.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항목으로는 ① 신청인 유형, ② 기사 유형, ③ 기사의 중심 주제, ④ 정보원 인용의 유형, ⑤ 기사의 보도행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가. 신청인 유형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년도 연차보고서 신청인 유형 분류에 따라 개인, 회사, 이익단체·일반단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타 등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다만 이 유형 중 일반단체 항목에 노조, 협회, 조합, 학부모회 등 이익단체를 병합하여 이 두 단체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나. 기사 유형

기사유형도 2007년도 연차보고서에 준하여 스트레이트, 사설, 논단·칼럼, 인터뷰, 외부필자기고, 비평, 탐사·심층·기획보도, 만화·만평, 사진, 통계표, 가십,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다.

다. 기사의 중심 주제

기사의 중심주제는 분석하는 기사 항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정치, 정책·행정, 경제, 환경, 교육, 여성·복지·의료, 범죄·경찰·사고·재난, 문화, 스포츠·연예·오락, 인물·미담·동정, 기타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도기사의 경우에는 제목과 리드(lead)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행위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핵심주제를 선택하게 된다.

라. 정보원 인용의 유형

정보원의 인용 유형은 '정보인용출처'와 '정보제공자의 실명·익명 여부', '직접인용의 유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정보인용 출처는 정보제공자가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는 사람으로, 기관명만 밝혀진 경우는 기관으로, 보고서 등 자료에 의존한 기사는 자료로 분류하여 다중체크를 하였다.

마. 기사의 보도행태

기사의 보도행태는 기사가 일정한 견해나 관점 혹은 편향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리드(lead)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 여부', '기사의 보도태도', '기사의 성격'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사의 보도태도는 뉴스가 '긍정적·호의적', '중립·양비론', '비판적·부정적' 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제목과 리드기사만을 보고 판단하였다.

기사의 성격은 2개 이상의 상반되는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이 담겨있는 기사는 '상반의견제시형'으로, 상반된 의견이 없이 어느 한 쪽만의 입장을 싣고 있는 기사는 '일방의견제시형'으로 분류하였다.

3) 측정항목 관련 논의들

저널리즘 측면에서 익명보도에 대한 경계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취재원의 익명처리

주제논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 및 인격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조정 및 중재과정에서는 취재원의 익명보도가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려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하지만 최근 <한겨레>가 발표한 '취재보도준칙'에 따르면 익명취재원을 사용할 경우 "그 이유를 기사에 밝히고",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익명취재원의 일반적인 지위를 되도록 자세히 적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오보와 허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취재원의 익명보도도 문제이지만, 익명취재원의 발언이 직접인용구로 처리되면 더욱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익명취재원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로 사용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취재원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헤드라인(제목과 부제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갖는 기사 결정성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직접인용구는 그 기사를 믿을만하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밝히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를 직접인용구로 처리하거나 사람이 아닌 기관을 직접인용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직접인용구는 절대로 제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제목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사 내용이 과대포장되거나

침소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은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인간적인 체취를 가미하게 되며, 직접관찰에 못지않은 사실로서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자들은 인용을 기사 내용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기제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사 본문 내용과 불일치하는 직접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과 아예 기사본문에도 없는 내용의 직접인용부호를 이용한 기사제목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는 신문들이 이러한 제목을 통해 기사내용을 '선정적으로 포장'하거나 '기사 내용을 주관적으로 윤색'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자입장에서는 취재원의 장황한 진술을 축약하여 편집하다보면 주관적 술어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사실적 직시보다는 정황적 직시를 우선하여 이를 인용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논의를 펼 수도 있다.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기자가 실명취재원을 밝혀 취재가 가능함에도 취재의 편익을 위해 익명을 남용하다 보면, 기자는 취재원의 '여론떠우기'에 동원될 수도 있고, 기자입장에서는 부정확한 보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인용과 취재원 적시는 언론의 신뢰성, 객관성, 사실성, 전문성 입증 및 제고와 직결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판례들은 불완전한 익명처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부 익명보도가 취재의 불안전함과 독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여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

을 증폭시킨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는 불완전한 익명처리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저널리즘적 논의와 중재법상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는 취재원의 익명성을 두고 상충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다수 조정신청 관련기사에서 익명처리의 불완전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기 마련이다. 언론분쟁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충돌로 요약할 수 있다. 익명처리 정도는 여기에 취재보도의 성실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4) 코딩절차

신문기사 분류 및 코딩은 연구자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학생 1명과 함께 미리 작성된 코딩지침에 따라 164개 기사 전수를 코딩하였다. 따라서 코더 간 신뢰도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4. 연구결과

1) 신문사별 언론조정신청인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를 신청인별로 보면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앙일간지의 신청인 현황을 보면 기사 164건 중 국가기관이 35.4%, 개인 33.5%, 이익/일반단체 14.0%, 지자체 및 공공단체 6.1%, 회사 5.5%, 교육기관 4.9%, 종교단체 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일간지에서 국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청인 개인은 매우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독 중앙일간지에서 국가관련 언론조정 분쟁이 매우 높았음을 알게 한다.

2) 신문사별 중심주제 현황

언론조정신청대상 기사들을 종합하여 중심주제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행정(29.3%), 정치(26.2%) 등 국가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신청인 개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사건/재난(18.3%)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10.4%)과 관련한 기사도 높게 나타났다. 언론조정신청대상 기사의 중심주제 분류에 따르자면 중앙일간지에서 유독 정치 및 정책 관련 주제가 많이 다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사별로 중심주제 현황을 보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기사 수가 다른 신문사들에 비하여 많기도 하지만, 이들 신문사에서 정치, 정책·행정 관련 기사들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 리드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 여부

보도기사에서 리드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자의 주관이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리드가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기사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에서 보면 언론조정대상 기사 164건 중 90건(54.9%)이 리드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74건(45.1%)이 리드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사 중

주제논문

스트레이트 기사가 90%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리드가치 부여 기사 비중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 기사 중 스트레이트 기사에 리드가치를 과다하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신문사별로 보면 세계일보(100.0%), 국민일보(83.3%), 경향신문(77.8%), 서울신문(69.2%), 문화일보(68.0%), 한겨레(59.1%) 등이 리드가치 부여를 전체평균(54.9%)보다 높게 리드에 술어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드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신문은 중앙일보(69.2%), 조선일보(67.6%), 동아일보(52.0%), 한국일보(50.0%) 등이 리드가치 미부여 전체평균(45.1%)보다 리드에 술어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기사쓰기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차이

신문사별 보도태도를 보면 전체기사 164건 중 비판/부정적 기사(59.1%)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중립/양비론(37.8%), 긍정/호의적(3.0%) 순이었다. 비판/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것은 고발형 기사나 감시형 기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립/양비론 기사의 비율로 볼 때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부정적 보도태도를 신문사별로 보면 경향신문(88.9%), 서울신문(84.6%), 문화일보(80.0%), 내일신문(71.4%), 동아일보(68.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립/양비론적 보도태도는 세계일보(75.0%), 한국일보(66.7%), 한겨레(59.1%), 중앙일보(53.8%), 조선일보(50.0%), 국민일보(50.0%) 등이 전체 평균 비율 이상의 빈도를 보여주었다.

5) 신문사별 기사성격

신문사별 기사성격을 상반의견제시형과 일방의견제시형으로 나누어 보면 일방의견제시형(58.5%)이 상반의견제시형(4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도기사가 2개 이상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 일방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일방의견제시형 기사는 국민일보(83.3%), 조선일보(70.6%), 중앙일보(69.2%), 한국일보(66.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반의견제시형 기사는 내일신문(71.4%), 한겨레(54.5%), 문화일보(52.0%), 세계일보(5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신문사별 실명·익명 처리

신문사별 실명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사 중 취재원의 실명이 한 명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실명처리 무' 포함 기사는 76건(46.3%)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의 실명이 최소한 한 건 이상 드러난 '실명처리' 기사는 88건(53.7%)으로 나왔다. 실명처리 무 기사는 한국일보(88.3%), 서울신문(61.5%), 동아일보(56.4%), 문화일보(5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처리는 모든 신문에서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일보에서 익명처리 기사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할 만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서는 전체 평균(22.6%)보다 약간 높게 익명처리 기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취재원을 아예 적시하지 않은 유사인용의 경우도 모든 신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일보, 내일신문, 한국일보 등에서는 유사인용을 하지 않은 기사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향신문(88.9%), 동아일보(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68.2%), 서울신문(61.5%), 중앙일보(61.5%)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한겨레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익명취재원을 제한했던 '취재보도준칙'의 공표가 있었으나 언론조정대상 기사에서는 그 실효가 아직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신문사별 인용유형 현황

신문사별 인용유형 현황을 보면 사람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구성한 기사는 단 한 건이었다. 반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기관과 자료만으로 구성된 기사는 21건(12.5%)이었다. 기관과 자료만이 취재원으로 등장한 기사는 국민일보(33.3%)와 중앙일보(30.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람과 기관 그리고 자료가 변갈아 취재원으로 등장한 기사는 142건(8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재원 유형의 다양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과 자료를 의인화하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8) 신문사별 제목인용

신문사별 제목의 따옴표인용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기사 164건 중 61건(37.2%)에서 따옴표인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제목에서 가장 많이 따옴표인용을 사용하는 신문사는 한겨레(59.1%)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계일보(50.0%), 조선일보(47.1%), 경향신문(44.4%), 동아일보(40.0%) 순으로 나타났다.

제목에 따옴표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신문사는 중앙일보(7.7%)였으며, 서울신문(15.4%), 국민일보(16.7%)에서도 낮게 사용되고 있었다.

9) 제목인용과 본문인용 일치 여부

제목에 인용된 따옴표 내용이 본문인용 따옴표에서 가져오는 정도를 조사해본 결과 제목인용과 본문인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9.3%로 나타났다. 본문에 없거나 본문 따옴표인용에도 없는 내용이 제목 따옴표로 나오거나 혹은 그 내용이 일부 변한 것은 편집자의 주관적 술어 구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문사별로는 중앙일보(100.0%)가 가장 높으나 1건이라 통계적으로 별반 의미가 없다. 해당 기사가 1건인 신문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문화일보(62.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한겨레(38.5%), 조선일보(37.5%) 순으로 나타났다.

5. 결론과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앙일간지 중 2007년도 언론조정 신청대상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얻었다.

첫째, 신청인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이 35.4%로

주제논문

제일 높게 나타났다. 2007년 한 해 동안 조정신청 사건의 전체 신청인 가운데 개인이 50.3%이고, 국가기관이 9.7%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중앙일간지에서는 국가기관이 언론분쟁의 주요 당사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일간지에서 국가 및 권력 기관에 대한 환경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중앙일간지와 국가기관 간의 대립이 여타 매체들에서보다 더욱 컸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절대 수나 빈도 면에서 볼 때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앞의 연구결과를 반영하듯 언론조정신청 대상이 된 중앙일간지가 다른 중심주제영역에서도 국가기관의 행위와 관련이 깊다 할 수 있는 정책·행정(29.3%)과 정치(26.2%) 영역을 다른 뉴스들이 55.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개인 신청인이 주를 이룬다 할 수 있는 범죄·사고 영역 주제는 18.3%로 나타나 국가기관 영역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일간지들이 국가권력기관의 정책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발하게 했으며, 국가기관이 언론의 대정부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언론의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언론정책기조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보도행태 측면에서도 중앙일간지 기사들이 일종의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작성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리드 부분에 언론사의 주관성이 내포된 경우가 많았다. 기사 도입부이자 기사 논조를 결정하는 리드기사 술어에 주관적 가치를

담은 기사들이 54.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성격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골고루 제시하는 것보다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기사가 58.5%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중앙일간지들이 환경감시와 사회고발이라는 기능을 우선시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서 사회문제에 대처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넷째, 취재원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취재원의 실명처리에서는 실명처리를 한 건이라도 하지 않은 기사들이 46.3%로 나타났고, 사람이 취재원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사인용도 76.8%나 되었다. 이는 중앙일간지들이 취재원의 정보 제공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익명취재원 사용을 제한할 것을 공표했던 한겨레도 이러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일간지의 취재원 보호 및 취재원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 취재보도의 불완전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중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즉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성실성의 의무'가 취재원의 '인격권'과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용유형에서는 사람이 아닌 기관과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의 신뢰도 확보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 부호를 37.2%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교과서에서는 스트레이트성 기사에서는 인용부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직접인용이 낳는 문제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특히 제목에서의 직접인용과 본문인용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9.3%나 된 점은 우리나라 중앙일간지들이 제목의 자극적 포장이나 주관적 윤색에 익숙해져 있음을 추론케 한다. 또한 이러한 점들이 언론조정신청 및 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앙일간지들의 언론조정신청대상 기사는 국가권력의 정치행

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사회고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환경 조성 과 충실한 취재 간의 불일치 문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취재원의 인격권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사 회 윤 현 주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고창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장, 전 중재위원) : 정보원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성실성을 위해서라도 보도 시 익명화하지 않고 실명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취재원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히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일 경우 고위공직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출두 시 관행상 사진을 찍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혐의가 있을 뿐인데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인식되곤 하는데 우리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확정판결

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는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운데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고 판결하는지 알고 싶다.

최낙진(발표자, 중재위원) :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익명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우리 언론의 취재 행태를 볼 때 취재원의 인격권 보호 측면보다는 불성실한 취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익명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익명처리가 언론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실명처리를 우

토 론

선으로 하다보면 꼼꼼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좀 더 정확한 취재가 이뤄질 것이다.

윤현주(사회자, 중재부장)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통상 언론기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존립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한다. 법원에서는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이 둘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차등해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철저하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떻게 두 권리를 조화롭게 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볼 것인가를 토대로 판단한다.

백진주(제주YWCA 사무총장)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는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 시민입장에서 조금은 어려운 발표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뉴스를 보고 분석하는 시각과 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추후 제주지역 언론에 대한 분석과 사례도 연구되고 발표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제주지역 언론들은 자기 색깔이 없어서 기사에서 아무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이든 기자든 자기 색깔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낙진(발표자, 중재위원) : 제주지역 언론의 뉴스구조 분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자료가 많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윤식(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회 사무국장) : 3, 40대의 비교적 젊은 세대는 주로 인터넷 신문에서 많은 정보를 구하고 또 뉴스 역시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의 ‘치고 빠지기식’ 보도행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인터넷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지역이라는 한계와 언론의 힘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 신문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석호(KBS제주 보도팀장)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000여 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중앙일간지에 한정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뉴스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앙지 164건을 제외한 상당수의 사건이 지방언론과 관련되었을 것이고 이들 기사까지 분석했다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뉴스구조상 중앙일간지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정치, 정책 중심의 기사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지방지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민원문제 등에 좀 더 집중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언론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는 사건도 대개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사건이나 환경문제 등 민원관련 내용이 많다.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 다음 기회에 좀 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주었으면 한다.

언론들이 자극적인 포장, 자극적인 제목 등 과도한 편집을 하는데 이것이 타인의 권익에 침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에 크게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언론의 색깔이 너무 비슷해 차별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언론이 욕심을 부려 다른 언론과 차별화된 색깔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하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게 지역언론의 색깔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최근 방송환경이 급속도로 변했다. 방송의 생명은 화면인데 방송화면에 대해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걸어오는 정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도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송환경 때문에 소극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이 상충되는 상황에 대해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제주지역에서도 언론보도와 관련해 조정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사전에 만나 협의하고 원만하게 끝내는 경우도 많다. 다만 언론중재제도를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자

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사법대응하겠다 식으로 반협박해 결국 취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

최낙진(발표자, 중재위원) : 중앙일간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논문 서두에서 충분히 말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사례중심의 서술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뉴스구조 특성을 학문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소스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일간지를 먼저 분석한 것은 결국 제주지역 언론의 뉴스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고태진(제주MBC 보도국장) :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중재법이 존립하는 이유는 그 동안 언론사, 공급자 중심의 보도가 생산되고 또 취재보도의 관행에 문제점이 누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 수요자 중심의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가 진일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수요자 중심의 뉴스를 만들다보면 공급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청자 중심의 뉴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가 지나쳐 뉴스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뉴스는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익명성을 강조하거나 특정업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쓰다보니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한 예로 얼마 전 값싼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토 론

데 언론들이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런 업체를 익명처리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국산제품은 엉터리가 많다’, 혹은 ‘값싼 제품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오히려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다수의 이익을 지키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각 방송사마다 보도준칙이 있고, 보도준칙상 취재원의 보호에 대한 의무사항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인의 신분을 밝힐 경우 어디까지를 공인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예를 들면 인기가수, 고위 공직자 등과 관련된 기사일 경우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부분도 법 개정 때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한다.

양예홍(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장) : 언론이나 사법부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경우 특히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얽혀 있는 보도일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해가 상충된 사안을 보도할 시 사전에 충분히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김용주(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보다는 언론들이 취재 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화했으면 하는 요망 정도

로 이해하겠다. 우리 위원회는 허위의 보도 또는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취재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강구한다거나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몇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중재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자 책자를 발행해 맹아학교 및 장애인협회 등에 보내고 있다.

김경호(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언론도 실제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수사기관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의 재판부도 실제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익명이나, 실명이나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과연 실제적 진실을 찾을 수 있는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봐야 한다.

한 특강에서 사진 두 장을 보여주고 수강생들에게 무엇을 봤냐고 물었더니 수강생 모두 각기 다른 대답을 했다. 사물을 보는 시각과 각기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기자 역시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시각과 입장이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 진실은 있으나 어떤 현상을 본 것에 더해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에 의거해 대답하기 때문에 다른 보도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언론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부연설명했다.

이처럼 정보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두 법익 간의 비교형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등 익명성의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고 논의가 펼쳐졌으면 한다.

강선종(제주타임스 총괄부장) : 오늘날 각종 언론 매체가 범람하면서 많은 미디어들이 살아남기 위해 허위기사, 흥미유발성 추측기사, 고발성 업포기사 등을 다량 생산해내고 있다. 특히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은 독자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치고 빠지기식’ 기사도 범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이런 ‘치고 빠지기식’ 기사 혹은 ‘아니면 말고 식’ 추측 기사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절차를 밟는 동안 그 피해가 막대해 망할 수밖에 없다. 추측성 기사나 허위고발성 기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익명을 최대한 줄이고 실명화해서 추측기사가 생산되지 않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영조(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 언론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 좀 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아주 본질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고자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오보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인격권 침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법적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다.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 보호를 받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향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보도로 인한 법적·제도적 피해구제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도 얘기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향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언론중재 제도를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직권조정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윤현주(사회자, 중재부장) : MBC PD수첩과 관련해 직권조정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다만 진행되는 내용에 비춰봐서 양측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에 대해 중재부가 이행을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직권조정결정이다.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법에 따라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김용주(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우리 위원회의 주 업무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

토 론

인이나 기관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MBC PD수첩의 경우 농림수산물부가 7가지 쟁점에 대해 정정과 반론보도를 신청했고 양 측이 2건의 정정과 2건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으로 내용상 합의했으나 보도제목을 정정으로 할 것이냐 반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되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현행 법률상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 매체에 한해 현재 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는 조정대상이 아니며 포털도 조정대상매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18대 국회에서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측성 보도나 고발성 기사에 대해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오면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홍보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교육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도 사실 중재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중재제도를 적극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언론사에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요청한다면 언론전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성종(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논문 14 페이지 표 7의 취재원 실명, 익명, 유사인용의 유무를 구별한 것과 관련해 실명의 '없다' 항목은 익명의 '있다' 항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치가 다르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또한 익명 유형 가운데 보도상의 고위관계자와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포함했는지 궁금하다.

신청인 유형 및 중심주제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언론중재위원회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적인 분야의 보호에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보도로 인해 국가기관이 입는 피해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 피해보다는 국가기관의 피해구제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평범한 개인의 경우와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등은 구분하여 피해구제 수준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낙진(발표자, 중재위원) : 혼돈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사를 분석해보면 한 기사에 여러 명의 취재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명과 익명처리의 기준은 논문에 밝혔으므로 이를 참조하였으면 한다. 또한 관계자라고 표시된 취재원은 모두 유사인용 항목으로 체크하였다.

참석자들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가기관의 언론조정신청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전체사건을 놓고 보면 개

인 신청 사건이 월등히 많았다. 다만 중앙일간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이 유독 많았다는 것이다. 중앙일간지의 사례만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피해구제에 치중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국가기관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비교적 높는데 이는 대개가 정책적인 문제, 시각과 견해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 조정신청되는 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인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많아 중재부가 오히려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창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장, 전 중재위원) : 몇몇 참석자께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민이 보호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중재위원 시절에 처리했던 사건 몇 가지를 예를 들고자 한다.

우선 직장 상사가 보험가입을 강요하자 이를 거절해 폭행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신문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정정보도가 나간 사건이 있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관련해 다세대 주택 살인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담배꽂초 때문에 살인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검찰조사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었다. 단순한 정정보도로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제주중재부에서 중재위원으로 있는 동안 공공기관의 조정신청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개인

신청 사건이었으며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공정한 조정에 임했던 기억이 있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우선 뉴스보도의 구조에 대해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평소 신문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당혹감을 느낀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그 비율이 40% 정도나 된다는 분석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제목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의와 익명기사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만 몇몇 참석자가 지적했듯이 지역언론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향후 이를 보완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국가기관의 신청건수가 중앙일간지의 35.4%를 차지했다는 분석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믿음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국가권력이 천상(天上)의 높은 곳에서 지상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위로 내려오고 있다. 즉 권력이 민주화되고 개인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할

토 론

수 있다. 그만큼 국가권력이 민주화되었다는 징표이다.

언론중재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이 두 가지가 경우에 따라 충돌하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하는 권리로 국가권력이 표현을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간섭할 경우에 갖는 대국가적 권리이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대국가적 자유에 그치고 있지 않다. 이제는 언론이 상당부분 권력화되었다는 지적과 시각이 있는데 결국 언론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해야 한다. 언론이 대국민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할 때 언론이 권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언론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치명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제 언론매체와 국민, 개인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책임문제도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라고 이해한다. 공공의 이익이 문제가 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재고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하나의 권리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매체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쌍방을 설득해서 합의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곡해해서 우리 위원회를 언론탄압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근 MBC PD수첩과 관련해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언론탄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등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의 존재와 진정한 기능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 □

알권리와 인격권의 범위 및 한계

- 피의자 신상공개보도 논란을 중심으로 -

차 용 범

부산시보 편집실장 · 동아대 언론대학원 겸임교수

1. 논의를 시작하며

- 이론적 틀 뚜렷해도 현실적 틀 혼선 심각 -

범죄보도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인가, 감출 것인가(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중범죄자의 얼굴 역시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알 권리 대 초상권 보호)? 최근 한국사회를 달군 언론보도 과정의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반인륜·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안녕·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중범죄자의 신원, 나아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있다. 반면 범죄자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피의자의 익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있다.

피의자 신원공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잇따른

아동 대상 강력범죄와, 이 사건들의 원칙 없는 보도 및 보도통제 과정에서 출발한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같은, 온 사회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든 사건들은 좋은 사례이다. 경찰과 언론은 범죄의 반인륜성과 피의자의 잔혹성에 대한 비난이 높은 사건에서 일부 익명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¹⁾

지금의 보도 및 보도통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언론이 언론윤리·법제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적절하게 공개 또는 비공개하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의 공개를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저촉 여부를 지적하며 피의자의 신원 또는 얼굴을 보호하는 취지의 권고(결정)를 거듭, 일반의 반발을 사고 있다.²⁾ 최근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 논란에 관한 한,

1) 경찰은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범에게 모자와 점퍼를, 승려문 방화범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얼굴을 가렸다. 일산 초등학생 납치 사건 피의자의 경우 한 방송사가 CCTV에 담긴 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도 경찰은 관례대로 언론 앞에 그의 얼굴을 가렸다. 최근 검찰·경찰이 18대 총선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를 수사하며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 수감 찬 모습까지 공개한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인권적 차원에서 '피의자 신원보호'도 중요하나, 중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란을 촉발한 것이다.

2) 문화일보 2008. 4. 5. 자 11면. "흉악범 얼굴 공개 여부 뜨거운 논쟁"

법원·검찰은 ‘무방’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인권위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찰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³⁾

이 문제의 법적 논의는 결국 알 권리 대 인격권 보호, 곧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은 단순하다. 알 권리에 관한 논의, 특히 공인 논의에 있어 일정한 법 원칙을 확보한 국가들은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보지 않는 추세이다. 알 권리의 제한·한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의 범주를 공인(public figure) -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넘어 공공의 관심사(public concern)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까지 논할 수 있으나, 인격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국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법제화한 예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⁴⁾

이 문제는 인격권 중 우리 언론관계법이 보호하는 초상권, 또는 미국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⁵⁾와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달리 다루어

야 할 영역이다. 한국 법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초상권 보호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초상권 침해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기준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로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5조 2항). 보도의 이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우월하는 경우 정당한 취재·보도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취재·보도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보도목적의 공익성, 보도내용의 진실성, 보도방법의 적절성 등이다.⁶⁾

한국사회의 이론적 논의 역시 결론은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때 여러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되(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범죄보도에 있어 ‘공인 = 실명보도 가능, 사인 = 익명보도’ 원칙에 관례의 입장과 논의의 결과가 일치한다. 현행 법제 아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차원에서 긴급한 경

3) 최근 안양 어린이 납치살해범 정모(39)씨, 승례문 방화범 채모(70)씨 같은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은 ‘초상권 보호’ 대신 ‘공익 우선’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자백과 함께 확실한 물증이 나왔는데 경찰이 계속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초상권보다 범죄예방의 공익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근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익적 사안으로 그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인권위나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이다(조선일보 2008. 4. 4. 자 3면. “법원·검찰 ‘무방’ 경찰·인권위 ‘기본권 침해’”).

4)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같은 형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오히려 ‘기소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형법 제230조 2 제2항)라고 규정, 공익성의 목적을 충족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격권과 형사법상 권리보장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다는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이원석(2006),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죄의 관계. 대검찰청 해외연수검사 논문. p. 159).

5) 미국 법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은 ①사적 사실의 공개(Disclose of private fact) ②사적 영역의 침입(Intrusion upon seclusion) ③허위사실의 공개(Portrayal in a false light) ④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등이다(Donald M. Gilmor & Jerome A. Barron,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 West Publishing Company, MN: 1996, pp. 82 ~ 110). 미국 법원은 프라이버시와 언론 자유가 상충할 경우 역시 이익형량의 방법(ad hoc weighting of the competing concerns)으로 판단한다(박아란(2008, 봄), 미국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언론중재』, 통권 106호, pp. 18 ~ 19). 이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중요하다.

6) 김옥조(2006),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252; 장호순(2008, 봄), 다매체시대의 사진·영상보도와 인격권: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언론중재』, 통권 106호, pp. 5 ~ 6; 국가인권위원회 2006. 7. 24. 결정 04직인 34, 04직인 36 등.

우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진실성 등이다.⁷⁾

문제는 수사현장에서 일부 국가기관, 특히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허용 요건(위법성 조각요소)을 소극적으로 해석, 인격권 보호 위주의 보도통제를 고집하는 현실이다. 경찰의 처사는 법제의 균형 있는 해석을 포기, 사실상 행정편의 발상에서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범죄보도에 대한 최근 법원·검찰의 입장과 경찰의 지침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논의의 귀결은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때의 위법성 조각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특히 공공성 중 공인의 범주이다.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곧 공인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⁸⁾ 한국사회의 공인논의는 최근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공인논의의 추상성(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 등은 최근 공인논의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기존 범죄 공표 및 공보 지침을 개선하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2. 논란의 바탕을 보면

-언론의 제도적응 혼란 속 경찰의 행정편의 통용 중-

1) 법제·판례의 논의

일반 국민은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한국 법제는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금지 같은 인격권 보호규정도 두고 있다. 알 권리 같은 공익적 권리나 인격권 같은 개인적 권리 모두 헌법상 보장 받는 기본권인 만큼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결국 두 이익을 형량하여 보호의 범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⁹⁾

범죄사실의 공표, 또는 범죄보도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표·보도 내용의 공익성, 진실성(상당성 포함) 등이 그것이다.¹⁰⁾ 초상권 침해를 논한 판례들도 알 권리 및 인격권의 중요성,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심사하고 있다.¹¹⁾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많지 않다. 중범죄자가 소송을 제기한 예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7) 김경호(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2호, pp. 110 ~ 112.

8)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 형법 제310조가 요구하는 진실성, 공공성, 상당성을 갖출 경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비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긴 하나, 법리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요건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조각요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도의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과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의 기본책무를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성 판단의 시점과 근거자료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한 일부 판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는 위법성 조각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기관이 충족하기 어려운 허용요건을 요구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피의사실 공표의 보호법익을 피의자의 명예로 볼 때 사실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용, 공인범주를 확장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원석(2006). 앞의 논문, pp. 165 ~ 167).

9) 김옥조(2006). 앞의 책, p. 301.

10) 김경호(2004). 앞의 논문, p. 88.

11) 김상겸(2006, 4월). 검찰·경찰의 전문영역 수사와 법원의 판결. '전문영역의 언론 보도와 법원의 판결' 세미나 발제자료, pp. 12 ~ 1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피의 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수사기관과 언론사의 책임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언론사 책임)을 넘어, 수사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좋은 사례이다.¹²⁾ 이 판결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요건을 열거한 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범행동기, 범행내용, 수사방향 등을 상세히 언급하며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사유로 판시했다. 수사검사가 공표내용의 진실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101593 판결(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피의사실 공표)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아 수사기관의 책임을 면한 좋은 사례이다. 판결은 공표목적의 공익성(“사회적 유명인사의 성추문 사건이라면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 및 관심의 폭에 비추어 국민들은 범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공소제기 전 공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피의사실의 정확성(“수사관은 피의사실 공표 당시 혐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공표의 절차(“공식적 기자회견의 형식”) 등을 두루 인정,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판결은 원고가 공판과정에서 ‘혐의 없음’을 확정 받았으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확정 판결 때까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더라도, 경찰이 위법성 조각요건을 두루 충족한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언하며 쟁점별 심사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5. 12. 9. 선고 2005고정514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지법 2000. 4. 25. 선고 99가합67197 판결(손해배상 등)도 같은 취지로, 어떤 피의사실이든 공표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하는 한 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알 권리 대 인격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리 역시 같다. 언론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공적·사회적 사안의 경우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하여야 한다는 법리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최근 흐름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은 좋은 사례이다.

판결들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과 함께, 진실성 입증책임을 두루 심사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와 ‘진실한 사실’ 의미 및 판단기준, 보도사실의 진실성 증명책임, 보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의 존재, 수사진행 중인 범죄혐의의 보도 시 주의의무 내용 등을 살피는 것이다.¹³⁾

초점은 결국 ‘공인’의 범주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

12) 비슷한 판례로는 언론기관·수사기관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수사기관의 책임만을 문제 삼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판결, 서울지법 2000. 4. 25. 선고 99가합67197 판결 등이 있다(한용길(2000, 7월), 판례연구: 피의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월보』, 352호, p. 34, 재인용).

1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도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가의 문제이다. 범죄자에 대한 신원노출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익명보도주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공적 인물’의 경우 공개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는 법리이다(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등). 공인의 범죄 보도에 있어 진실성 내지 상당성 등을 충족시킬 경우 언론보도(실명 보도, 얼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보도현장의 논의

한국 경찰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알 권리, 또는 공익보다 인격권 보호를 우선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다. 2004년 ‘밀양여중생 성폭행사건’으로 인권침해 수사를 했다는 지적, 국가인권위로부터 수사관행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2005. 10. 4.)을 마련한 것이다. 훈령 85조(초상권 침해금지)는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이 있기 전까지, 경찰은 중범죄자의 실명·얼굴을 공개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1994년 ‘지존파’ 사건 일당, 연쇄살인범 은보현, 부모살해범 박한상, 1996년 ‘막가파’ 사건 일당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경찰이 중범죄자의 얼굴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의 흐름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쇄살인범 정남규 등에 이어, 최근 안양 초등학교 납치살해범 등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가족을 발길로 걷어차는 지나친 행위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 훈령 제83조에 ‘수사사건 언론공개 기

준’도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공판청구 전 수사사건의 언론공개를 금지하되,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공개를 허용한 것이다. 예외적 허용 사유는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법률이 아닌, 행정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용사유를 규정해 두고도 연쇄살인범, 초등학교 납치살해범 같은 중범죄자의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변양균·신정아 권력형 비리’와 총선 후 공직선거법 관련 피의자의 신원, 얼굴, 수갑 찬 모습까지 공개하며 유독 강력범죄 범죄자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원칙 없는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혼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잇따른 결정(권고)에 영향 받은 바도 크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광역시 광역시장 굴비상자 관련 사건’과 ‘만두소 사건’ 같은, 공인의 성격이 뚜렷하거나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무죄추정의 원칙·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법체제 하에서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 피의자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결정에서 경찰청장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7. 24. 04직인 34. 04직인 36 등 결정). 인권위는 한 노동단체 관련 수사 과정을 공표한 검찰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관련자 주의조치를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9. 10. 06진인 2175 결정).

인권위는 위 두 결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공표내용의 공공성이다.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은 일

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으로 한정할 것인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언론사의 취재 등으로 이미 사건이 국민에게 상당히 알려져 국민의 중대한 관심 대상이 된 경우”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어 경찰 훈령에 나타난 수사사건 언론공개 기준과 절차, 한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을 제정, 사건공보의 시기, 방법, 한계 등 구체적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는 경우(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경우)로, “국민의 의혹,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검찰은 알 권리와 인격권의 균형을 찾는 차원에서 이 준칙을 적극 해석하는 경향이냐, 전교조 교사의 북한 역사자료 세미나 같은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건을 기소 전 공표했다가 국가인권위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관련 결정들은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여부를 가림에 있어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 특히 공인 논의의 본질을 외면한 일부 한계를 안고 있다.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표내용의 공공성을 인정하고도, 공표의 필요성, 피의사실의 정확성 등을 문제 삼아 “공표행위로 사익이 침해되는 것은 명확한 반면 공익 보호성은 개연성이 크지 않다”며 공인에의 인격권 침해를 결정한 것이다.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우선적 가치, 특히 공인 논의에 대한 이해 부

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이다.¹⁴⁾ 이 같은 결정과정에서 공표의 필요성과 공표내용의 정확성을 인정하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보호할 공익은 국가의 존립안전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어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는, 최근 공인 논의의 흐름에 접근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9. 10. 06진인 2175 결정).

3. 공인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면

-공익성 확대인정 속 공인 범주 날로 확장-

명예훼손법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 자유에 상당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¹⁵⁾ 그럼에도 미국 언론은 대부분 공인에 대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의 적용을 받아 승소, 언론 자유가 헌법상 우위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추세는 원고로서의 공인과 사인을 구분, 공인의 명예를 낮게 보호하며 언론의 면책사유를 넓혀가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공인(공적 인물)의 이론은 상당한 법리적 바탕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

14)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역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만두소 사건’ 등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격권 침해행위로 판단한 뒤, 판단기준을 몇 가지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 등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이익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법의 균형성 등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표 내용도 공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사실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다룸에 있어 수사기관이 구체적 기준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최근 알 권리의 헌법적 해석 기준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8. 10. 보도자료,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15) 이재진(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 『한국언론학보』, 제43-4호, pp. 149 ~ 150; Donald M. Gilmore, Jerome A. Barron,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 St. Paul: West Pub Co.,(1996), p. 46; W. Wat Hopkins, *Communication and the Law*, AL: Vision Press(2002), pp. 42 ~ 43.

적 지위(신분)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적 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더라도 상당부분 공적인 관심사, 곧 공공이익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논리이다.¹⁶⁾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언론소송)의 판결 동향 역시 전체적으로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을 중시하며 그 자유의 보호를 지향하는 경향이다.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라도 공공성·진실성·상당성을 충족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공인 또는 공적 사항에 대한 공공성·진실성의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입장을 최근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¹⁷⁾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공적·사회적 사안의 경우 사적인 사안과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하며” 같은 표현의 흐름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순수한 사적 사안인지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여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있어, “표현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공표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함께,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표현의 흐름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법원은 종래 언론소송 심사의 한계로 지목받았던 공공성·진실성 확인부분에 대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 원고로서의 공인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관심사안을 적극 구분함으로써 공인개념을 정면에서 수용하며 공공성 인정범위도 대폭 확장하고 있다. 법원은 공공성을 인정한 뒤 진실성을 엄격하게 입증토록 했던 종래 입장이 변경됐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공인개념을 폭넓게 적용, 종래 진실성을 엄격하게 확인하던 판결기준을 바꾸고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16) 미국 명예훼손법은 공인개념을 ‘공직자(public officials)’로부터 ‘공적 인물(public figure)’ 혹은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까지 확대하고 있다. 공인관련 판결을 거듭할수록 공인과 사인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피해자의 신분(status based standard)보다는 보도내용(content based standard)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사인이라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연루된 사람에 관한 보도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민주정체에 있어 비판의 활성화라고 하는 대원칙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고 하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국 법원은 그 동안 공인개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종종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다만, 각각의 판결을 통해 공인의 범주를 ‘공적 관심사’까지 확장하고 있는 경향은 뚜렷하다. 각 사건 원고에 대한 공인 여부를 적극 심사하며, 언론사간 소송 판결에서 원고 신문사를 ‘공적 존재’로, 대학교수 비리보도 판결에서 대학교수의 행위를 ‘공적 관심사’로 민노총, 민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를 ‘공적 단체’로,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17) 성선제의 2007년도, 2006년도 및 한위수의 2005년도 국내언론관계 판결 동향 자료. 『언론중재』 통권 98, 102, 106호 참조.

2000다37524 판결¹⁸⁾ 등).

법원이 공인 소송을 심사하며 공공성, 진실성의 인정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¹⁹⁾ 법원이 공인관련 판결의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충분히 배려하며 공인논쟁의 획기적 좌표를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 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 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 기준 등)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의 결정은 한국 언론소송의 현실적 쟁점인 공인 문제를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으로, 공공성 문제를 ‘공적 관심사’라는 표현으로 구체화, 면책사유로서의 공인이론을 적극 확장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 사안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결정은 또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

론을 못하게 할 경우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보호 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결정의 판단기준을 수용, 판례를 변경²⁰⁾한 것은 2002년 1월 ‘민노총 대 한국농단’ 소송(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이다. 이 판결에 이어 각급 법원은 원고에 대한 공인 여부를 적극 심사하고 있다. 공인관련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그 동안 많은 패소를 거듭한 것은 법원이 공인개념의 적용을 배제하며 진실성을 엄격하게 입증하게 한 데 따른 결과이다.²¹⁾ 법원은 공적 영역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다 엄격한 책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익성을 다룸에 있어, 개인의 내밀영역의 보도 등에 있어서는 공인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다.²²⁾

법원이 현재의 언론 자유 해석기준에 따라 판결기준을 변경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인논의의 궁극적 취약점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것이다. 이 판결기준이 공인개념의 일반적 심사기준 부재, 입증책임 적용의 논리 부족 같은 미결과제를 남겨두고 있긴 하나, 앞으로 공인소송을 해결하는데 구체적, 현실적인 지표로 작용할 것임은 틀림없다. 공인개념을 대폭 수용하며 공공성·진실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에 접근하는 판결정신을 곳곳에 녹여낼 것이라는 것이다.²³⁾

18)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진실성 확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리는 종래 한국 법원이 언론소송 해결방안으로 유지해 온 일관된 판결기준이다(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9나3282, 3299(병합) 판결).

19) 차용범(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한국언론학보』, 제46-3호, pp. 429 ~ 431.; 윤재운, 함석천(2006). 언론 분쟁과 법: 언론의 비판기능과 새롭게 인식되는 인격권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5-1호, p. 424.

20) 법원은 선례구속력의 원칙(stare decisis)에 구속당하지 않고 선례를 회피할 수 있다. 사실 관계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건을 구별(distinguish) 지음으로써 선례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복잡한 사건 구별과정 없이 인용 법리를 정면에서 변경(overrule), 적용했다.

21) 차용범(2001).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pp. 387 ~ 421.

22) 김재형(2001, 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 78호, pp. 110 ~ 124.

23) 차용범(2002). 앞의 논문, pp. 437 ~ 438.

4. 결론으로

- '사회적 소통' 결과 바탕 신원공개 원칙 세울 때 -

범죄보도는 언론활동 차원의 중요성과 학설·판례상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에게 범죄의 발생양태와 일탈의 응보과정을 알려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계를 줌과 함께,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언론과 수사기관의 중요한 공적 과업의 하나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실명보도를 하든, 범죄예방 및 수사상 필요에 근거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든, 일정한 허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고도 정보사회 속의 국민은 범죄 자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접근을 넘어, 국가기관의 범죄대응 기능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전체라 할 범죄수사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방해배제를 청구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형법 특유의 피의사실 공표죄 존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²⁵⁾

이제 우리도 사회 안전과 인권보호의 균형을 적극 찾아야 할 시점이다. 사회의 규범가치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확인해야 할 바는 이 논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어떤 법제, 어떤 지침이든 국민의 동의 없이 정당성을 얻을 순 없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 수준을 찾기 위해 안양 초등학교 유괴 살해사건 이후 여론조사 또는 전문가 토론 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당시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80.2%,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8.3%였다. 결국 피의자 얼굴 공개를 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편의를 위해 가로막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아동·성폭력 납치에 대한 종합대책'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피의자 신상공개 방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한다든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공개하는 정보에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은 물론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아동 성범죄 경력을 포함한다.²⁶⁾

성범죄 억제방안은 세계적으로 강화추세임이 분명하다. 미국 일부 주나 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성범죄자를 거세하는 법률을 시행하거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는 해당 범죄자의 집과 차량에 '성범죄 전과자' 팻말을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는 범죄자의 얼굴을 도로변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²⁷⁾ 특히 미국 각주는 성범죄자 정보센터의 인터넷 사이트(예: 패밀리워치도그: familywatchdog.us)를 운영, 주변 전과자의 얼굴 정면사진과 범죄행위, 주소,

24) 김옥조(2006). 앞의 책, pp. 252 ~ 253; 이원석(2006). 앞의 논문, pp. 161 ~ 162.

25) 이원석(2006). 앞의 논문, pp. 199 ~ 200.

26) 중앙일보 2008. 5. 1. 자 12면. "아동 성범죄자 얼굴·주소 인터넷 공개".

27) 중앙일보 2007. 10. 24. 자 12면.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논란".

나이, 신장 같은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인 권보호보다 범죄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²⁸⁾

그렇다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들은 과연 단순한 성범죄보다 가볍기만 한 것인가? 우리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보다 가볍기만 한 것인가? 그 중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보호해야 할 만큼 알 권리,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가치는 가볍기만 한 것인가?

한국의 법 체계 아래서 언론 자유(알 권리)와 명예 훼손(인격권)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언론법제의 역할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 연구에 학제적 접근과 함께, 언론법의 특수성에 대한 풍부한 사례연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토했듯, 중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데 따른 법제적 장애는 높지 않다. 공공성을 다툼에 있어 상당 범위의 범죄·비리를 명예훼손, 또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이제 언론이 공적 이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적정한 선에서 공개 보도하려 해도 경찰의 공보훈령에 가로 막혀 있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현장에서 언론법의 특수성을 탐구하려 하거나, 애매하고 복잡한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조건을 점검하며 계속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분명하다. 경찰은 알 권리의 실현 차원에서

언론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언론은 언론윤리와 법제현실에 맞춰 공개, 비공개 선을 정하며, 명예훼손 행위가 있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상의 공개 수준은 이제 언론의 몫에 맡겨야 한다. 언론인, 그들은 언론 윤리·법제에 익숙한 전문직임을 믿어야 한다. 언론 역시 인격권 보호 또는 위법수사를 감시, 견제하는 권능을 갖고 있는 만큼 늘 인격권 보호를 염두에 두며, 알 권리 실현에 나서면 되는 것이다.²⁹⁾ 노무현 정부가 총리 훈령(‘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2007. 5. 22.) 하나로 솔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취재에 대한 비협조, 제한적 정보제공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³⁰⁾ 언론 자유의 운용을 훈령 같은 행정 편의적 지침에 계속 묶어둘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권위수용이 매우 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권위의 위기는 결국 ‘법의 위기’이기도 하다. 피의자 신상공개 보도(피의사실 공표) 논란 역시 사회 일반의 충분한 쟁점제기와 관련기관의 적극적 논의참여를 통하여 수용할 수 있는 법리부터 가려가야 한다. 설득력을 가진 규정, 규정에 동의하는 사회, 그 법의 지배를 실천하는 사회를 국가기관과 언론이 앞서 이끌어가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28) 동아일보 2008. 5. 15. 자 16면, “위층남자, 37살, 175cm, 이웃소녀 성폭행”

29) 언론보도 과정의 분쟁은 언론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많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 자유 사이의 한계가 명확하면 할수록 언론사의 자율적 활동 영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문재완(2006), 언론의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언론과 법』, 제5-2호, pp. 22 ~ 41 등).

30) 조선일보 2008. 5. 17. 자 2면: 관훈클럽 언론 세미나 ‘새로운 언론진로의 모색’ 발제 논문; 경향신문 2008. 5. 10. 자 1면, “정부 ‘언론 통제’ 논란 확산” 등.

영국 법원, 포경업 반대시위 펼친
십대 소녀 신원공개보도
금지 판결 내려

영국 Westminster시 하급법원의 Quentin Purdy 판사는 『아이와 청소년에 관한 법률』 1933의 39 절을 근거로 주영 일본대사관 내에서 포경업 반대시위 중에 체포된 14세 소녀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법정 밖에 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까지 취한 데다 이들이 익명 처리되거나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보도되길 원치 않는다고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다.

Quentin Purdy 판사는 “이 십대 소녀가 하급법원에 출두한 것은 단지 이 소녀가 성인인 아버지와 공동 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성인인 아버지와 공동 기소되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자신의 익명성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소년법원에 출두했을 것”이라며 소녀의 신원에 대한 공개보도 금지 명령을 백지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녀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 1월, 주영 일본대사관 울타리에 케이블 끈으로 몸을 묶은 채 영국 남쪽 해안에서 포경 조사를 하는 일본 탐험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불법침입죄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소녀의 신원은 각종 미디어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공개된 바 있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11일자)



‘Big Brother’ 쇼 주인공,
언론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영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인 ‘Big Brother’ 시즌 4의 주연 Lisa Jaynes(39세, 모델)이 2006년 5월에 발행된 잡지 「Love it!」과 「News of the World」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Lisa Jaynes는 문제의 매체들이 자신을 “‘Big Brother’ 쇼의 늙은 중년남자 Lisa, James Heitt와의 데이트 중에 가짜 젓가슴이 빠져나왔다”라고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Big Brother’ 쇼에서 여장 남자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Lisa Jaynes는 기사에 등장한 “성전환 참가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자신이 “실제로는 남자이면서 여자나 성전환자인 체 했다는 걸 뜻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ews Magazines」사와 「News Group Newspapers」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축하면서 문제가 된 어구는 적절한 맥락에서 쓰였으므로 Lisa Jaynes의 억지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까지 간 이 사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 판사 Eady는 지난 4월, Lisa Jayne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ady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문제가 된 어구들이 Lisa Jaynes가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Eady 판사는 “원고 Lisa Jaynes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Lisa Jaynes는 그녀의 변호사 Adrian Davies와 함께 항소법원에 나와 이번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Lisa Jaynes의 변호사는 “Eady 판사

의 판결은 ‘늙은 중년남자’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만 국한시킨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은 Eady 판사의 판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목요일 오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8년 1월 28일자) □

인터넷상 표현에 대해 상당성 인정, 명예훼손 부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라면 체인점을 중상하는 문장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회사원 橋爪研吾 피고(36)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관해 기존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새로운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을 적용,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조사만 있다면 오신(誤信)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200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라면 체인점이 켈트 종교집단과 일체(一?)인 것처럼 작성한 문장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용의 진실성을 부정한 다음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한 정보의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정보 발신은 반드시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거할 필요는 없으며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발신했든가 ②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조사로 진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신했을 때 비로소 명예훼손이 추궁된다”고 판

시했다.

또한 “인터넷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자는 용이하게 가해자에게 반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기존 매스미디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자기검열로 위축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고 헌법 21조가 요청하는 정보나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쿄지검은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3월 18일자) □

여배우 Sienna Miller, 자신의 누드를 몰래 촬영한 사진기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여배우 Sienna Miller는 최근 출연 영화 ‘Hippie Hip-pie Shake’ 비공개 촬영 중 자신의 탈의 장면을 찍은 사진기자 Warren Richardson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Sienna Miller는 「News Group Newspapers」와 「Xposure」로부터 다시는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37,5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

Sienna Miller의 변호사인 David Sherborne는 “Sienna Miller가 옷을 벗고 호수에 들어가는 장면을 몰래 포착한, 매우 불쾌한 사진들로 인해 Sienna Miller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David Sherborne은 “사진기자 Warren Richardson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Warren Richardson이 Sienna Miller의 동의 없이 망원렌즈를 사용해 문체의 사진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David Sherborne은 “Sienna Miller의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된 것은 그녀의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진들이 촬영된 맥락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Sinenna Miller는 이전부터 늘 괴롭힘과 인격에 대한 침해를 감내해야 했는데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착해 달려들던 파파라치들로 인해 특히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던 런던 고등법원 Eady 판사는 Sinenna Miller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촬영된 사진들을 Sinenna Miller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Press Gazette 2008년 1월 17일자) □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놓고 영국 법원 고심 중

레스토랑 비평 기사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The Irish News」지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전직 택시 기사 Ciaman Convery이 1991년에 개업한 식당 ‘Goodfellas’를 「The Irish News」지의 음식평론가 Caroline Workman이 2000년 8월 칼럼을 통해 비판한 것으로 인해 촉발됐다. 당시 음식평론가 Caroline Workman은 West Belfast의 Kennedy Way 지역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과 음료 품질 및 직원의 서비스 그리고 담배연기 자욱한 실내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다. Caroline Workman는 ‘Goodfellas’에 대해 별 다섯 개 중 하나를 매기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실망

스런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Goodfellas’주인 Ciaman Convery는 “문제의 비평이 난도질에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 비평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The Irish News」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The Irish News」지 측은 즉각 상고했다. 「The Irish News」지 측 왕실고문변호사인 Lest경은 “악의적이거나 부정직한 목적이 없는 한, 어떠한 평가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Lest경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은 비평가가 극장이나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난 뒤에 별 하나건 다섯 개건 ‘평가’를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est경은 “악의나 부정직한 의도 없이 평가를 했다는 것까지 (늘) 증명해야 한다면, 음식이나 극장 안내 책자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내리건 간에 매번 비평가는 불쌍사나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st경은 “성공적인 변론이 이루어졌으므로 「The Irish News」지가 ‘Goodfellas’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25,000파운드의 배상금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석판사 Brian Kerr경과 두 명의 배석판사는 이틀 간의 난상토론 끝에 판결을 유보했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의 뼈대는 사실과 논평의 차이점을 두고 오고 간 다양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비평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4일자) □

누군가가 죽어야 끝날 유명 인사에 대한 지나친 사진 취재경쟁

파파라치 Nick Stem은 사진기자들이 팝 가수 Britney Spears의 정신질환을 취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Splash News」를 사직했다.

30여 대 가량의 취재차량이 Britney Spears를 몇 주간 따라다니는 가운데, 파파라치 Stem은 이런 상황에서 Britney Spears의 사진을 더 이상 찍을 수 없다고 「Splash News」 측에 말했으며 「Splash News」 측은 곧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First News」라는 언론사를 경영하기도 했던 Stem은 「Splash News」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널리스트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하는데 Britney Spears 관련 취재는 도를 넘어섰고 너무 격렬하다”고 말했다. Stem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20 ~ 30대의 차량이 신호등도 무시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Britney Spears가 죽든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가 죽든지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Stem은 “우리를 이룬 사진기자들이 다른 사진기자 차량을 막아 버리거나 도로 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사진기자들이 접근하는 차량을 향해 역주행하는 것도 용인되어 가는 실정”이라며 “Britney Spears가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면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Stem은 “영국에서 거의 15년 간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사진기자 무리들과 일

하는 데 익숙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숙련된 사진기자들이 아니며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들의 취재 방식과 행동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Stem은 「Splash News」에 대해 “잘 운영되는 매우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묘사하면서 「Splash News」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고 밝혔다. Stem은 또한 “「Splash News」가 영리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Stem은 “LA에서 다시 고용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LA, New York, London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잘 했다’는 내용의 격려와 지지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tem은 “LA의 경험들과 비교해 보면 영국 PCC가 근 15년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 “LA는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서 사진기자들이 사진을 얻기 위해서 사적인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은 무척 놀랍다. Britney Spears 경우야 두말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한편 「Splash News」의 공동 설립자인 Gary Morgan은 「Press Gazette」와의 인터뷰에서 “Britney Spears 관련 취재는 통제 불능이다. 사진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 아마추어 사진기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Gary Morgan은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Britney Spears의 사진을 촬영할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앞서 그 사진을 웹에 올리지만 하면 그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고 만다. 최초 사진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기민함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Gary Morgan은 유명 인사들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에 대해 '무법자'에 가까운 사진기자들이 광각렌즈를 사용해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Gary Morgan은 "LA가 경찰이 유명 인사를 찍는 사진기자들에게 취재 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유명 인사를 촬영하는 사진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Gary Morgan은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Britney Spears 취재 상황에 대해 "Britney Spears는 진정한 뉴스거리이다. 「AP」, 「Reuters」, 「The LA Times」, 「Sky」 등의 우수 언론사들이 모두 Britney의 집 밖에서 취재하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말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사거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 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Britney Spears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Monica Lewinsky를 귀찮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Britney가 Monica보다 좀 더 거물이라는 사실 외에는 두 사람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며 최근의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11일자) □

체포 실명보도 명예훼손 안 된다

- 일본 那覇지방법원 판결 -

일본 오끼나와현(沖繩縣)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된 공립중학교의 남성교사가 자신의 체포상황을 실명으로 보도한 NHK와 오끼나

와현의 민간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那覇(나하)지법 민사 제2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실명보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07년 3월 소년에게 문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11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NHK와 琉球방송, 琉球朝日방송, 오끼나와TV 등 4사는 원고의 체포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도가 경찰발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물리쳤다. 실명보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고 일반 공무원보다 한층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립 학교 교사의 직무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상응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는 경찰에 의한 실명발표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현(縣)당국 역시 제소한 상태다.

(『신문협회보』 2008년 3월 25일자) □

경찰취재를 유일한 근거로 「혐의」를 보도한 두 신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일본 사이다마현(埼玉縣)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과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 민사 제28부는 지난 2월 19일 명예훼손을 인정, 『요미우리』 측에 220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동지 2004년 5월 26일자 조 ·

석간 기사와 27일자 조간 사설인데, 원고가 일본에서 ‘알카에다’의 활동자금을 조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견해 등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경찰간부로부터 취재한 내용만을 거의 유일한 근거로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요미우리』 측은 항고했다.

한편 『産經신문』도 같은 사건으로 피소되어 지난해 12월 10일 도쿄지법 민사 제30부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33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언도받고 항소했다. 동 신문은 2004년 5월 27일자 조간에서 “알카에다 잠복 지하은행에서 테러자금 간부와 접촉남(男) 체포, 10억 원 해외송금”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진실성이 있다”는 『産經』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취재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었던 혐의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단정적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농후한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8년 2월 12일자, 3월 25일자) □

부모를 딸의 살해범으로 보도한 영국신문, 1면에 사죄기사 게재

- 화해금도 55만 파운드(약 10억 원)로 파격적 -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4개 신문은 지난 3월 하순, 행방불명 중인 딸의 부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1면의 거의 전부를 할애한 사죄광고를 파격적으로 게재했다. 발행원인 「익스프레스 뉴스페이퍼즈」사가 지불하는 화해금도 55만 파운드(약 10억 원)

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화해금으로는 파격적인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25만 파운드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보다 크게 높다.

이번의 사죄기사는 지난해 5월, 포르투갈 휴양지에서 행방불명된 마데린 맥간(당시 4세)양을 둘러싼 보도에 대한 것이다. 4개 신문 중 『데일리 익스프레스』지는 1면 거의 전부를 사죄기사로 할애하여 “근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데린 양의 부모가 딸의 살해자라는 보도를 되풀이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마데린 양 사건의 발생 당시, 마데린 양의 부모는 연일 미디어에 등장해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딸을 찾기 위한 수색 협조를 호소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BBC 등 방송국은 유명 캐스터를 현지에 파견, 연일 실황중계를 했으며 고급지를 포함한 영국의 각 신문은 이 사건을 연일 1면에 게재했다. 발행부수를 늘리고 시청률을 높이려는 미디어 측의 의도와 노출도를 높여 딸을 찾으려는 마데린 양 부모의 생각이 합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종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디어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얻은 정보나 억측에 근거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해 9월, 지역경찰이 마데린 양의 부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를 계기로 언론의 마데린 양 부모에 대한 취급이 크게 달라졌으며,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보도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신문은 ‘양친이 딸의 시체를 유기했다’, ‘채무변제 때문에 살해했다’는 등의 기사를 100개 이상 게재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4월 1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회사가 ○○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고,
 부도난 모 업체가 전신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6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의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8. 4. 22.
 처리결과 : 각 합 의

보도내용

데일리팜 : 『○○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9일자)
 내용 : 심바스타틴을 2원에 낙찰시키는 등 저가
 낙찰 파문을 낳고 있는 ○○병원 입찰과 관련 제약
 들의 의약품 공급여부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략)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의약. 지난 1차
 입찰을 통해 61품목과 4개 그룹을 가져가면서 20억
 원 상당을 낙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와 함께 이번 입찰에서 파란을 일으킨 ○○의약
 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설립배경
 부터 배후의 인물 존재 여부까지 추측들이 이어지
 고 있는 것.

○○의약은 부도난 모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
 동투자를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자가 타 도매상 경리부서 출신인 것으
 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배후에 또 다른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의약 주식회사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9일자 『○○병원 저가
 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에서 ○○
 의약 주식회사가 ○○병원 입찰관련 문제의 중심에
 서 있으며 낙찰시킨 의약품 규모가 20억 원에 이른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약은 부도난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되었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0원

합의사항

1. 제 목 : ○○의약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9일에 『○○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에서 ○○의약이 부도난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배후에 또다른 업체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약'은 현 대표이사 이○○이 작년 7월에 '○○팜(2002년 설립)'을 단독으로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팜'과 '○○의약' 모두 부도난 사실이 없으며 '○○의약'의 배후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3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게재하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4시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팜> 초기화면 왼쪽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3.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

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팜 : 『○○병원 정기입찰 ○○의약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경찰서가 안양 초등생 시신 수색 중 사산아 2구를 발견했는데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서부경찰서 (서장 이 동 수)

피신청인 : 고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고뉴스 : 『안양 故 해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취쉬'』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경찰이 안양 초등생 사건 수사 당시 故 이 해진 양 시신발견지점 인근에서 암매장 상태의 사산아 2명을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산아는 현행법상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당시에는 안양 초등생 사건이 실종에서 살해·암매장 사건으로 번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사산아 2구 추가발견 사실조차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사산아 2구는 텃줄이 감겨 있는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돼 수원○○병원 영안실에 안치했으며, 이런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략)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 등 관계자에게 사산아 발견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양 故 혜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라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사회면 『안양 故 혜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사산아 2구를 추가발견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에게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원서부경찰서 수색 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보고 후, 현재까지 관련사항을 수사 중에 있고, 병원관계자에게 동 사건에 대해 외부에 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1. 제 목 : 사산아 2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7일에 『안양 故 혜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가 안양 혜진 양의 시신 발견 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했으나 여론을 의식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시신을 안치한 병원관계자에게도 발견사실을 공개하지 말라는 '협조요청'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수원서부경찰서는 사산아 2구를 발견한 당일 상급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보고하여 수사지휘를 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게도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뉴스> 초기화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고뉴스 : 『사산아 2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의 집 건축비로 쓴 것이다.

신청인 재단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짬짓돈’』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4일자 13면)

내 용 : (전략)

국고보조금 맘대로 쓰고=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사례는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재단은 2006년 7월 경기 ○○군에 중증장애인 시설인 ○○ ○○○의 집을 신축하면서 주방시설 등을 구입한다며 기능 보강사업비 1억 원을 신청했고, 관할구청인 서울 송파구청은 신청한 액수 그대로 지원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미 구입한 주방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

또 같은 해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후원받은 8천만 원 가량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산 점자장비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인 뒤

재단 산하인 서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해 수익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재단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송파구청은 “복지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2천만 원 가량을 재단이 가로챘다”고 밝혔다. 약손지압 사업에 참여한 한 시각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것도 비참하지만, 우리 몸이 재단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몸서리쳐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리 사실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의 정기감사 때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다가, 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청렴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뒤늦게 다시 감사에 나서 대부분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 재단 재정비리 혐의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4일자 사회면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짬짓돈’』 제하의 기사에서 ○○ ○○재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첫째, “재단은 이미 구입한 주방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라고 하여 지원금을 횡령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 ○○○의 집 조기 개원을 앞두고, 물품장비의 선 구입 후 지원금 요청 방법을 취한 사항으로 횡령과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

둘째, “또 같은 해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후

원받은 8천만 원 가량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산 점자장비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인 뒤 〇〇 〇〇〇의 집 건축비로 쓴 것이다”라고 하여 후원금에 관하여 사기와 횡령을 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후원금은 후원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라이온스클럽 후원금은 애초부터 후원자의 후원목적인 〇〇 〇〇〇의 집 건축비용으로 지원한 것임을 후원자가 확인한 바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셋째, “송파구청은 ‘복지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2천만 원 가량을 재단이 가로챘다’고 밝혔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재단의 유일한 수익사업용인 송파구 건물 1층에 대해서 서울〇〇〇〇〇〇복지관의 약손지압 프로그램을 위하여 임대해 준 것이며, 2년 간 수익금의 50%인 8백 8십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송파구청은 보도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수익금은 정상적인 임대 수입임을 밝혀왔습니다.

넷째, “서울시와 송파구는 뒤늦게 다시 감사에 나서 대부분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서울시 또는 송파구가 혐의 내용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1.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내 용 : 2008년 2월 4일 사회면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째지돈’』 기사 관련 = 본지는 〇〇〇〇재단이 중증장애인 시설인 〇〇〇의 집을 신축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점자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재단 산하인 서울〇〇〇〇〇〇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도 가로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〇〇〇〇재단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후원금은 본연의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서울〇〇〇〇〇〇복지관의 수익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수익금의 50%를 임대료로 받은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3월 2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6일
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실시한 학습법 특강이 대학에서
학점 잘 따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슈감표명)**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6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 오○○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08. 4. 7.
 처리결과 : 각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학마저 “성적 잘 받으려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4일자 A12면)
 내 용 : (전략) 비슷한 시각, ○○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강의가 열렸다. 제목은 ‘중간고사 시험 대비 학습법 특강’. 강사로 나선 ○○대 ○○학습센터 오○○ 연구교수가 나눠준 자료에는 “단답형 문제 대비를 위해 주요 단어는 철자를 꼭 확인할 것”, “외울 때 손으로 직접 써가며 암기할 것”, “시험 공부를 철저히 하면 시험이 불안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마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의 행사를 방불케 하는 이날 행사는 취업과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련됐다. ‘학점 잘 따는 비법’까지 대학이 손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대 학습법 특강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4일자 A12면 『대학마저 학점 잘 받으려면...』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이 학점과 취업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학점 잘 따는 비법을 손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학교의 학습법 특강 자료의 일부 지엽적 내용을 발췌하여 보도하고 특강을 진행한 교수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교 ○

○학습센터 오○○ 연구교수는 “○○대학교에서는 편입생, 새터민, 신입생 및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법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 요령이나 비법이 아닌 인간의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원리 및 대학에서 더 깊이있게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하여 다루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1.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내 용 : 지난 4월 4일자 사회면 『대학마저 “성적 잘 받으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오○○ 교수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일부 대학에서 입시학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학점 잘 받는 기술을 가르치는 특강이 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 교수의 실명이 게재되고 강의내용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대학 관련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오○○ 교수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대학교에서 신청인이 진행할 학습법 특강과 관련하여 향후 취재·보도할 경우, 신청인 및 ○○대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제2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 기업이 '○○○병원 그룹'에 사실상 공짜로 인수되었으며 R&D에 많은 투자를 않는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공업(주) (대표이사 이○○, 김○○)

피신청인 : 헬스코리아뉴스

증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각 합 의

보도내용

헬스코리아뉴스 : (1) 『○○계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자)

내 용 : (전략) ○○약품은 ○○○병원그룹의 사실상의 계열회사로 ○○○병원 이□□ 이사장의 부인인 김○○ 씨가 대표로 있다.

○○○병원은 ○○약품을 사실상 공짜로 인수(?)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지난 2004년 ○○약품은 공정공시를 통해 자사주 400만 주(1주당 5,600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해 22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김○○ ○○○그룹 회장(105만여 주), 이□□ ○○○병원 원장(100여만 주) 등 14명으로 대부분 ○○○그룹 관련자들이었다.

그런데 ○○약품은 이후 ○○○그룹 계열인 ○○○○○

코아를 유상증자 자금 224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룹이 공짜로 ○○약품을 먹은 꼴이 됐다.

○○○그룹은 당시 이같은 방식을 ‘소자본합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룹의 적대적 M&A에 맞서기 위해 김○○ 회장 측이 향후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외양은 제약회사…○○약품 “시선집중”』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일자)

내 용 :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바이넥스 등 3개사가 지난해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한 반면 대한약품, ○○약품, 대한뉴팜 등 3개사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계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8일자 『○○계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계약의 주식을 ○○약품이 추가 취득하자 ○○계약의 1대 주주인 김○○ 회장이 자사주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관련이 없는 ○○약품의 대주주인 이□□ 및 김○○ 주주가 ○○약품을 공짜로 인수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약품 주주 및 금융기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외양은 제약회사... ○○약품 “시선집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일자 『외양은 제약회사... ○○약품 “시선집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상장 제약사 R&D 분석기사를 보도하면서, ○○약품의 이름을 헤드타이틀에 제시하고 ○○약품이 R&D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품 측은 ○○약품이 투자한 계열사인 ‘○○○○화학(주)’, ‘○○○지놈(주)’, ‘○○○○메드(주)’의 계열사가 ○○약품의 R&D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1. 제 목 : ○○○○공업 관련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 2008년 4월 1일자 『외양은 제약회사... ○○○○ “시선집중”』 제하의 상장 제약사 R&D 투자비용 분석기사와 관련, ○○○○공업(주) 측은 ○○공업이 투자한 계열사인 ‘○○○○화학(주)’, ‘○○○지놈(주)’, ‘○○○○메드(주)’가 ○○○○ R&D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 투자비용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2008년 1월 8일자 『○○제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와 관련, ○○○○공업은 ○○제약의 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헬스코리아뉴스> 사이트에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 본문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메인 화면의 우측 중앙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250×40 픽셀 크기의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헬스코리아뉴스 : 『○○○○공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이벤트 행사를 후원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스포츠월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1.

처리결과 : 각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월드 :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 ○○○ 선정성 전략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8일자 IT면)

내 용 : #장면1

핫팬츠와 탱크톱만 착용한 레이싱걸들이 포켓볼을 즐긴다. 마치 각본을 짠듯 이들은 자신의 가슴골을 과시하며 연신 허리를 굽힌다. 탱크톱 한 쪽에는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방송을 중계하는 MC의 멘트는 적당히 야한 표현으로 귀를 자극한다.(제2회 곱TV ○○○배 레이싱모델 빌리어드 챔피언십)

#장면2

서울 압구정동의 한 클럽. 싱가포르의 한 맥주회사가 마련한 클럽 파티에는 호피무늬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후원하는 이 파티에는 호피무늬만 입었다면 입장 1순위. 참가자 대부분이 성인이었지만 ‘놀이 마시는’ 이 클럽 파티의 적나라한 모습은 UCC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의 눈과 귀에 흘러들어갔다(최고의 타이거걸을 찾아라).

지난해 동영상 전문 포털을 선언하면서 권토중래를 노렸던 ○○○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 동영상 포털 선언 이후 레이싱걸 포켓볼 대회를 비롯, 각종 클럽 행사를 후원하면서 UCC 콘텐츠 확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런데 이를 통해 제작된 동영상에 선정적인 장면이나 멘트가 무분별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레이싱걸 포켓볼 행사의 경우 탱크톱 한 켠에 ‘○○○’ 로고를 새겨넣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도록 유도하는 등 대형 포털로서 선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동영상은 여과없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타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검색포털과의 경쟁에서 과도하게 뒤쳐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힙합 마니아 출신 CEO를 영입한 터라 놀고 마시는 문화에 유독 ○○○은 자비로운 것 같다”면서 “눈요기거리나 클릭수 제고에 도움이 될만한 콘텐츠마다 늘 ○○○이 나서 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 측은 문화의 한 코드라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후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이거걸’ 클럽 행사의 주최 측인 맥주회사가 제공한 홍보용 포스터를 보면 노출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과없이 등장한다. 이 파티에는 싱가포르 여행권이 경품으로 등장한다는 소식 탓에 젊은 남녀들이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근래 들어 ○○○은 곳곳에 무리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태동하는 UCC 기반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전문 영역을 구축한다는 거창한 포부만큼, 아찔한 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저 끌어모으기에만 집착,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의 파생 빈도도 잦아졌다. 그러나 ○○○은 트래픽을 높이고 유저들이 몰려들면 인지도가 다소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지만, 반짝 인기는 금새 트래픽 하락으로 이어졌다. (중략)

○○○은 지난 2002년 ○○홈피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유료 모델로 전환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시행착오를 초래한 전○○ 사장은 경질됐고, 후임자 고○○ 대표 역시 프리미엄 서비스인 ‘○’으로 도약을 시도했으나 이른바 ‘다이아몬드 마케팅’ 등에 50억 원만 탕진한 채 사퇴를 택했다. 2005년 당시 30살이던 손○○ 씨가 대표직을 이어받았지만 하락세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철지난 FPS 장르로 온라인 게임에 도전, 결국 고배의 쓴 잔을 마셨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이후 업데이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차트 순위에서도 100위권 밖으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식회사 ○○○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8일자 IT면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 선정성 전략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이 동영상 UCC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이벤트는 선정적인 이벤트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이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아울러 해당 기사를 통해 보도한 대부분의 주식회사 ○○○ 관련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1.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내 용 : 지난 2008년 3월 18일자 IT면 『야해도 클릭수만 는다면... ○○○ 선정성 전락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주식회사 ○○○이 후원한 맥주행사의 주최 측이 제공한 홍보용 포스터에 노출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과 없이 등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는 행사안내를 위한 보도자료에 삽입된 이미지로, 홍보용 포스터에는 선정적인 문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오프라인 스포츠월드 IT면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4월 1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스포츠월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portsworldi.com>) 초기화면 상단에 2008년 4월 14일까지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 클릭하면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며, 원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세계일보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egye.com>)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하도록 하며, 기사 제휴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다.

5.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주식회사 ○○○이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취재·보도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에 협조 및 협의하도록 한다.

6.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내 용 : 지난 3월 18일자 IT면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하는 전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여 주식회사 ○○○에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동영상 전문 포털화를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과 그 임직원 및 관련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월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

사 (2008년 4월 8일자 IT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자동차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자동차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자동차 고장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0.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보도내용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2월 15
일 07:30)

내 용 : (전략) ▶이○○ 리포터 : 기름값 걱정에 허
리필날 없는 여러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로 움
직이는 만큼 연료를 쓴다는 꿈에 연료 절감장치.

▶K업체 관계자 : 연료공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
로 해결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겁니다.

▶손○○ 아나운서 : 이런 장치가 있네요.

▶이○○ 리포터 : 의혹과 논란 속 이른바 연료
절감장치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수
많은 명차들도 차마 해내지 못했던 기름값 절감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중략)

▶자 그러다 보니 요즘 제테크 못지 않게 유행하
는 것이 이른바 유테크, 바로 기름값 절약 비법인데
요.

▶손○○ 아나운서 : 저도 몇 가지 알아요.

▶이○○ 리포터 : 예. 그런데 이 유테크로 기름값
아끼려다 소중한 애마가 그만 애물이 되었다는 사
람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수 : 차가 이래 가다가 시동이 툭 꺼져 버
려요.

▶이○○ 리포터 :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운전수 :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조금만 가면
또 서고 또 서고 하는데.

▶손○○ 아나운서 : 상당히 위험한데.

▶제보자 :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시동이 다시
안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리포터 :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
이 꺼져 버리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중략)

▶이○○ 리포터 : 그런데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
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김○○ 피해자 : 연료절감되고 매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달면 좋다고 하는 기라. 어이가 없어
죽겠어요.

▶이○○ 리포터 : 40년 간 운전을 해 왔다는 김
씨는 연료절감이라는 말에 분통부터 터트립니다.

▶김○○ 피해자 : 이걸 잘라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데 가서 해 봐야 돼. 지금 순 엉터
리로.

▶이○○ 리포터 :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귀
가 솔깃할 연료절감장치. 판매자와 운전자들의 주장
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업체 측에서 말하는 연료절감장치인 데요. 과연 성능이 어떤지 직접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cc 휘발유 자동차를 준비해서 자동차가 똑같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략)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기계적인 장치를 해서 일정하게 똑같은 RPM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리포터 :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각각 얼마나 기름을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 똑같은 양의 연료를 담았습니다.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정상적인 차에서 연료량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규정 RPM을 올려가지고 알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리포터 : 기존 RPM을 올려놓고 확인해 보는 거죠. 똑같은 양의 기름을 저렇게 집어 넣고요. 15분 동안.

정상적인 상태에서 15분 동안 연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실험자 : 네.

▶이○○ 리포터 : 자, 각각 2리터의 휘발유를 주입했는데요. 연료절감장치를 쓴 쪽과 그렇지 않은 쪽과 어느 쪽의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는 걸까요. 이것은 연료절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입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주행한 이 차는 기름을 얼마나 썼을까요.

정상적인 차량에서 15분 동안 운행한 차량에서 남아있는 기름의 양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남은 휘발유가 680cc 였습니다.

▶손○○ 아나운서 : 네.

▶이○○ 리포터 : 자 보셨죠. 동일한 장치에 연료

절감장치를 단 후 역시 15분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

이때 연료절감장치를 단 차량에 기름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인데요.

▶손○○ 아나운서 : 덜 썼다는 얘기 인데요.

▶이○○ 리포터 : 예. 보시다시피 똑같은 조건입니다. 8초, 9초, 15분. 됐어요.

아까와 똑같은 조건에서 15분 동안 운행을 해보았는데 연료가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이 따라 보았는데 얼마큼 남을까요. 720cc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달렸을 때 연료절감장치를 단 차량, 확실히 기름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손○○ 아나운서 : 50cc는 절약이 되었어요, 이게.

▶이○○ 리포터 : 연료 절감이 된 건가요?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이게 연료 절감이 아니고요. 아, 이 양으로 보면 연료절감이 된 것 같잖아요.

▶이○○ 리포터 : 비밀은 바로 여기 속도 계기판에 있었습니다.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아까 악셀을 밟은 양에서 먼저는 170km로 나갔는데 장착하고 나니까 120km 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한 50km가 안 나가잖아요. 50km가 안 나가면 안 나간 만큼 안 나간 거지, 이게. 연료를 차단한 거지, 연료절감기가 아니죠.

▶손○○ 아나운서 : 아. 속도가 안 나가고.

▶이○○ 리포터 : 연료절감장치는 기름을 덜 사용하는 대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차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적게.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당연히 차에 무리를 주게 되죠, 저렇게 되면, 역지로 연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점점 무리가 가서 엔진한테 연료 장치라든가 모든 장치들이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리포터 : 업체 측에서는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K업체 관계자 : 설치를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제품 자체 내에서는 결함이 있을 수가 없고.(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월 15일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꿈의 기름값 절감장치의 비밀』 제하의 방송에서 K사의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실험을 통해 K사의 연료절감장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사 연료절감장치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 차량에 적합한 제품을 장착하고 부착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함에도 실제 방송 내용 중에는 제품 장착 설명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제품을 설치하고 공인되지 않은 시험기관과 실험자로 하여금 실험을 진행토록 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K사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1. 제 목 :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관련 반론보도

내 용 : 본 방송의 지난 2월 15일 『꿈의 기름값 절감장치의 비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K사는 방송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메뉴얼대로 제품을 장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제품 자체로 인한 고장은 아니고, 방송 중 이뤄진 실험에서 제품이 메뉴얼과 다른 위치에 장착된 채 진행됐으며, K사의 의뢰로 제품을 시험한 모 시험연구원은 해당 제품이 연비개선의 대안으로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25일까지 SBS-TV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방송된 제품사진 노출)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男)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4월 18일 07: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보내온
조직검사 결과만을 믿고 유방암 진단을 해
멸절한 사람의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5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성○○)
 피신청인 : 한겨레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8. 3. 2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일자 8면)

내용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무개 씨는 2005년 11월초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ㄱ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김씨에게 “오른쪽 유방의 혹은 암이며,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김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가다. 서울대병원의 ㄴ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른쪽 유방의 혹이 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뒤 김씨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김씨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 등을 받아 다시 검토했는데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보니,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목 :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는 지난 3월 3일자 8면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에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대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잘못 전달된 ‘암이 확실하다’는 조직검사를 무턱대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당해 환자에 대하여 유방암 진단을 위한 검사(유방촬영, 초음파검사뿐 아니라 MRI검사)를 시행한 후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서 ‘증식성이 강한 암 위험성 있는 병변으로 적절하게 제거된 것임’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재검사 없이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단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1.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내용 : 본지 지난 3월 3일자 8면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조직을 재검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 유방조영술, 초음파, MRI 등 유방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서 증식성이 강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2008년 4월 10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와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청소년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을 밀착취재,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tvN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tv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8년 3월 27일 23:00)
내 용 : ○경찰서 강력 1팀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 한 명이 강력계를 찾은 것이다.

아이는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는 하굣길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아이의 친구와 잘 아는 사이라며 자신의 집에 놀러가자고 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 곧 본색을 드러낸 남자.

아이는 놀라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파렴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을 알기 위해 진술 녹화를 시작했다. (중략)

용의자의 사진이 확보되었으니 피해자에게 확인을 받을 차례다.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기엔 직접 사진을 들고 찾아가기로 했다.

마침 점심시간.

교정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교사 :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막 뛰어다녀서 한 5분 후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아이가 왔다.

▷김 : 왔어? 앉아봐.

사진 보면 알지?

▷정미(가명) : 네. 맞아요.

▷김 : 맞지?

▷정미 : 맞아요. 옷도 똑같아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vN은 지난 3월 27일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인면수심 미성년자 성폭행범』 제하의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신청인 사건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방송하고 형사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 신청인에게 용의자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 및 방송해 결과적으로 신청인 학교의 학생들 및 주변인들이 신청인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므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5월 8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및 보도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 등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원고들의 특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후 보도하였다면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08. 5. 15. 자 판결(2007가합686)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원고들)이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 7. 26. 「수요기획」 프로그램 『최초 공개, 국가정보원』 제하의 보도에서 원고들이 중국인과 공모하여 □□□바이오텍이 개발한 △△△△ 균주 생산기술을 도용해 해외 유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방지하였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대표이사 장○○(이하 장○○)은 □□□바이오텍의 효소사양결과, 배양방법 등을 빼내 이를 이용하여 유사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를 중국에서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방송에서 장○○이 유출한 것은 □□□바이오텍의 바이오기술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 균주 자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와 장○○이 공모하여 △△△△ 균주를 변형하였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장○○ 등이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고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을 보도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방송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일반적인 범죄보도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보도가 주된 취지였고, 다만 방송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실제 접수된 사건의 조사과정을 소개한 것이고, 그 소개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일부 특정되었다고 하나 원고들의 상호 등은 이니셜로도 소개되지 않았고, 장○○이나 한국계 중국인 이○○(이하 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특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의 자문을 받았고, 검찰의 공

소장, 제1심 판결문, 각종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방송의 기획과 보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686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 2008. 4. 3.

판 결 선 고 : 2008. 5. 15.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수요기획 정규방송 및 평일 저녁 9시 뉴스 시간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담당 PD 또는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낭독하도록 하며, 수요기획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3개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는 효소 및 발효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바이오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7. 26. 11: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1시간 동안 수요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공개, 국가정보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활약상을 소개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수요기획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중국인과 공모하여 소외 주식회사 □□□바이오텍(이하 ‘□□□바이오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 균주의 생산기술을 도용하여 해외로 유출하려고 시도하였고,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이를 방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2) 그러나 ① △△△△ 균주는 기존에 발견된 단백질분해효소인 Serratiopeptidase(이하 ‘SP효소’라 한다)의 일종으로 그 생산기술은 공지의 기술이고, ② 원고들은 중국인과 공모하여 △△△△ 균주에 대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SP효소를 이용하여 사료첨가제 등을 만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 것이며, ③ 원고 ○○○○는 △△△△ 균주를 10% 변형하여 원고 ○○○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 균주와는 별도의 SP효소를 이용해 독자적인 단백질분해효소를 만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들이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의 상호나 인물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원고들을 식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서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자들이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고, 그 방송 내용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판결 및 각종 보도자료의 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균주의 생산기술

(가)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의 박○○ 박사팀은 1999. 11.경 세계 최초로 무당거미에서 천연단백질분해효소인 △△△△ 균주를 추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그 후 박○○은 △△△△ 등 효소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텍을 설립하

고, 약 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 균주를 사료첨가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SP 효소가 활용되지 아니하던 새로운 영역과 시장을 개척하여 △△△△ 균주의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나) △△△△ 균주의 생산기술은 1999. 6. 18. '한국산 무당거미의 장으로부터 분리된 신규 미생물 및 그로부터 생성된 단백질분해효소'로 특허등록되었고, 2002. 8. 22.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정을, 2004. 10. 독일에서 브라운호퍼 기술인증증, 2006. 10. 1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인정을 각 받았다.

(다) 미국의 비즈니스 뉴스 채널인 CNBC는 2006. 11. 12. 및 11. 13. 양일에 걸쳐 약 30분 동안 Asia Market Week에서 △△△△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과학기술부 정책홍보실은 2006. 11. 18. '국내 무당거미에서 개발된 효소제품 세계시장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토착 무당거미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높은 활성을 보이며 저온이나 높은 염분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산업적 공정전환효소 △△△△ 개발, 개발된 제품 △△△△ FACIAL GEL의 미국·일본 등 국외시장 개척으로 국내 바이오제품의 세계화 교두보 확보, △△△△은 미국 CTFA에 화장품 원료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관련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내년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장○○에 대한 재판

(가) 원고 ○○○ 대표이사 장○○은 2002. 5. 2.경 □□□□바이오텍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 균주를 활용한 사료첨가제 분야의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4. 11. 30.경 □□□□바이오텍의 연구개발원 김○○과 함께 퇴사하면서 □□□□바이오텍의 효소 사양결과, 효소배양방법

및 사료첨가제 제조·판매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였고, 2005. 1. 20. 바이오제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 ○○○을 설립한 후 □□□바이오텍의 효소 사양결과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 균주를 이용한 사료첨가제와 유사한 사료첨가제(이하 '유사 사료첨가제'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 1. 15. 한국계 중국인 이○○를 통해 중국시장에서 유사 사료첨가제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계획하면서 중국내 현지 회사인 베이징 □□□바이오텍 주식회사, ◇◇◇생명공학 주식회사와 함께 합자회사인 ○○○-○○○○○ 베이징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 ○○○○○는 천연단백질분해효소를 제조하여 ○○○-○○○○○에 공급하며, ○○○-○○○○○는 이를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은 2005. 8.경 세계 최초로 개발된 △△△△ 생산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세워진 □□□바이오텍의 핵심 연구원과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여 8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라) 장○○, 김○○은 2006. 4. 14.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83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는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균주에 대한 상동성 검사를 실시하여 2006. 4. 20. '원고 ○○○○○와 □□□바이오텍의 균주는 생리적으로 특성이 유사하나 원고 ○○○○○의 균주는 *Serratia marcescens*의 일종, □□□바이오텍의 △△△△ 균주는 *Aranicola proteolyticus* 일종이고, 다만 원고 ○○○○○가 위 균주를 이용하여 원고 ○

○○○에게 제공한 단백질효소를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제출하였다.

(바) 장○○은 2006. 5.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김○○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 사실은 '장○○, 김○○이 □□□바이오텍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 등의 효소 사양결과 등 영업기술, 배양방법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텍에서 생산하는 사료첨가제와 유사한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사) 장○○, 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06. 9. 29. 항소 기각판결(대전고등법원 2006노949호)이 선고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 26.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6도7206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방송의 기획 및 내용

(가) 피고는 2006.경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활약상을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수요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원고들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사과정을 취재하였고, 이 사건 방송 보도를 위해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의 협조를 받아 자문을 구하였으며, 장○○에 대한 공소장과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불법정치사찰, 민주화운동 탄압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민주화 정부가 출범하고 산업정보화 시대에서 그 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비공개되었던 국가정보원의 내부와 사무분담,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선발과정과 생활의 애로점 등이 보도되었고, 그 활약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실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수개월 동안의 조

사와 연구 등을 거쳐 이를 검찰에 이송하는 과정이 보도되었다.

(다) 이 사건 방송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① 박○○이 세계 최초로 무당거미에서 천연단백질효소를 생산하는 바이오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 ② □□□바이오텍에서 근무하던 장○○, 김○○이 회사를 그만두고 원고 ○○○을 설립하여 □□□바이오텍의 바이오기술과 비슷한 기술로 유사 사료첨가제를 생산하였고, ③ 장○○은 한국계 중국인 이○○와 공모하여 위 바이오 생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시도하였으며, ④ 그 과정에서 양해각서에 당사자로 참여한 원고 ○○○○○가 □□□바이오텍의 균주를 10% 변형하여 원고 ○○○에게 공급하였고, ⑤ 그 후 장○○, 김○○이 2006. 3. 30.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 이송되었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의 상호나 장○○, 이○○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사무실의 위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방송 중 원고 ○○○○○가 위치한 대전 바이오벤처타운의 전경과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는 미생물디스플레이 패널, 원고 ○○○이 위치한 중소기업센타 건물 전경과 유사 사료첨가제의 포장용기가 화면에 노출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언론과 방송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그 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고, 그 업무 중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는 산업기밀의 보호 업무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그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방지책 역시 국민의 큰 관심사인 만큼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박○○이 세계 최초로 무당거미에서 천연단백질효소인 △△△△ 균주를 추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또한 △△△△ 생산기술은 특허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사실, ② 장○○은 □□□바이오텍의 효소사양결과, 배양방법 등을 빼내 이를 이용하여 유사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를 중국에서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방송에서 장○○이 유출한 것은 □□□바이오텍의 바이오기술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 균주 자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와 장○○이 공모하여 △△△△ 균주를 변형하였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장○○, 김○○이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고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을 보도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① 이 사건 방송은 일반적인 범죄보도가 아

나라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보도가 주된 취지였고, 다만 방송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실제 접수된 사건의 조사과정을 소개한 것이고, ② 그 소개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일부 특정되었다고 하나 원고들의 상호 등은 이니셜로도 소개되지 않았고, 장○○이나 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특정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③ 이 사건 방송은 장○○,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에 보도되었는데, 원고들이 기술유출 범죄에 관련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④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의 자문을 받았고, 검찰의 공소장, 제1심 판결문, 각종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방송의 기획과 보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

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 즉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 2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자 판결(2007나7861)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이○○(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경향닷컴(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연합뉴

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측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입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 경향닷컴은 2003년 8월 29일자 『1천 500만 원 빛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빛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

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검찰은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는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786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이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경향닷컴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칸)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건물 15층

대표이사 조 성 환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영 인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7. 7. 2. 선고
2006가소45979 판결

변론종결 : 2007. 11. 30.

판결선고 : 2007. 12. 1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25. 피살된 망 이□□의 형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범죄혐의 및 긴급체포

(1) 망 이□□은 2003. 7. 25. 22:40경부터 다음날 00:40경 사이에 경남 ○○시 또는 ○○군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망치와 같은 둔기로 머리를 수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체는 2003. 8. 7. 10:10경 경남 ○○군 ○○리 소재 ○○주유소 앞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2) 위 사건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경찰

관들은 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의 청바지와 양말만을 보고 자신의 동생이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사체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여 원고를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이□□의 이 사건 사고 전후 전화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 등의 당일 행적 및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원고의 차량에 있던 운동화 등을 압수하였다. 조사 및 감식 결과 이□□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승용차에 있던 운동화에서 이□□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3) 위 담당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하여 살인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자 다른 증거들로 미루어 원고가 살인하였다고 판단하고, 2003. 8. 28. 06:23경 ○○경찰서에서 원고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내용

(1) 경남지방경찰청은 2003. 8. 28. ○○경찰서로부터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검거보고(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접수되자, 당시 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이□□이 부친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1,5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망치와 같은 둔기로 이□□의 머리 좌우측 측두부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살해한 이□□을 불상의 장소에서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 모두를 절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시 불상경 경남 ○○군 ○○면 ○○리 소재 구 ○○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논 언덕에 이□□의 사체

를 유기한 것이다’는 요지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원고 및 이□□의 주소, 직업, 나이, 관계, 실명 등이 적혀 있었고, 수사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결과로서 원고의 차량속에 있던 운동화에 대한 감정결과, 범행 후의 원고의 행동 및 진술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연합뉴스에서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연합뉴스와 기사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재 또는 참고해오고 있던 피고는 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2003. 8. 29. “1천 500만 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경찰서는 29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1,5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이모 씨(45. ○○시 ○동)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5일 새벽 동생(39)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군 ○○면 ○○리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유기한 혐의다. 이씨는 2년여 전 숨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금 4천 500만 원 중 동생뮌인 1천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동생의 독촉을 받아오던중 사건 당일 경기도에 사는 동생을 양산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동생을 살해한 뒤 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체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잘라냈으며 이달 초 동생이 가출한 뒤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씨는 사체 유기 이후 동생이 아버지를 수급자로 하는 수천만 원의 보험

에 가입한 것을 알고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체유기 장소 인근 주유소에 ‘사체를 찾아보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이 우편물을 받은 주유소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빚 4천여만 원을 비롯한 주식 및 아파트 매입 등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동생 보험금까지 노리다 달미를 잡혔다.<○○/연합>

라. 이 사건 보도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2003. 7. 25.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시 ○○동 소재 ○○공원묘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합계액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이□□에게 주어야 할 돈 1천여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한 불만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비라 투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직경 약 3센티미터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측두부에 3회, 좌측 측두부에 1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맞은편 구 ○○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언덕에서, 전향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실어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위 장소에 버려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03고합26)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였는바, 부산고등법원(2004노112)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5도5440)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증 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성씨, 나이, 주소, 이□□과의 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을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건 기사의 객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만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는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

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방송,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

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 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사실확인을 위하여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든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

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으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직업,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보도의 형식과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07. 1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홍 만

판사 이 영 선

판사 박 동 복

□

판결 3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자 판결 (2007가합901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27일 우○○(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그 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하던 사람들 중 급성녹내장에 걸리거나 자살을 기도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인터뷰와 함께 원고 병원을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자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주장에 대해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어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급성녹내장

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원고가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 외래교수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대한비만체형의학회 등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4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29)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반론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9017 정정·손배청구

원 고 : 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태 원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변 론 종 결 : 2007. 11. 29.

판 결 선 고 : 2007. 12.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모두 삭제하라.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 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4. 만일 피고가 위 제2, 3항 기재 일자에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 제2, 3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 중 원고 및 원고 운영 병원의 영상을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을 삭제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 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오른쪽 화면 상단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원고는 뉴스데스크의 '알고보니 간질약'이라는 보도 및 뉴스 후의 '병주고 약주고'라는 보도에서의 토파맥스 관련 녹내장 부작용과는 관계없고,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5 '정정보도문요구문'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에서 ○○○○○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피고 소속 김△△ 기자는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 등을 접하게 되자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을 보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김△△ 기자는 실제로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 위하여 실험을 위한 연기자를 환자로 위장시켜 다이어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김△△ 기자는 위와 같은 실험으로 얻은 처방전 중 급성녹내장의 부작용을 일으킨 토파맥스를 처방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원고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속이고 위와 같은 처방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원고 병원의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도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을 포함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도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藥주고 病주고”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진료 장면 및 원고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록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였지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병원의 모습과 원고가 촬영된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에서 프로작(항우울제), 써모펜(감기약), 토파맥스(간질약)가 비만치료약으로 처방 가능한 약물임을 알면서, 원고가 마치 비만치료에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한 것처럼

럼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조금이라도 식욕 억제제가 있는 약은 모두 비만치료제로 처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간질약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②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에서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고(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뉴스 후에서도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다른 병원에서도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가 원고 병원에서 진찰 받은 후 처방받은 약에도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뒤 이어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③ 피고는, 뉴스 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가지 약을 병합해서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원고가 “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하느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효과면인 것 같아요. 효과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든 환자를 또 계속 오시게 하고 해야지 효과를 많이 줘야 하지만.. 그렇잖아요.”라고 답변하는 내용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에서 피고가 항우울제와 감기약 간질치료제 등 다섯 가지

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한 원고에게 부작용은 없느냐고 묻자 원고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오히려 비만한 게 병이지,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염려가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병합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4보도라 한다).

④ 피고는 뉴스 후에서, 원고 병원이 원래는 가정의학과 병원인데 비만클리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병원 내부는 온통 비만관련 광고로 가득하다고 하였으며, 그 후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 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방송하였다(비만 연구 부분, 이하 이 사건 제5보도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또는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시청자가 원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에서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참조).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 중 00:19에서 00:20 사이에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고, 02:08에서 02:16 사이에 같은 날 밤 10시 50분에 뉴스 후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것이라고 광고를 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35:59에서 36:01 사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된 바 있던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하였고, 36:09에서 36:16 사이에 화면의 절반 중 윗부분을 뿌옇게 처리하여 원고 병원의 대기실 장면을 내보냈으며, 21:18에서 21:19사이에 원고 병원의 복도 장면이, 21:32에서 21:34 사이에 원고 병원 건물의 외부 전경이 각 보도되었고,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중 수

차례에 걸쳐 진료실 내부의 모습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의 상호를 알거나 원고 병원에 와 본 사람이라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통하여 위 각 보도에 나오는 병원이 원고 병원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사가 비록 화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원고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원고 및 원고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 5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이 항우울제이고, 써모펜이 감기약이며, 토파맥스가 간질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5 내지 10, 12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비만성형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로작은 항우울제이기도 하지만 폭식, 과식 등의 식이장애의 경우 식욕증추 안정화를 위하여 처방되기도 하고, 써모펜은 감기약이기도 하지만 운동하기 30분 전에 복용하면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최대화시키는 등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는 약물이며, 토파맥스는 간질약이기도 하지만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보도에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단순히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이라고만 보도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제목을 “알고보니 간질약”이라고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비만치료를 쓸 수 없는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을 단순히 체중감량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제2보도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비

만치료제로 도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제5보도

을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부터 4년 간 ○○○○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2007. 3. 1.부터 2년 간 같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2003. 6. 대한비만체형의학회의 정회원으로, 2004. 12. 12. 대한지방성형학회의 정회원으로 각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3, 4보도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3보도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19:22에서 19:57 사이에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로 간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를 보도

한 후, 다른 병원에서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로 하여금 서울 시내에 있는 10군데의 비만클리닉(이하 실험 대상 병원이라 한다)을 찾아가 처방전을 받게 하였고, 그 중 간질약을 처방한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도에서 원고 병원이 급성녹내장 환자가 처방을 받은 병원이 아니라 실험 대상 병원 중 간질약을 처방한 병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이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4보도

위 보도는 김△△ 기자가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는 내용으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초상권 침해 여부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는바,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1)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이 사건 각 보도는 비만 치료를 받다가 자살기도를 하고, 급성녹내장을 앓게 되는 등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만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3) 진실성 및 상당성

(가)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비만치료를 효과가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의 대한비만학회는 2003. 4. 16. '비만지침'이라는 자료에서 비만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약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 등을 기재

하여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는 시부트라민과 올리스타트 뿐이라고 발표한 사실, 김△△ 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김모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이모, 강모, 김모, 김모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의사들의 의학적 자문 등 다양한 취재자료를 수집한 후 이러한 내용을 위 보도에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는 정식으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가 아니고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서 비만치료제로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의 약품이어서 의학계 내부에서 그 효과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제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실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심지어 간질약까지"라고 하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의사들이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 등을 과잉 처방함으로써 인하여 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5보도

위 각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허위 내용의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및 방송경위, 그 표현 방법, 위 보도가 방송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의 사회적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2007.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4. 정정보도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 등

(1) 이 사건 제2, 5보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삭제하여야 한다(원고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의 삭제도 구하나, 원고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피고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5보도로 허위사실을 방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별지 목록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보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

하여 보건대, 위 각 보도가 방송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목록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 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1), (2)항 기재 일자에 (1), (2)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1), (2)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김 은 정

판사 정 경 희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9시 뉴스데스크

본 방송은 2007. 4. 7.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에서 인터뷰한 장면을 보도하였고,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은 급성녹내장이 발병한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간질약인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져서 본 방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뉴스 후〉

본 방송은 2007. 4. 7.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에서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고 있고, 위 병원의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써 비만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없는데도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간질약인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의 의사는 여러 곳의 비만관련 학회 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져서 본 방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미국 판결

피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원고가 방송국에서 해고되었다고 말한 것은 slander per quod (간접적 명예훼손) 유형의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각하신청을 기각한 사례

미국 Georgia주 북부연방지방법원 Atlanta 재판부
 원고 NO WITNESS, LLC and Stephen Barnes
 피고 CUMULUS MEDIA PARTNERS, LLC, Unihost, Inc., Fred Toettcher
 (a/k/a Fred Toucher), James (“Jimmy”) Baron 및 Leslie Fram
 사건번호 1:06-CV-1733 JEC.
 2007. 11. 13.

미디어 내용의 규율

명예훼손 · 면책특권(privilege, 특권, 면책사유로도 불림) · 공정한 비평(comment)/의견 (opinion)(§11.4502)

[1] 명예훼손 · 재판 전 절차들 · 개관(§11.1201)

원고가 피고의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 시키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명예훼손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127 S.Ct. 1955 (2007) 사건의 공정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Twombly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준비서면에 대하여 “개연성(plausibility)” 기준을 만들었고, 제11연방항소법원은 Watts v. Florida Int’l Univ., 495 F.3d 1289, 1295-1300 (11th Cir.2007) 사건에서 Twombly 사건을 적용하여 개연성 기준을 해석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전에 근무하였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중에 그리고 음식점에서 원고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부정적인 진술들을 하였고, 부정적 진술들은 원고가 “약골(pathetic)”, “지체자(a retard)”, “여드름 대장(captain back acne, 번역자주 : 지저분한 놈이라는 뜻으로 보인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진술들은 법률문제로서 명예훼손적이라고 볼 수 없다. 본질적으로 사실적이지 않고 거짓으로 증명될 수 없고, 원고를 예를 들어 지체자라고 부르는 진술들이 겉보기에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진술들은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는 과장되고 내뱉는 언어의 범주에 속하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평들을 문자 그대로 사실의 진술들로 이해하지

[2] 명예훼손 · 명예훼손적 내용 · 개관(§11.0501)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명예훼손 · Libel per se (§11.01)

명예훼손 · 책임기준 ·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11.3002)

명예훼손 · 면책특권 · 개관 (§11.4501)

명예훼손 · 손해들 · 개관 (§11.6001)

원고는 피고 라디오 방송국 유명인사가 방송 중에 원고가 같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해고되었다고 허위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 소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가 해고되었다는 진술들이 허위임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명백히 많은 제3자에게 전달되는 진술들을 했다는 점에서 공연한(unprivileged) 공표를 하였음을 시사하는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그 진술들이 은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장 자체에서 그 주장을 개연성 있게 제시하였다. 비록 원고가 공격 인물(public figure)로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진실을 알았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비록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원고의 직업 또는 경력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가 slander per se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원고가 그 방송국을 그만둔 직후에 다른 방송국 유명인사가 그만둔 것을 둘러싼 스캔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진술들은 원고가 직무상의 불법행위 또는 무능력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잠재적으로 암시한다는 점에서 slander per quod의 이론 하에서 원고의 청구가 유지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피고의 부적절한 암시(innuendo)가 있었음을 원고가 주장하였다.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의 진술들이

실제 명예훼손적이거나 아니라 그 진술들이 법률문제로서 명예훼손적일 수 있는가 만이 요구된다. 원고가 방송국을 그만둔 직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을 때 피고의 진술들이 행하여 졌고, 피고의 진술들이 원고의 청취자, 팬, 궁극적으로 원고의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원고가 주장한 점에서 원고는 특별한 손해들(special damages)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불만한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이 단계에서 원고가 상실해버린 청취자의 수들과 같은 손해의 양 및 구체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4] 명예훼손 · 재판 전 절차들 · 개관 (§11.6001)

연방대법원의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127 S.Ct. 1955, 1966 (2007) 사건과 위 사건을 적용한 제11 연방항소법원의 Watts v. Florida Int'l Univ., 495 F.3d 1289, 1296 (11th Cir.2007) 사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현재의 사건에서 원고가 “합리적 기대를 야기할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적 비평들의 결과로서 특별한 손해를 입고 특별한 손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연성 있게 제시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JULIE E. CARNES, 연방지방법원 판사

이 사건은 현재 수정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하여 달라는 피고의 신청(defendant's Motion to Dismiss, 소송각하신청, 소송 각하 신청 절차, 소의 각하 신청, 증거조사 전 소송기각 신청으로도 불림)으로서 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반대되는 답변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기록과 당사자들의 주장들을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의 각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6. 7. 2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 근거는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다. 화해적 시도가 행하여졌고, 법원은 편견 없이 피고 각자의 각하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Toettcher (“피고”라고 한다)를 제외한 모든 피고들은 원고와 화해하였다. Mr. Toettcher는 2007. 7. 12. 수정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하여 달라는 그의 신청 단계로 복귀하였다. 원고의 저작권 침해 청구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수정된 명예훼손 청구와 피고의 각하 신청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실들로 한정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99X”로 알려진 Atlanta 라디오방송국의 라디오 유명인사들이었다. 피고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99X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99X에 근무하였다. 2003년에 99X는 “다른/보다 큰 연령대를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원고와 99X의 운영자 측은 원고가 방송국을 떠나는 것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였다. 원고는 2003. 10. 24.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2004. 3. 31.까지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았다.

원고는 방송국을 그만두면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No Witness, LLC라고 불리는 회사를 창업하였다. 원고는 No Witness라는 명칭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그 영화는 2004년 No Witness, LLC에 의하여 배급되었다. 이어서 2005. 7. 28. 또는 그 무렵 Mr. Toettcher와 다른 피고들은 “원고”와 그의 영화를 “중상모략하는 홍보 운동에 관여하였다”. 이것은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분 음성을 제공하고 원고와 그 영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비평을 하였던 것

을 포함한다. 피고들은 또한 99X가 “공식적 No Witness 방송국”이라고 주장하였고, “No Witness의 공식적·비공식적 상영관”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들은 원고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99X의 청취자들을 위하여 지역 음식점이나 바에서 영화를 상영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계속하여 상영 내내 원고와 그의 영화를 폄하하였다.

이 기간 중 많은 부정적 진술들 가운데, 피고 Toettcher는 방송 중 및 상영 중에 원고가 99X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는 “지체아” 및 “****한 ***밀어 먹을 놈(hole)”이라고 말하였다. 2005. 11월에 또 다른 라디오 유명인사 Chris (“Crash”) Clark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주장에 따르면, 그는 한 여성에게 또 다른 단골고객과 함께 나이트클럽의 화장실 딸린 방에서 성적 행위에 참가하는 대가로 99X의 콘서트 티켓들을 주었다. 피고의 진술들과 Clark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의 결과로서, 원고는 “의심의 분위기”가 원고와 원고가 99X를 그만둔 것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식석상에서 사람들이 원고에게 접근하여 “무엇을 했기에 99X로부터 해고되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피고가 2006년 99X를 떠난 후에 Massachusetts주에 위치한 Boston으로 갔지만, 계속하여 그의 웹사이트(www.fredtoucher.com)상에서 원고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였다. 피고의 비평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arnes는 약골이다”, “나는 항상 Barnes가 지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Barnes는 ‘여드름 대장’ 및 ‘****한 말더듬이’이다”. 이에 원고는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진실이고, 다른 진술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각하를 구한다. 이제 법원은 피고의 신청과 주장들을 살펴본다.

I. 각하 신청의 기준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각하 신청을 인용하기 위한 기준을 판시하였다.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127 S.Ct. 1955 (2007). *Twombly* 사건은 의도된 결과들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 법원은 위 사건 및 위 사건이 가져다준 논의들을 설명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법원은 제11연방항소법원이 설명한 대로 위 사건을 공정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127 S.Ct. 1955 (2007)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Conley v. Gibson*, 355 U.S. 41, 47 (1957) 사건에서 시작된 각하 신청들에 대한 기준을 폐기하였다. *Conley* 사건의 법원은 “no set of facts”(사실들의 부존재) 기준을 확립하였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이 원고가 그의 청구를 뒷받침할 요건 사실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소장은 청구원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355 U.S. at 45-46. *Twombly* 사건의 법원은 *conley* 사건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거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고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실시하였다. “원고가 이후에 원고의 청구를 지지할 수 있는 ‘일련의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set of undisclosed facts)’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준비서면들에서 열어 놓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의 모든 결정적인 진술은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7 S.Ct. at 1968. 이에 법원은 “개연성(plausibility)” 기준을 만들었다. 개연성 기준에 의하면, “준비서면 단계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cause of action)…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청구원인을 … 그럴듯하다고 시사하는 주장들이 필요하다. …연방민사소송규칙 §8(a)(2)는 평이한 진술로

원고가 구제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충분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반대 당사자들이 제시한 해석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해석론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Behrend v. Comcast Corp., et. al*, 2007 WL 2221415, *1-2 (E.D.Pa. Aug. 1, 2007) 사건에서 피고들은 *Twombly* 사건이 강화된 입증 기준을 만들어 냈고 원고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대신에 원고는 *Twombly* 사건의 판단이 Sherman법 제1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또한 *Twombly* 사건의 적용을 고심하였고, 철저한 검토 끝에 *Twombly* 사건이 Sherman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들에도 적용되는지 질문을 던졌다. *Iqbal v. Hasty*, 490 F.3d 143, 153-60 (2nd Cir.2007). *Iqbal* 사건의 법원은 결국 *Twombly* 사건이 Sherman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Twombly* 사건에 관하여 몇 가지 다른 판단들을 내렸다. 특히 제2연방항소법원은 강화된 준비서면 기준을 시사하는 *Twombly* 사건의 몇 가지 측면들을 지적하였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다소 강화된 준비서면 기준을 채택하였음을 시사하는 아래의 몇 가지 요소들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1) *Conley* 사건의 no-set-of-facts 기준의 명백한 폐기, (2) 아마도 notice pleading¹⁾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주장된 사실의 분량을 언급한 다양한 문구의 사용, (3) 소위 “개연성 기준”의 채택. 그러나 제2연방항소법원

1) 번역자 주 : 준비서면의 작성자가 서면에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가 약한 notice pleading과 좀 더 강하게 구체성을 요구하는 code pleading으로 나뉘는데, 연방민사소송규칙은 notice plead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은 또한 연방대법원이 새롭고 강화된 준비서면 기준을 시작하고 있다는 언급을 꺼려하는 견해를 보이는 문구도 인식하였다. 특히, (1) 새로운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부인 (2) 연방민사소송규칙 양식 9를 인정한 것(양식 9는 과실의 일반적 주장만을 포함하고 있고 과실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연방대법원이 구체적 사실들을 준비서면에 담은 것은 민사소송을 유지하는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후속 사건에서 언급한 것.

법원은 또한 Twombly 사건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Swierkiewicz v. Sorema N.A., 534 U.S. 506 (2002) 사건을 언급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Swierkiewicz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적으로 강화된 준비서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조와 충돌하는 것이고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만이 그러한 강화된 준비서면 기준을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Conley 사건의 no-set-of-facts 법리를 폐기하였지만, 명시적으로 Swierkiewicz 판결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점은 Twombly 사건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충돌되는 태도들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끝에, Iqbal 사건의 법원은 Bell Atlantic 사건이 강화된 사실 준비서면의 일반적 기준 또는 독점 금지법의 특별한 규정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Bell Atlantic 사건은 “융통성 있는 ‘개연성 기준’을 전달한 것이다. 융통성 있는 개연성 기준은 원고로 하여금 전후 문맥에서 몇 가지 사실적 주장들로 그의 청구를 강화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2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Twombly 사건은 notice pleading을 대체시키거나 준비서면의 요건들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주장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주장들을 요구하였다.

Twombly 사건의 적용을 판단한 제11연방항소법원의 사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Watts v. Florida Int'l Univ., 495 F.3d 1289, 1295-1300 (11th Cir.2007)(Florida 주법을 적용) 사건에서, 제11연방항소법원은 종교 차별 사건에 Twombly 사건을 적용하였다. 법원은 그 사건에서 “... 문제는 Watts가 합리적인 기대를 야기하는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진실로 그를 해고로 몰고 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개연성 있게 제시하였는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가 그의 신념의 진정성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연방항소법원이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제11연방항소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선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할 것이다.

II. 명예훼손 개관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대로, 이 사건 명예훼손 소송에는 Georgia주법이 적용된다. Erie R.R. Co. v. Tompkins, 304 U.S. 64 (1938); Delta Airlines, Inc v. McDonell Douglas Corp., 503 F.2d 239, 244(245 (5th Cir. 1974).²⁾ Georgia주에서 명예훼손 소송에는 4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1) 원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적 진술, (2) 제3자에 대한 공연한 전달, (3) 적어도 과실에 이를 정도로 불만한 피고의 책임(fault, 과실, 실수,

2) 각주1) 1981, 10, 1. 이전에 내려진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제11연방항소법원에서 구속력 있는 선례였다.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09 (11th Cir. 1981) (전원합의체).

과책이라고도 불림) 그리고 (4) 특별한 손해 또는 특별한 손해와 상관없이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있을 것. *Mathis v. Cannon*, 573 S.E.2d 376, 380, 276 Ga. 16, 20-21 (2002). 이러한 법리는 Georgia주 법전 *Ga.Code Ann.* §§ 51-5-1 내지 51-5-11 (1984) (libel and slander)로 성문화되었다.

나아가 문제된 진술이 공적 인물(public figures)과 공적 관심사(matters of public concern)와 관계될 때,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9-80 (1964). 원고가 공적 인물일 때, 원고는 피고가 진술을 공표하는데 책임이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진술로 현실적 손해를 입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Mathis v. Cannon*, 573 S.E.2d 376, 380, 276 Ga. 16, 20-21 (2002). 이 판결에서 말하는 책임(fault)이란 진술이 허위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진실에 대한 무분별한 경시를 말한다.

Georgia주법은 libel(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문서 등 영구적 형식에 의한 명예훼손, 주로 서면이나 인쇄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림)과 slander(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말, 몸짓 등 형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림)를 구별하여 인식한다. Georgia주에서 Libel은 “인쇄, 쓰기, 사진 또는 부호 형태로 표현되어 사람의 명성에 해를 가하기 쉽고 그 사람을 대중적 증오, 경멸 또는 조롱에 노출시키는” 허위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말한다. *Ga.Code Ann.* § 51-5-1 (1984). 반면, Slander는 말로 하는 명예훼손이다. Georgia주법은 slander를 slander per se(직접적 명예훼손으로 불림)와 slander per quod(간접적 명예훼손으로 불림)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한다. § 51-5-4. per se는 외부의 증거나 암시(innuendo)의 도움 없이 그 자체의 표현상 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명예훼손적인 말들이다. *Wright v. S. Bell Tel. & Tel. Co., Inc.*, 313 S.E.2d 150, 154, 169 Ga.App. 454, 458 (1984). Georgia주 법령은 3가지 특별

한 유형의 slander per se를 정의내리고 있는데, 그 중 § 51-5-4(3)의 직업적 slander가 이 사건에 가장 적절하다. § 51-5-4(3)는 “원고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계산 하에... 원고의 직업, 사무소, 경력에 대하여 비난을 가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per se이다. 그 말들이 명예훼손적 per se인 경우 손해는 추정되고, 증명될 필요가 없다.

Slander per quod 또한 Georgia주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Ga.Code Ann.* § 51-5-4(4) (1984). 비록 법령에 “slander per quod”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Georgia주 법전은 “원고에게 필연적으로 특별한 손해를 야기시키는 비하 발언”에 대한 소송을 허용한다. *Ga. Law of Torts* § 28-1 (2007 ed.); *Ga.Code Ann.* § 51-5-4. 하지만, slander per se와 달리, 원고는 이 조항에 기한 소송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손해를 보여줘야 한다. 원고가 어떠한 말들이 명예훼손적이었다고 주장할 때, 그 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원고는 그 말들이 명예훼손적인 특정한 의미로 공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Wright*, 313 S.E.2d at 154, 169 Ga.App. at 458; *Macon Tel. Pub. Co. v. Elliott*, 302 S.E.2d 692, 165 Ga.App. 719 (198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말들이 명예훼손적인 것인가 여부의 판단은 배심원의 몫이다.

예를 들면, “Jones가 그의 고객을 속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이다. 그의 직업과 관련하여 그에게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추론이나 암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Davita Inc. v. Nephrology Assoc., P.C.*, 253 F.Supp.2d 1370, 1378 (S.D.Ga.2003). 이러한 상황이 slander per se의 범령상 정의개념에 부합되기 때문에 손해는 추정된다. 그러나 “Jones는 이유가 있어 해고되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필요적으로 명예훼손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단어들은 직무상 불법행위가 Jones의 퇴직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암시가 그 말들 자체로부터 필연적인 의미는 아니다. Jones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나 나중에 혐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그가 “이유가 있어 해고되었다”는 진술은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Hayes Microcomputer Prod., Inc. v. Franza et al., 601 S.E.2d 824, 828-29, 268 Ga.App. 340, 345-46 (2004). 그것이 명예훼손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여부는 배심원이 결정한다.

A. “수사적인 과장(Rhetorical hyperbole)”은 법률적 문제로서 명예훼손적이라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논의된 개별적 요건을 언급하기에 앞서, 법원은 여기서 문제된 진술들이 명예훼손으로 분류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 쟁점을 언급하여야 한다.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이 험담(name-calling)과 과장 이상이어야 한다. Atlanta Humane Soc’y et al. v. Mills, 618 S.E.2d 18, 25, 274 Ga.App. 159, 166 (2005) ; Horsley v. Rivera, 292 F.3d 695, 701 (11th Cir.2002) 참조. 또한 Robel v. Roundup Corp., 59 P.3d 611, 148 Wash.2d 35 (2002) 참조. 일반적으로, 진술들은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문제된 진술들 중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진술들은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진술이다. 피고가 행한 다른 모든 진술들은 아무리 불쾌하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도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천박하고 부적절한 진술이 모두 명예훼손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Atlanta Humane Soc’y et al. v. Mills, 618 S.E.2d 18, 25, 274 Ga.App. 159, 166 (2005) Horsley v. Rivera, 292 F.3d 695, 701 (11th Cir.2002) 참조. 또한 Robel v. Roundup Corp., 59

P.3d 611, 148 Wash.2d 35 (2002) (원고를 겨냥하여 “바보”, “밀고자”, “배신자”, “거짓말쟁이”의 단어들을 동반한 천박한 말들은 문자 그대로 사실의 진술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없는 독설적인 말들이다). 진술들이 명예훼손적 per se가 아니라면, Georgia주법은 그 진술들이 허위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그 진술들이 현실적 손해를 야기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한다. Gast v. Brittain, 589 S.E.2d 63, 64, 277 Ga. 340, 341 (2003) Mills, 618 S.E.2d at 24, 274 Ga.App. at 165-66. 참조.

피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견(opinion)을 표현하였고, 아무리 그 의견이 비이성적이거나 표현상 질책을 받을만하더라도, 단지 의견 표명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는 없다”. Gast, 589 S.E.2d at 64, 277 Ga. at 341. 여기서, “Barnes는 약골이다”, “나는 항상 Barnes가 지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Barnes는 ‘여드름 대장’이다”, “Barnes는 ‘* * * *한 말더듬이이다’”, “지체아”, “* * * *한 * * * 빌어먹을 놈”이라는 진술들은 본질적으로 사실적이 아니다. 그러한 진술들은 일반적으로 거짓으로 증명될 수 없다. 예를 들면, Blomberg v. Cox Enter., Inc., 491 S.E.2d 430, 433, 228 Ga.App. 178, 180 (1997) (원고를 “말주변이 좋은 악마”로 빗댄 진술은 거짓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예를 들면, Mills 사건에서 Georgia주 항소법원은 Garrett가 사악하다거나 신발에 묻은 배설물을 핥는 것에 어울릴 정도라는 것, 그가 살인마(Mr. Kill)였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명백히 과장되고 증명되지 아니한 주장으로서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다”. Mills, 618 S.E.2d at 24-25, 274 Ga.App. at 165-66. 이 사건에서의 위 진술들도 유사하게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비록 원고를 지체자 또는 여드름 대장이라고 한 진

술들이 겉으로는 거짓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진술들은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는 과장되고 내뱉는 언어의 범주에 들어간다. 법은 오랫동안 사실(fact)이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가 담겨있지 아니한 주장에 근거한 진술에 대하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왔다. *Horsley v. Rivera*, 292 F.3d 695, 701 (11th Cir.2002). 또한, *Letter Carriers v. Austin*, 418 U.S. 264, 284-86 (1974) 참조. 연방대법원은 또한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20 (1990) 사건에서 헌법이 “수사적 과장”(개인에 관하여 실제의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을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Gast*, 589 S.E.2d at 64, 277 Ga. at 341 참조.

원고를 지체자 또는 여드름 대장이라고 한 진술들을 이해함에 있어 어떠한 합리적인 사람도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의 사실적인 진술이라거나, 암시적 방법의 사실적 진술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궁극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응답에 불과하다.³⁾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판사들과 배심원들의 양심이 아닌 다른 생각들의 경쟁에 의하여 잘못이 고쳐질 것을 기대한다.’” *Gast*, 589 S.E.2d at 64, 277 Ga. at 341 (인용 *Gertz v. Welch*, 418 U.S. 323, 339-40 (1974)).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진술들은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분석은 단지 이 진술에 한정된다.

III.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피고가 공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주장을 통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사실들을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첫째, 원고는 허위(falsity)를 주장하였고, 이는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충분하다. 둘째, 원고는 피고의 진술들이 사려 깊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청중의 범위에 제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들이 공연히 행하여졌음을 시사하는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소장에 의하면, 진술들이 공표되었음은 명백하다. 셋째, 현재 법원이 원고의 지위가 공격 인물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원고는 피고 측에게 악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충분한 사실들을 밝혔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가 진실을 알거나 알았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장책임(pleading burden)을 충족시켰다. 넷째, 비록 원고가 *slander per se* 유형으로 청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사실들을 논쟁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주장들은 *slander per quod*를 구성할 수 있다. *Davita Inc. v. Nephrology Assoc., B.C.*, 253 F.Supp.2d 1370, 1377 (S.D.Ga.2003) 참조. 마지막으로, 원고는 특별한 손해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음을 시

3) 각주2) 모욕이나 헐담이 명예훼손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Bullock v. Jeon*, 487 S.E.2d 692, 695 (Ga.App.1997) (“비록 *slander per se*가 아니지만, Jeon의 진술들을 경멸적인 헐담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그리고 나서도 특별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데 ... [인용 생략] *Bullock*은 그가 어떠한 특별한 손해를 입은바 없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Georgia주 대법원 사건 *Gast v. Brittain*, 589 S.E.2d 63, 64, 277 Ga. 340, 341 (2003)을 포함하여 앞에서 인용한 판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Bullock* 사건을 선례로서 배제한다. 나아가 법원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문제로서 어떠한 단어들도 명예훼손적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Bullock*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단어들도 명예훼손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하기 보다는, 그 법원은 대신에 그 단어들도 명예훼손적일 수는 있지만 특별손해가 주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사하는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A. 원고는 허위 요건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가 해고되었다는 피고의 진술들이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이것만으로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 시키기에 충분하다. 모든 사실들이 원고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Hickson v. Home Federal of Atlanta, 805 F.Supp. 1567, 1571 (N.D.Ga.1992) (“법원은 준비서면들을 넓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변론된 모든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며 상대방⁴⁾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모든 추론들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인용 Cooper v. Pate, 378 U.S. 546, 546 (1964)). 그러므로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의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건의 내용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피고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자신의 진술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고(fired)”와 “퇴직(terminated)”의 사전적 정의를 언급한 피고의 시도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원고의 부인은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충분하다.

B.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공연하게 진술했음을 시사하는 사실들을 주장함으로써 공연성 요건 (the unprivileged publication requirement)을 충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많은 제3자들에게 공연하고도 분명하게 진술들을 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표(publication)는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전달이다. Pavlovski v. Thornton, 15 S.E. 822, 822, 89 Ga. 829, 829 (1892) Restatement (Second) Second of Torts §577 (1977). 피고가 방송 중에 그리고 영화의 관람객들에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공표가 있었다는 것은 소장의 문언상 명백하다.

은밀함(privilege)의 항변을 하기 위하여, “피고는 무엇보다도 그 발언의 적절한 계기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공표가 적당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Duchess Chenilles, Inc. v. Masters, 67 S.E.2d 600, 605, 84 Ga.App. 822, 829 (1951)(원고가 물건들을 훔쳤다는 전달이 적어도 3명의 이웃들의 면전에서 행하여진 정보에 있어서 어떠한 합법에 대한 관심 없이 행하여졌다면 은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Ga.Code Ann. § 51-5-7 (어떠한 유형의 진술들의 전달은 은밀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될 것이다)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떠한 은밀성 요건을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의 진술들이 은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장의 문언상 개연성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진술의 공표는 발생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충분하다.

C. 원고는 피고 측에게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해줄 만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공적 인물과 공무원은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진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들의 공적 행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Morton v. Stewart, 266 S.E.2d 230, 232, 153 Ga.App. 636, 638 (1980) (인용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34 (1974)). 명예훼손된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법원에 대하여 하나의 쟁점이다. Mathis v. Cannon, 573 S.E.2d 376, 381-82, 276 Ga. 16, 22-23 (2002). 그러나 법원은 소송에서 이 점에 대하여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

4) 번역자 주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각하 신청의 상대방인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고 여부 대한 진실을 알았거나 그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였음을 시사하는 사실들을 충분히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주장하였다.

“어떠한 개인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에서 확립되었다”. *Sewell v. Eubanks*, 352 S.E.2d 802, 803, 181 Ga.App. 545, 545 (1987). 일정한 경우에 개인은 충분한 악명을 떨쳐 모든 범위에서 공적 인물이 될 수 있다. 대개 개인은 공적 논쟁에 참가하거나 끌려 들어가 제한적 범위의 공적 인물(a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이 된다. *Sewell v. Eubanks*, 352 S.E.2d 802, 181 Ga.App. 545 (1987) (인용 *Gertz*, 418 U.S. at 351).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사실의 집중 조사가 필요하고, 이 법원은 현재 준비서면 제출 단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Mathis v. Cannon*, 573 S.E.2d at 381-82, 276 Ga. at 22-23 참조. 대신에 법원은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주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적 의미에서의 ‘악의(Malice)’란 나쁜 의지, 증오 또는 해를 가하려고 계획된 혐의가 아니다. *Garrison v. State of La.*, 379 U.S. 64, 71-73 (1964) *Williams v. Trust Co. of Ga.*, 230 S.E.2d 45, 50-52, 140 Ga.App. 49, 55-56 (1976). “헌법적 의미의 악의란 말하는 사람이나 공표자가 허위성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보이거나 실제의 또는 개연성 있는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Williams*, 230 S.E.2d at 51, 140 Ga.App. at 56. 현실적 악의는 추정되지 않고 “원고에 의한 입증의 문제이다”. 현실적 악의가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거나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송의 현재 단계에서 충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라면 피고 측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

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방송국에 재직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진술을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면, 악의는 존재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만, 여기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이 진실하다는 가정 하에 판단한다. *Hickson v. Home Federal of Atlanta*, 805 F.Supp. 1567, 1571 (N.D.Ga,1992) (인용 *Cooper v. Pate*, 378 U.S. 546, 546 (1964)). 원고는 피고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충분하다.

D. 원고가 지목한 피고의 진술이 slander per se가 아니지만 slander per quod에 해당할 수 있다

Georgia주에서는, 어떤 사람의 직업에 관하여 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slander per se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Ga.Code Ann. § 51-5-4(3). 그러나 관례법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원고의 직업 또는 경력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Davita Inc. V. Nephrology Assoc., P.C.*, 253 F.Supp.2d 1370, 1378 (S.D.Ga,2003)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마도 slander per se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불법을 암시하는 피고의 진술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적절한 암시(innuendo)라는 주장은 slander per quod의 이론 하에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하다.

1. Slander per se

Georgia주법 § 51-5-4(1) 및 (2)는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품격 이하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slander per se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잠정적으로 slander per se의 또 다른 형태를 열거한 § 51-5-4(3)이 이 사건에 적절하

다. 피고가 “다른 사람의 직업, 사무소 또는 경력에 관하여 그에게 손해를 가할 계획 하에 비난”하는 경우, 피고는 slander per se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른 법률적 청구를 하기 위한 다른 요건은 (1) 비난행위가 허위이어야 하고 (2) 그 비난행위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져야 하며 (3) 전달 방법이 은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Ga.Code Ann. §§ 51-5-4(a)(3), 51-5-5, 51-5-6, 51-5-7.

모든 주장들이 진실하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Bames가 해고되었다고 공표하는 것이 “원고의 직업에 관하여 [원고]를 비난”하는 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이다. § 51-5-4(a)(3) 참조. 이 법원은 Georgia 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추론이 이 쟁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 위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판단한 사안에 따르면, 그 답은 ‘아니오’이다. Davita, 253 F.Supp.2d at 1378.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피고의 진술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고 Georgia 법령상 slander per se일 수 없다.

Davita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직업에 관하여”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였다. 위 법원은 그 말들이 원고의 직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의사가 돈을 지불하고 진료 받을 자격을 갖춘 환자들에게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진술은 그 진술이 그 의사의 직업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직업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진술이다. 게다가 이 진술은 계획적이고 확실히 그 의사의 직업경력에 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땅을 훔쳤다는 진술들은 그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그의 의료행위에 손해를 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Davita 사건의 사실관계는 또한 인접 사건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Davita 사건에서, 법원은 (1) 원고가 피고의 시설에서 활동하는데 배제되고

(2)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진술들은 그 규정에서 볼 때 원고의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slander per se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slander per se가 되기 위하여는, 말들이 “외부 증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Macon Tel. Pub. Co. v. Elliott, 302 S.E.2d 692, 696, 165 Ga.App. 719, 723 (1983). Davita 사건에서, 듣는 사람들에 의하여 짐작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말들 자체에는 해를 가한다고 불만한 것이 없었다. 이 법원은 단지 “이러한 진술들이 명예훼손적인가에 대하여 O.C.G.A. § 51-5-4(a)(3)의 ‘per se’ 규정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Davita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명예훼손적 말들이 Ga.Code Ann. § 51-5-4(3) 규정에서 요구하는 원고의 직업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었다. “Bames가 해고되었다”는 말이 slander를 구성하는 유일한 방식은 암시(innuendo)와 맞물릴 때이다. 그 암시는 원고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고되었다거나 Chris (“Crash”) Clark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이것을 추론하여야 하는 경우 단지 slander per quod일 수 있을 뿐이다. Bellemead, LLC v. Stoker, 631 S.E.2d 693, 695-96, 280 Ga. 635, 637-38 (2006) Davita, 253 F.Supp.2d at 1378.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에서 하는 판단은 원고의 주장들이 slander per quod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Slander per quod

Eidson v. Berry, 415 S.E.2d 16, 202 Ga.App. 587 (1992)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진술들이 법률문제로서 slander per quod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2개의 적절한 질문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질문들은 (1) 피고의 진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밝히고 있거나 암시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2) 명예훼손 주장들이 허위로 증명될 수 있는가이다(인용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990)).

Davita 사건의 법원은 위의 기준을 Davita 피고의 진술들(원고가 그의 진료행위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어떠한 도덕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에 적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진술들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불법행위를 암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진술들은 원고가 비밀에 붙여진 행위들을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어떤 사람이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진술하는 것이 “그 주장을 유효하게 하는 사실들이 존재함을 암시한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원고가 그 주장들에서 암시한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러한 진술들이 명예훼손 청구를 당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진술들은 의견들에 불과하여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Barnes가 해고되었다는 진술들은 또한 이면의 사실들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자연스러운 암시란 원고가 방송국에서 필연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알려지지 않은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무능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Chris “Crash” Clark이 방송국을 그만둔 것을 둘러싼 상황들이 원고에게 암시된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주장된 문서가 법률문제로서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의 쟁점은 배심원에 의하여 결정될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다”. Macon Tel. Pub. Co. v. Elliott, 302 S.E.2d 692, 694, 165 Ga.App. 719, 720 (1983) Atlanta Journal Co. v. Doyal,

60 S.E.2d 802, 82 Ga.App. 321, 330 (1950). 그러므로 그것이 명예훼손일 수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는 피고의 말들로부터의 잠재적 암시는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다.

피고는 피용자들의 실질적 퇴직을 초래하는 퇴출 통지들이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판례법을 지적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다. “피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암시가 아니다”. Hayes Microcomputer Prod., Inc. v. Franza et al., 601 S.E.2d 824, 828, 268 Ga.App. 340, 344 (2004) (인용 Brewer v. MARTA, 419 S.E.2d 60, 61, 204 Ga.App. 240, 241 (1992)); Zielinski v. Clorox Co., 450 S.E.2d 222, 225, 215 Ga.App. 97, 99 (1994)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판례법과 같은 사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판례법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어떠한 사람이 해고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법률문제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경멸적 사실들을 암시하는 어떠한 진술들이 법률문제로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면, Zielinski v. Clorox Co. 사건에서, 퇴출 통지가 원고에 대한 어떠한 비평도 담겨 있지 아니할 때는 비록 원고가 용의자인 절도사건의 조사 도중 해고 통지가 되었더라도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450 S.E.2d 222, 223-24, 215 Ga.App. 97, 97-98 (1994). Zielinski 사건에서, 원고가 그만두기에 앞서 피고는 모든 피용자들과 모임을 갖고, 피용자들에게 원고가 절도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을 알렸다.⁵⁾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 모임이 퇴출 통지와 결합하여 명백히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이

5) 각주 3) 이러한 진술들 자체는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제기할 가치가 없다. 제한 법령(the statute of limitations)이 이 모임에서 행하여진 진술들에게도 미치지 때문이다.

것이 해고된 이유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퇴출 통지가 (원고의 절도 관여 여부에 관하여) 모든 종업원 모임에서 ... 의심이 조기에 알려지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시'의 법리는 다른 사람들이 풍문이나 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로 단지 사실적이고 명백히 비난이라고 볼 수 없는 진술을 명예훼손 안으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Yandle v. Mitchell Motors, Inc.*, 404 S.E.2d 313, 314, 199 Ga.App. 211, 212 (1991) 참조(원고의 "판매 노력 부족이 낮은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진술은 어떠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Willis v. United Family Life Ins.*, 487 S.E.2d 376, 226 Ga.App. 661 (1997) 참조(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장례식장 보다는 보험사에 보내도록 지도하는 서신들은 비록 이러한 서신이 장례식장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적 조사 도중 배포되었다고 할지라도 법률문제로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Zielinski 사건과 비교할만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으로 *Chance v. Munford, Inc.*, 342 S.E.2d 746, 747, 178 Ga.App. 252, 253 (1986)이 있다. *Chance* 사건에서, 피고가 그의 가게에 통지문을 붙여 원고가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떠한 libel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는 암시에 대하여 해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 그러한 말들은 확실히 명백히 항소인의 명성에 해를 가하거나 그를 '대중적 증오, 경멸 또는 조롱'에 노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 [공표]는 항소인의 인격 또는 행동에 관하여 어떠한 해로운 암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 [공표]에 그러한 암시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없다. 비록 이러한 사안들이 표면적으로 일순간 사실관계가 닮아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차

이점들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말들은 거짓이다 (원고는 그가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들이 원고의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된다). 다른 사건들에서, 원고들은 해고되었고, 실제로 가게에서 배제되었다. *Zielinski*, 450 S.E.2d at 226, 215 Ga.App. at 99-100. *Chance*, 342 S.E.2d at 747, 178 Ga.App. at 253 참조.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사건들에서 암시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진실한 정보로부터 이끌어졌지만, 이 사건에서는 거짓된 진술이 그 결과로 생긴 암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위에서 인용한 사건들은 피고들이 그들이 행한 정보를 게시하고 배포하는데 합법적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 *Zielinski*, 450 S.E.2d at 226, 215 Ga.App. at 99-100. *Chance*, 342 S.E.2d at 747, 178 Ga.App. at 253 참조.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그의 직원에게 어느 피용자의 퇴출을 알릴 수 있고, 가게 주인은 합법적으로 고객을 그의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법원들은 면책특권(privilege)이 아니라 면책특권에 불구하고 피고 각자가 공표에 대한 합법적인 업무상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들은 다르다. 피고는 듣는 사람들 및 상영관에 온 사람들에게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피고는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업무상 이유를 들지 못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업무상 이유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비록 피고가 오로지 진실 되고 비난이 없는 진술은 명예훼손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들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적 입장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Wright v. Southern Bell Tel. & Tel. Co., Inc.*, 313 S.E.2d 150, 169 Ga.App. 454 (1984) 사건에서, 원고는 전화회사가 그녀로 하여금 사위의 요금을 결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그녀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사위의 요금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이 없었다. 명백히 그녀의 요금지불은 최근까지 이

루어졌다. 원고는 그녀의 전화 기록이 그녀의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전화 기록이 그녀가 자신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전화 기록이 *per se*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per quod*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피고의 진술들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률문제로서 말할 수 없다면, 피고의 각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Hayes Microcomputer Prod., Inc. v. Franza et al.*, 601 S.E.2d 824, Ga.App. (2004). Barnes가 해고되었다는 진술이 그가 방송국을 필연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어떠한 폭로되지 않은 행위들을 저질렀음을 암시하는지 여부는 배심원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허용된다. 나아가, 배심원은 이 진술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Chris "Crash" Clark이 불명예스럽게 방송국을 그만둔 상황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피고의 말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단순하고 잠재적인 암시는 피고의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피고의 진술들이 법률문제로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한, 피고의 진술들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가 아니다. *Pub. Co. v. Elliott*, 302 S.E.2d 692, 694, 165 Ga.App. 719, 720 (1983) *Atlanta Journal Co. v. Doyal*, 60 S.E.2d 802, 82 Ga.App. 321, 330 (1950).

E. 원고는 특별한 손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원고가 어떠한 *slander per se*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소송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손해를 주장하여야 한다. *Ga.Code Ann. §§ 51-5-4(b)* (1984) *McGee v. Gast*, 572 S.E.2d 398, 400, 257 Ga.App. 882,

883 (2002).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각하 신청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요구되는 요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서면 단계에서, 원고는 "[청구원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청구원인을 그럴듯하게 시사하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127 S.Ct. 1955, 1966 (2007). 제11연방항소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우리의 질문은 원고가 "합리적인 기대를 야기할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그가 특별한 손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개연성 있게 제시하였는가"이다. *Watts v. Florida Int'l Univ.*, 495 F.3d 1289, 1296 (11th Cir.2007).

원고가 특별한 손해들을 "주장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손해는 추정된 손해(*presumed damages*)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slander per se*와 관련된 상황에서 손해는 추정된다. 그 말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자동적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Ga.Code Ann. §§ 51-5-4* (1984) 참조. 그 말 자체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이러한 분석에서 볼 때, 원고는 현실적 손해 (및 인과관계), 특별한 손해를 주장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개연성 있게 전달하고 ... 시사하는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여야 한다. *Watts*, 495 F.3d at 1296.

그 말들이 특별한 손해를 주장하기에 충분한가를 판단할 지침자료가 거의 없다. 유일한 요건은 그 손해가 금전적인 관점에서 계산 가능할 것이라는 점으로 보인다. "그 말들 자체가 명예훼손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손해는 금전의 상실 또는 금전 이외의 다른 물질적 세속적

이익으로서 금전적 가치로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McGee v. Gast*, 572 S.E.2d 398, 401, 257 Ga.App. 882, 885 (2002) (인용 *Webster v. Wilkins*, 456 S.E.2d 699, 217 Ga.App. 194, 196 (1995)). 달리 말하면, 그 손해 자체가 독특하거나 특별한 필요는 없지만, 발생하여야 하고 계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실적 가치가 정확히 산정되거나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McGee*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의 상실, 이익의 상실 및 심지어 무상의 오락과 환대”도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상실이 야기되었다고 제시할 수” 있는 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특별한 손해들을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McGee* 사건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McGee* 사건은 인용하기에 부적절하고 피고의 주장을 강화시켜 주지도 않는다. *McGee*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원고가 그의 경력 또는 생계에서 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cGee*, 572 S.E.2d 398, 400, 257 Ga.App. at 884. 또한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명백히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McGee*, 572 S.E.2d at 401, 257 Ga.App. at 885. *McGee*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대로 사건들의 시간적 측면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막았다고 지적하였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말들은 원고가 유일한 손해로서 주장한 그의 자원봉사자 직위에서 면직된 후에 행하여졌다. *McGee* 사건에서처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없음을 피고의 준비서면들에서 명백히 하는 경우에만 소가 각하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또한, *Dagel v. Lemcke*, 537 S.E.2d 694, 254 Ga.App. 243 (2000)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말들이 원고의 생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사실들은 *McGee* 사건에서의 사실들과는 명백한 차이

를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99X에서 그만두기로 한 후에 그의 이전 방송 동료는 원고가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 피고의 진술들은 명백히 원고의 잠재적 청취자 수, 그의 팬, 그가 장래 Atlanta주에서 방송일에 종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다. 소장에 의하면, 이러한 영향은 확실히 원고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된 손해는 돈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McGee* 사건과 달리 시간적 측면이 존재한다. 피고의 명예훼손적 말들이 원고가 99X를 그만둔 직후에 행하여졌고, 원고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할 때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원고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을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구체성을 띠고 주장하지 못한 점은 치명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과 특별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각하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손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Georgia주법에 따르면, 손해와 인과관계의 양 및 상세성은 입증의 문제들이다. *Peacock Const. Co. v. Erickson's, Inc. et. al*, 174 S.E.2d 276, 277, 121 Ga.App. 544, 544 (1970). Georgia주 항소법원은 “특별한 손해는 입증의 문제이므로, 주장들은 청구의 진술로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인용 *Tench v. Ivie*, 173 S.E.2d 237, 121 Ga.App. 114 (1970)). 나아가, 이 단계에서 손해의 주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조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의 상세성(예를 들면 피고의 말들 때문에 원고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 고용주들의 발견, 원고를 지지하면서 듣기를 멈춘 청취자들의 발견)은 입증의 문제이다. 원고는 앞으로 소송이 진행

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제11연방항소법원 및 Twombly 사건에 따르면, "...문제는 [현재] [원고]가 합리적 기대를 야기할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적 비평들의 결과로서 특별한 손해를 입고 특별한 손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연성 있게 제시하였는가"이다. Watts v. Florida Int'l Univ., 495 F.3d 1289, 1295 (11th Cir.2007).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예훼손이 발생하였고, 명예훼손이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음을 개연성 있게

주장하였다. 원고는 손해를 주장하였고, 그 손해는 금전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인과관계 또한 주장되었고, 개연성 있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각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 35, No. 48. PP. 2537-2548

번역 : 흥기만 (춘천지방법원 판사)

일본 판결1

주간지에 게재된 예능인과 그의 전 배우자의 혼인생활에 관한 주간지 기사, 신문지상의 광고와 전동차 내 광고에 대해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 출판사 및 편집인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불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한 사례

원 고 : 甲野太郎

피 고 : 주식회사 小學館

대표이사 相賀昌宏

편집인 乙川一郎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6(7) 제8422호

사 건 명 : 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내용 : 일부인용 · 항소

변론종결 : 2007년 4월 9일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 별지 1 기재의 사죄광고를 피고 주식회사 소학관 발행 『週刊포스

트』지에 별지 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 8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19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6을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는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2항에 한해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사 실

제1.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1) 원고는 투자사업, 경영컨설팅 업무, M&A 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테크노벤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2005년 1월 11일 여배우이며 탤런트인 丙山櫻(예명·春野 사쿠라. 이하 「사쿠라」로 한다)과 혼인 후 동년 8월 11일 이혼했다.

(2) 피고 주식회사 소학관은 잡지·도서 출판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주간지 『週刊포스트』를 발행하고 있다. 피고 乙川一郎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週刊포스트』 2005년 9월 2일호의 편집인이다.

2. 『週刊포스트』 2005년 9월 2일호의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 회사는 피고 乙川을 편집인으로 하여 『주간포스트』 2005년 9월 2일호(정가 350엔, 발행부수 약 68만 부)에 「春野 사쿠라 독점수기 이혼의 전(全) 진상 『그날 밤 그는 느닷없이 나에게 구타를 가해왔다』」는 제목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했다. 본건 기사의 전문은 별지 4(그 일부 발췌가 별지 5)와 같다.

(2) 본건 기사 내용 중 별지 4의 1부터 13까지의 기재부분(그 발췌가 별지 5)은 독자에게 아래와 같은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했다.

(ㄱ) 1, 2 및 7의 기재부분

원고가 처 사쿠라의 저서의 내용을 이유로 사쿠라를 매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는 바로 직후에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했다는 인상.

(ㄴ) 3 및 4의 기재부분

원고가 친지의 결혼피로연에서 이따금 만나 알게 된 사쿠라에 대해 두 번째로 만나기까지의 사이에 소행(素行) 조사를 했다는 인상.

(ㄷ) 5의 기재부분

원고가 사쿠라와의 혼인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그 여성을 원고의 자택에 출입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인상.

(ㄹ) 6 및 8의 기재부분

원고가 사쿠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연사를 나열한 메일을 송신했다는 인상.

(ㅁ) 9 및 12의 기재부분

원고가 예능인을 깔보고 있었으며, 사쿠라가 TV 프로에 출연할 때마다 사쿠라와 TV 방송국에 항의하고 나아가서는 TV 방송국 사장에게 사쿠라가 출연하는 프로의 사전열람을 요구했다는 인상.

(ㅂ) 13의 기재부분

원고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인상.

3. 본건 기사의 신문광고 및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 회사는 2005년 8월 19일 전국지 각지(『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찌』, 『産經』, 『日本經濟』 등)에 게재한 광고 및 JR선 각선, 사철(私鐵) 각선, 지하철 각선 등의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에 본건 기사의 표제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당 재판소의 판단

제1. 본건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의 존재 여부

1. 본건 기사 내용 중 별지 4 및 5의 각 1부터 13까지의 기재부분과 본건 기사의 신문광고 및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의 기재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1) 1, 2 및 7의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원고가, 상당한 이유도 없이 가정 내에서 처 사쿠라에게 구타를 가하고, 난폭하게 굴고, 직접 또는 메일을 통해 매도하는 언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 이는 원고가 폭력적 경향이 강한 인물, 가정 내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미숙한 인물이며, 이혼도 원고의 폭력이 원인이라는 인상을 독자들이 받았음이 명백하다.

「이혼의 전(全) 진상, 그날 밤 그는 느닷없이 구타를 가해왔다」는 표현은 표지에 큰 활자로 기재되어, 신문광고나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에서도 동일한 표현(그가 느닷없이 구타를 가해온 밤)이 큰 활자로 기재된 것과 더불어, 원고가 가정 내 사생활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는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2) 3 및 4의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원고가 사쿠라와 첫 대면 후 두 번째로 만나기까지의 사이에 사쿠라의 소행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전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사쿠라의 배우로서의 이용가치를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또한 「소행조사」라는 용어에서 첫 대면한 여성인 사쿠라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까지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어, 이 부분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3) 5의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원고가 혼인 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불법행위

를 하면서 그 여성을 자택에까지 출입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자택에 갔었다. 그곳에서 박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생리용품과 농후한 여성의 냄새. 다른 여성의 존재를 확신했다”는 등의 기재를 함으로서 원고의 불법행위가 진실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려고 했다. 이 부분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4) 6 및 8의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원고가 사쿠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언사(사쿠라의 진심을 의심하는 내용)를 나열한 메일을 송신한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원고가 가정 내 사생활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퍼붓고 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 주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5) 9 및 12의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원고가 예능인을 깔보고 있고, 사쿠라가 TV 프로에 출연할 때마다 사쿠라와 TV 방송국에 항의하거나 프로의 사전열람을 요구한 사실들을 전하는 내용이다. 본건 기사의 9부터 12까지의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쿠라의 예능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동이 원고에게 있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주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6) 13의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원고가 자신이 구입한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쿠라에게 대신해서 지불토록 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대금 수백만 엔을 떼어먹었다”는 등의 기재로, 원고는 금전면에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주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7) 신문광고 및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가 독자에게 주는 인상

본건 기사의 광고의 표현은 본건 기사의 타이틀(본

건 기사의 1 및 2의 부분)과 거의 동일한 취지이며, 전기 (1)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2.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본건 기사가 사쿠라의 수기를 그대로 독점 게재한 것으로, 수기의 내용 그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서 적시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사쿠라가 수기 그대로의 문장을 지었다는 것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기사 전체를 표제 등도 포함해서 통독한다면, 일반 독자는 통상 사쿠라가 직접 또는 누군가에게 대필시켜 수기대로의 문장을 지었다는 것이 기재되었고 동시에 수기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 사실로서 기재된 것으로 본건 기사를 이해할 것이라고 인정된다.

사쿠라가 수기대로의 문장을 지었으나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면 그러한 기사에 흥미를 갖는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며, 또한 주간지에 4쪽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동기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다. 수기의 내용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보도함으로써 일반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제2. 진실성·상당성의 항변(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건 기사의 공공성 및 공익목적에 대하여

(1) 본건 기사 전체를 표제 등까지도 포함하여 통독하면, 이혼한 부부의 한쪽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혼인생활과 이혼에 이르는 에피소드(통상 타인이 모

르는 영역)가 기술되어 있는데 불과하며, 이른바 가십 기사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건 기사의 내용은 사생활상의 비밀스러운 일,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안의 기술에 불과하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건 기사의 게재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 본건 기사는, 사쿠라가 인생의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 일이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직접적인 체험담으로 말해 독자에게 사쿠라와 남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재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기사는 결국 사인(私人·원고가 공무원 등 이른바 공인 또는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타입의 문화인, 예능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의 혼인생활 중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부분과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전기 주장도 결국 본건 기사가 원고와 사쿠라의 사적인 혼인생활과 그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혼인생활상의 사적인 사안의 게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든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나머지 다른 점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공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위법성조각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본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상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하여

(1) 더욱 확실하게 다짐해 두기 위해, 본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 등의 증명의 유무에 대하여 검토한다.

원고는 별지 3의 1부터 13까지(본건 기사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가운데, 원고의 자택에 여성의 생리용품이 놓여 있었다는 5 기제는 진실이나(다만, 당시 원고의 자택에 다른 여성이 출입했다는 것은 허위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본건 기사 내용 중 진실성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사쿠라의 발언만으로 진실성의 증거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따로 진실이라고 정확하게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3) 전기 인정사실(특히 제1의 5(10))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쿠라의 말을 단순히 신용했을 뿐이며 필요 최저한의 입증취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들에게는 본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 밖에 진실이라고 믿은 데 있어 상당한 이유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제3. 손해

1. 전기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검토한다.

(1) 본건 기사에 의해 원고에게 발생한 명예훼손은 주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데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은 원래 직업 활동과 그 밖의 사회활동 등 사회와 관련이 있는 가운데서의 그 자의 활동과는 달리, 통상 진실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표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표됨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본건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데미지는 상당한 정도로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특히 피해자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의 보도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이익을 얻는다든지, 자기 현시(顯示)욕 또는 명예욕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은 자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이 보도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으며, 이에 수반하는 매명(賣名)에 의한 이익이나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것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쿠라가 예능인이라고 해서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를 사소하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이른바 가십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는 가십 보도에 의한 매명이나 이익의 획득 등을 의도하지 않은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리, 이익을 보호해야만 할 필요성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측의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정신적 데미지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대단히 크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2) 본건 기사에 의해 보도된 내용은, 원고가 사쿠라와 혼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과 가정 내에서 처 사쿠라에 대해 폭력적인 언동을 했다는 것이 중심인데, 이는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정도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특히 본건 기사에 의해 보도된 내용은 그 주제와 요지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며, 피고 측에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할 상당한 이유조차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확실한 입증이 없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사쿠라가 이혼하게 된 원인이 일방적으로 원고 측에 있으며, 그 이혼의 원인인 원고 측의 행위란 자택에서의 불륜행위, 처에 대한 폭력적 언동(폭행 및 매도매일)이었다는 것을 보도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보도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명예와 신용은 현저하게 손상되었으며, 심적으로 받은 정신적 데미지도 대단히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3) 본건 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이 기재되고 원고의 얼굴 사진(경제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도 등재되었는데 이것에 의해서도 원고의 명예훼손 피해는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4) 본건 기사는,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週刊포스트』(발행부수 약 68만 부)에 게재됨으로서 그 피해의 범위는 전국 규모로 파급되고 있다. 관서(關西) 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다든가, 1개의 현 내(縣內)에 한정되어 발행된 잡지에 게재된 경우와 비교하면 그 피해의 정도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약 68만 부라는 많은 발행부수 때문에 피해의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발행부수가 적은 경우와 비교하면 그 피해의 정도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본건 기사가 게재된 『週刊포스트』는 정가 350엔으로 68만 부가 발매되었는데, 그 가운데 1부당 10엔(정가의 28%)을 손해배상금의 지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68만 부를 합계하면 680만 엔 정도의 부담 밖에 되지 않아, 피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하겠다.

(5) 본건 기사의 광고는, 수백만 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전국지 각지(各紙)의 광고란 및 수도권, 관서권 중심부의 철도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에 큰 활자로 「春野 사쿠라 독점수기 이혼의 전 진상 『그가 느닷없이 구타한 밤』」이라고 기재되어, 『週刊포스트』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대단히 많은 국민의 눈에 노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광고에는 원고의 실명도 사진도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광고를 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광고가 원고와 春野 사쿠라의 이혼기사 광고이고, 느닷없이 구타를 가한 「그」를 원고로 이해했으리라는 것은, 전기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광고만을 본 많은 사람들도 또한 원고와 사쿠라의 이혼 원인이 원고의 폭력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광고에 의해서도 명예를 크게 훼손당하게 되었으며 그 피해

는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원래 보도될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도에 의한 매명 등을 의도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명과 얼굴사진을 게재하여, 이혼의 원인인 불륜행위와 폭력적 언동을 했다는 적시와 함께 원고는 현저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대단히 크며, 전국 규모로 수십만 부가 발행되는 주간지에 게재된 기사라는 점, 광고에 의한 피해가 한층 더 크게 확대되었다는 현상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입은 피해를 위사(慰謝)하기 위한 위자료액은 800만 엔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명예회복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전기 1에서 검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의 지불에 의해 일정한 정도 위사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심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명예회복 조치로서 『週刊포스트』 지상에 별지 1(생략)과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별지 2(생략)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제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8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5년 8월 19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체손해금의 지불과, 별지 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 2 기재의 조건에 의한 1회의 게재를 요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認容)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61조, 64조, 65조의 규정을,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5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1260호 (2008. 4. 1.) pp. 301~308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일본 판결 2

주간지에 게재된 전 AV 여배우에 관한 기사 중, 전 고제상대가 밝힌 과거의 사생활과 「모사비디오」 영상을 문장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것, 여배우의 활동 중 촬영된 사진 및 AV의 부분 촬영이 본인의 승낙 범위를 넘어, 현재 일반시민으로서 생활하는 여성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 출판사에 22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례

원 고 : 甲野花子
피 고 : 주식회사 芝홀딩스
 대표이사 松下武義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4(7) 제27003호
사 건 명 : 손해배상청구사건
연월일 등 : 2006. 5. 23. 민사 제48부 판결
재판내용 : 일부인용 · 항소
변론종결 : 2006년 2월 28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220만 엔 및 1999년 7월 1일 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해 1,650만 엔 및 이에 대한 1999년 6월 2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가 발행하는 잡지 『週刊スペースエ능』(이하 『피고 주간지』라 한다)에 원고의 프라이버시 및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기사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유명한 AV(Adult Video) 여배우이며 저작활동 및 TV 탤런트 등의 활동을 해온 원고가 각 게재행위에 의해 입은 정신적 손해 및 변호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그리고 기사 및 사진이 게재된 잡지의 마지막 발행일로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1. 전제사실

(1) 원고는 1986년 8월부터 「白井花」라는 예명으로 AV에 출연, 탤런트로 활동하는 한편 저작 활동도 해왔으나 1994년 5월 도쿄도 내의 비즈니스 호텔 2층 테라스에서 실수로 전락하여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은 후 전기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피고 주간지 1999년 6월 17일호(이하 「본건 제2잡지」라 한다) 170쪽 이하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직격 논픽션 adult video 외설 AV삼국지!」, 「北川太郎이 털어놓는 『다이아몬드의 여우들』 ② 유방이 큰 여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黒田櫻의 『아기의 머리』 2개에는 놀랐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이하 「본건 제1기사」라 한다) 및 별지 1, 2쪽 상단의 사진(이하 「본건 제1사진」이라 한다)을 동 잡지 172쪽에 게재하여 1999년 6월경 발행했다(구체적인 기사 및 사진 생략).

제3. 당 재판소의 판단

1.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여배우로서의 활동 및 저작 등

(가) 원고는 1986년 8월부터 AV(Adult Video) 여배우로 활동하면서 「SM 麗奴」, 「SMぼいの好き」, 「愛虐の宴」 등의 작품에 출연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아 잡지에 게재되기도 하고 TV출연, 대학제 등의 강연에도 초대되기도 했다.

(나) 원고는 1987년 경 「自墮落にもほどがある」(타락에도 한도가 있다), 「フルーツ白書」(fruits 백서), 「性の構造」 등을, 88년에는 「パブロフの犬のよだれ」(Pavlov의 개의 군침)를 집필, 출판했다.

(다) 원고는 탤런트로서의 활동과 전기 저작물 등을 통해 자신을 성의 표현자로 자칭하면서 스스로의 섹스관이나 성행위시의 상황, AV 여배우가 되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다.

(2) 원고와 北川과의 관계

원고는 1986년 北川이 AV 감독으로 소속해 있던 「크리스털 영상」(映像)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원고와 北川은 내연관계에 들어갔다. 1988년 北川은 독립하여 「다이아몬드 영상」을 설립했으나 1993년 도산하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해소하고 원고는 일단 친정으로 돌아갔다. 원고는 94년 2월 잡지 「ギャラクシ-」(galaxy)의 취재에 응해, 그때 촬영된 누드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가 동지 94년 3월 16일호에 게재되었다.

(3) 원고가 예능 활동을 중지하게 된 경위

전기 제2, 1 (1)과 같이 원고는 94년 5월 낙상(落傷) 사고로 입원생활을 했는데, 그 직후 신문과 주간지 기사에서는 자살미수, 혹은 자살미수 소동 등으로 보도하여, 원고가 자살을 기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많이 나돌았다. 원고는 또한 사고전인 동년 4월 4일 피고 주간지의 편집데스크인 東山和夫(이하 「東

山」으로 한다) 및 동지 편집장 西村正과 면담, 전기 「ギャラクシ-」(galaxy)지의 내용을 받아 「北川감독과의 만남에서부터 이별까지의 애증의 모든 것」이라는 가제 아래 수기를 집필, 발표할 것을 승낙했다.

그러나 원고는 입원생활 중 예능인의 생활과는 다른 일반적인 보통생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기 수기의 집필 승낙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한편 퇴원 후 원고는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을 위해 AV 및 AV 프로 등에도 출연하지 않았으며, 잡지 등의 취재에도 불응, 종전과 같은 집필활동도 하지 않았다.

2. 본건 제1기사에 대하여

(1) 본건 제1기사 ① 부분에 의한 원고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여부

동 기사는 AV(Adult Video) 「愛虐の宴」 촬영 종료 직후의 원고와 당시의 교제상대 간의 통화내용을 北川の 담화형식으로 소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당시의 교제상대인 남성에게 전화를 했으나 의외로 그 전화에 여성이 나왔을 때의 원고의 당황하는 상황 및 동 교제상대를 비난하는 원고의 언동 등이 소개되고 있다.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적인 사안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로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앞에서와 같이 과거의 교제상대와의 구체적인 통화내용 및 예상치 않은 인물이 교제상대의 전화에 나온 일로 동요를 보인 상황 등은 사생활상의 사실이며, 또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私人)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동 기사의 게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하겠다.

(2) 본건 제1기사 ② 부분에 의한 원고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여부

동 기사는, 원고가 AV에 출연한 사실이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져, 그 결과 원고는 가족들로부터 추방되어 호적도 독립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및 동 사실을 北川이 원고와 함께 여권 신청 시에 알게 되었다는 경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인의 가족관계, 특히 가족으로부터 동일호적을 거부당해 독립된 호적을 만들었다는 사실 등은 사생활상의 사실임이 명백하며,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동 사실을 공표하는 기사의 게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하겠다.

(3) 본건 제1기사 ③ 부분에 의한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무

동 기사는 원고와 北川과의 성적관계, 원고의 섹스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내용 및 동 원고의 고민을 北川이 원고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사인의 이성과의 성적관계, 성적인 고민내용 및 그 고민을 교제상대에게 밝힌 사실이 사생활상의 사실임은 명백하며,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인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동 기사를 공표하는 기사의 게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하겠다.

(4) 본건 제1기사 ④ 부분에 의한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무

동 기사는 원고가 출연하고 있었던 AV(Adult Video)의 인상이 강렬했기 때문에, 원고가 잡지나 TV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잡지의 편집장이나 다른 탤런트로부터 성희롱(セクハラ·sexual harassment)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잡지에 공표되면, 동인이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동 기

사의 독자가 어떠한 인상을 받았을 것인지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직업상 비디오에 출연하는 것과는 다른 사생활상의 사실이며,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있었다고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동 기사의 게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하겠다.

(5) 본건 제1기사 ⑤ 부분에 의한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유무

동 기사는, 그 전후의 문맥을 합쳐서 보면 원고가 北川과의 동거생활을 해소한 약 1년 반 후에, 中野구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로 그쳤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北川이, 원고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친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다.

사인의 자살미수 전력 및 그에 대한 가족과의 관계 등은, 동인의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사생활상의 사실이며, 또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통상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므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며,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통상인의 일반적인 독해(讀解)에 따르면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많은 미디어는 자살미수 혹은 자살미수 소동으로 보도하여 원고가 자살을 도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나, 본건 제1기사가 게재된 당시는 이미 상기 사고 후 5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예능 활동이나 집필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었으며, 상기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에서 지워져가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는 입원 중에도 자살기도를 일관하여 부인했고, 피고 주간지 편집데스크인 東山이 입원 중인 원고를 면회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기사에서도

원고가 자살미수설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게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본건 제1기사 ⑤ 부분에서 北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투신자살미수했다고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상기 기사는 전기와 같이 사회의 관심이 수그러진 시기에 새삼스럽게 단정적으로 원고의 자살미수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개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 본건 제1기사 전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관심사에 근거한 위법성조각의 항변 혹은 명예훼손에 대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한 진실성, 상당성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란, 오로지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흥미 혹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인의 사생활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해 사인의 사회적 지위 및 활동 등이 공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원고는 1994년 6월 이후 여배우나 탤런트로서의 활동이나 집필활동도 일체 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생활을 해왔으며 본건 각 잡지 발행 당시에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원고의 사생활상의 행동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이 있는 공적 지위를 가졌거나 공적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본건 제1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동 기사에는 「北川太郎이 털어놓는 『다이아몬드의 여우들②』」라는 대제목 및 「『사랑과 섹스는 별개』라고?」, 「모친과 친척에게도 소개했다」, 「자신을 잃는 것이 무서워

서...」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가 AV 여배우로 활동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北川에 의한 폭로라는 형태로, 전부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실만 게재되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동 기사 게재 목적에 부합하거나 원고의 AV 업계 및 TV, 잡지 등에 있어서의 텔런트로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 기사의 내용은 독자의 흥미 혹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데 불과하며, AV계에서 한 시대를 휩쓴 유명 여배우인 원고의 인물상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게재한 것이므로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의 자살미수 사실에 대해서는 전기 제3, 2(5)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본건 제1기사에 게재된 사실에 공공성이나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본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본건 제2기사는, 1999년경 일찍이 원고가 출연했던 AV 「SM 麗奴」의 무삭제판이 모사(模寫) 비디오「파렴치한 여자」로 발매된 것을 계기로 동 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게재되었음이 인정된다.

(2) 동 기사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동 기사에는, 원고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과 원고의 성행위 상황이 의음(擬音)과 대사(台詞)를 섞어가면서 상세하게 묘사하는 방법으로 게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성기의 형상(形狀) 등 비닉성(秘匿性)이 높은 신체적 특징 및 성행위시의 구체적인 언동 등은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기 모사 비디오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상기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본건 제2기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원고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포기 및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AV 「SM 麗奴」가 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동 비디오에 출연, 성행위의 촬영을 허용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스스로의 성적 프라이버시를 처분한 것이며, 동 비디오가 유통되는 범위 내에서의 공개에 대해서는 승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는 동 비디오 출연 당시 원본 비디오가 모사 비디오로 유통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원고가 동 비디오의 발표와 발매를 승낙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기의 묘사 등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모사 비디오인 「파렴치한 여자」가 공표, 발매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낙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주간지의 유통범위는 AV의 유통범위와는 다르다. 더욱이 전기와 같이 본건 제2기사가 게재된 당시, 원고는 AV 여배우와 텔런트로서의 활동을 정지한 지 5년이나 경과되어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시기에 원고가 새삼스럽게 과거에 출연했던 작품의 내용을 상세하게 노골적으로 기재한 기사의 게재를 원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므로, 상기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의 동비디오의 공표 및 발매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가지고 본건 제2기사의 게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본 비디오의 출연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모사 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한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본건 제1사진 및 제2사진A에 대하여

(1)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ㄱ) 본건 제1사진은 1986년 6월경 당시의 「크리스털 영상」 사무실에서 피고 주간지 담당 카메라맨이 촬영한 것이며, 그 당시의 설명에 의하면 동 사진은 피고 주간지에 게재될 원고와 北川과의 대담과 함께 게재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ㄴ) 본건 제2사진A는 1985년 8월경 北川이 촬영한 것이며, 그 당시의 동인의 설명에 의하면 동 사진은 당시 발매된 비디오 「SMIほいの好き」의 선전용으로 매스컴에 배포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ㄷ) 본건 제1사진은, 원고가 北川에게 바짝 달라붙어 오른팔을 들고 원고의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보여주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며, 제2사진A는 속옷 차림의 원고가 넓적다리를 벌리고 오른팔을 올려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보여주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2)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얼굴과 몸매가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고 있다. 특히 본건 제1사진과 같이 여성이 내연관계에 있는 이성과 바짝 달라 붙어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보여주는 몸짓을 하는 사진이나, 본건 제2사진A와 같이 속옷차림으로 넓적다리를 벌리고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보여주는 사진은 일반적으로는 수치심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그 공표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표되지 말아야 할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한번 그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의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전기 (1)과 같이 원고는, 본건 제1사진에 대해

서는 피고 잡지의 대담기사에 게재하고, 본건 제2사진A에 대해서는 당시 판매된 비디오의 판매 촉진을 위해 매스컴에 배포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전제 하에 촬영에 동의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상 어느 범위에서 상기 사진의 재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명기한 서면 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이 승낙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사용의 형태, 사용된 매체, 사용된 시기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단하건데, 본건 제1사진에서처럼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보여주는 포즈는 일반 여성인 경우 통상 호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경우 AV 여배우 및 TV 텔런트로서 매스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시대에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상품화하여 널리 원고의 이미지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 겨드랑이 부분 모(毛) 부분을 제외하고는 北川과 함께 촬영한 통상적인 초상사진이라는 점 그리고 본건 제1사진은 피고 주간지에 게재하기 위해 피고 주간지 담당 카메라맨에 의해 촬영되어 피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도 피고에 의한 재사용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전기 제3. 1(2) 및 (3)과 같이 원고가 1994년 6월 이후 AV 여배우 및 텔런트로서의 활동을 일체 정지하고, 위 사진이 게재될 당시에는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白井花」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소개, 논평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 의한 본건 제1사진의 재사용에 대해 원고의 승낙이 미치지 않으며, 위법이 된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건 제2사진A는 겨드랑이 부분 모(毛)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넓적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를 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수치심을 높이는 정도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와 같이 상기사진의 촬영 시에는 당시 발매된 비디오 「SMぽいの好き」의 선전용으로 매스컴에 배포한다는 설명이었는데, 원고에게 있어 이 목적을 넘어 장래에 까지도 원고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진으로서 사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했으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기사진이 게재된 당시 원고는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촬영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본건 제1잡지 발간 시에 본건 제2사진A가 비디오의 선전이라는 범위를 넘어 상기 잡지에 게재된 것은, 원고에 의한 중전의 동의를 범위 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제2사진A의 게재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5. 본건 제2사진B, 제3사진A 및 B에 대하여

(1)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제2사진B는 「SMぽいの好き」, 본건 제3사진A 및 B는 「파렴치한 여자」로부터의 이른바 화상(畫像) 촬영이며, 원고 출연의 AV 영상의 한 화면을 사진으로 게재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본건 제2사진B는 원고의 나체를, 본건 제3사진A는 원고의 나체 및 성행위의 상황을, 본건 제3사진B는 성행위를 하면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는 원고의 표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진의 공표는,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수반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그러한 사진들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이익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기 제3.4(2)와 같이 본인이 한번 그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의 동意的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동意的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3) 전기 각 사진의 내용은, 모두 수정을 요하는 종류의 화상(畫像)은 아니므로 원본 비디오인 「SM麗

奴」의 영상과 다른 점이 없으며, 동 비디오에서 출연을 승낙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동 화상이 비디오의 영상으로 공표되는 것에 대해 승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의 화상 촬영을 그 비디오의 소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선전방법이므로 비디오 출연자는 그 한도에서 비디오 속의 영상이 사진으로 공표되는 것도 용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전기 비디오 출연의 사실에서 전기 각 사진의 공표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도 내에 속하다. 본건 각 잡지가 발행된 것은 「SMぽいの好き」 및 「SM麗奴」의 공표로부터 10년 이상, 원고가 AV 여배우와 탤런트로서의 활동을 정지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1999년 6월경으로, 그 게재의 양태(樣態)를 보더라도 본건 제2사진B는 전기 제3.2와 같이 원고의 사적(私的) 사항을 공표하는 내용의 본건 제1기사에 첨부된 형태로 게재되었고, 본건 제3사진A 및 B는 원고가 그 공표와 유통에 동의했다고는 인정될 수 없는 「파렴치한 여자」의 소개 기사인 본건 제2기사에 첨부된 형태로 게재된 점으로 볼 때, 원고가 본건 각 잡지에 전기 각 사진의 게재를 승낙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기 각 사진의 게재도 불법행위가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에 의한 본건 각 기사의 게재행위 및 본건 제1사진을 제외한 본건 각 사진의 게재행위는 각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61조, 64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판례타임즈』 1267호(2008. 2. 15.) pp. 181~195.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영국 사례

**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잘 담고 있다면
설령 완전히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사가 적절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PCC는 Mr. John Forrester 가 「Sunday Mail」지 2007년 8월 12일자 『타락한 선생의 섹스 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신청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교사였던 시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약혼 중이고 슬하에 아이 하나를 두고 있으며 Aberdeen에 있는 'Sapphire Club'에서 매주 연극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부정확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PCC 윤리강령 1항(정확성)과 3항(프라이버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윤리강령 4항(괴롭힘)과 10항(은밀한 장치와 속임수)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불만신청인은 기사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극은 '섹스 쇼'가 아니라 다소 외설스런 코미디 공연에 가깝고, 자신이 사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와 사귀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으므로 제자와 연애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Kincorth academy'에서 해고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기사 내용 중 클럽 안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부분이 특히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만약 그 사진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았다면 사진 찍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기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클럽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기자들이 2005년 이후 자신과 자신의 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unday Mail」지는 2005년 이후로 불만신청인과 그의 애인을 귀찮게 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불만신청인은 지난 2년 간 어떤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Sunday Mail」지는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 불만신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불만신청인이 공중에게 오락 거리를 제공하는 쇼를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불만신청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Sunday Mail」지는 "그 기사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렇지만 불만신청인이 원한다면 의견을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은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동의했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PCC를 통해 양 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된 상황에서 불만신청인은 태도를 바꿨다.

영국 PCC는 해당 기사의 주요

논점은 불만신청인이 Sapphire Club에서 공연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PCC는 연극을 '섹스 쇼'라고 묘사한 부분과 불만신청인이 'Kincorth Academy'를 떠나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신청인이 명백하게 설명할 기회를 줘야 했다고 판단했다. PCC는 이 두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서한의 제안과 「Sunday Mail」지가 마지막으로 교정한 내용은 균형 잡히고 적당한 반응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PCC는 「Sunday Mail」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PCC는 「Sunday Mail」지가 불만신청인이 만족할만한 표현을 담은 공개서한을 신기로 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철회해 버린 점을 지적했다. PCC는 또 다른 소송을 불량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Sunday Mail」지를 비판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이었음에도 또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C는 추후 수정된 공개서한 내용이 여전히 논쟁이 됐던 주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윤리강령 1항(정확성)에 관한 항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은 경미한 수준이므로 어느 윤리강령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윤리강령 3항(프라이버시)과 10항(은밀한 장치와 속임수)에 관련된 불만신청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불만신청인이 코미디언으로 있는 클럽에서 불만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고객이 공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PCC는 기사가 자신의 신원이나 직업을 감추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3항과 10항을 위반한 사실

이 없다고 판단했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Sunday Mail」지가 지난 2005년 이후 불만신청인과 그의 애인을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unday Mail」지가 혐의를 부정하며 불만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신문의 어떠한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Sunday Mail」지 측이 윤리강령 4항(괴롭힘)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관련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호주 사례 1

지나친 개인정보 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지난 2007년 11월 8일과 9일 「The Daily Telegraph」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에 실린 기사에 대해 기사에 등장한 경찰관이 신청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당시 비번이었던 불만신청인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신원, 주소지, 자녀 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 등을 게재해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그로 인해 가족의 안전과 운택한 삶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he Daily Telegraph」지는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와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중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The Daily Telegraph」지는 경찰 내부의 매체도 피해자인 불만신청인에 관한 정보, 즉 자녀가 있는 비번 경찰관이라는 내용을 이미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보도 자료에서는 불만신청인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개인 정보 보도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개인의 세부 정보를 보도한 이번 기사는 불만신청인과 가족들의 프

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했으며 신문이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호주 사례 2

누구나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언론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호주귀금속 상인협회가 2007년 8월 27일자 「The Sydney Morning Herald」지의 온라인 판 기사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70%의 소비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살 때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끼며 귀금속 상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호주연합통신(AAP)의 설문조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국제 공인 다이아몬드 평가 회사인 호주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DCLA)를 위해서 실시됐다. 이와 비슷한 기사가 news.com.au(the News Limited news website)에도 실렸다.

불만신청인 단체는 해당 설문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 단체는 “문제의 설문조사는 소비자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전부터 다이아몬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끔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온라인 여론조사”라고 항의했다. 또한 불만신

청인 단체는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가 이번 여론 조사를 이용해 호주 귀금속 산업 전체를 헐뜯으려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호주연합통신 측은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가 다이아몬드 산업전반에 관하여 유효하고 권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자신들은 “호주연합통신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자신에게 기사를 전송해주는 통신사들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믿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자신들은 “호주연합통신이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기사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언론평의회는 각

미디어와 그의 웹사이트는 기사의 출처와 상관없이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가 다이아몬드에 관해 전문가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 측이 보도 자료에서 호주 귀금속 상인들의 정직성에 관한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는 제시하지 않고 온라인 여론조사에 익명으로 참가한 불특정 다수의 견해만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음을 지적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호주연합통신이나 「The Sydney Morning Herald」지의 웹사이트 smh.com.au는 그 설문조사의 방법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Sydney Morning Herald」지가 설문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편집장들이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될 경우 설문조사의 진실성에 관해 독자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Sydney Morning Herald」지가 문제의 기사를 발행한 뒤, 설문조사가 온라인

여론 조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웹사이트(smh.com.au)를 통해 호주귀금속상인협회에 정정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호주귀금속상인협회는 온라인 여론 조사에 관하여 비슷한 기사를 실었던 news.com.au(the News Limited news의 웹사이트)가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소송을 철회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여론 조사 보도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밝혔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여론 조사 보도 관련 지침에 따르면 편집자들은 아무나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개 온라인 여론 조사는 설문 작성자 샘플 크기와 설문 문항들이 알려지지 않으며 조사 결과가 적절한 통계적인 샘플선정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가한 응답자들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주의할 것 또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여론 조사와 기타 민감한 문제들에 관한 지침은 호주 언론평의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며 모든 미디어 편집자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했다.

『The Otago Daily Times』지의 편집장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사에 포함한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였음을 시인했다. 편집장은 그 사건에 관한 후속 기사에서 아이들의 이름이 절대로 실리지 않도록 『The Otago Daily Times』지가 특별히 신경 썼음을 알려 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The Otago Daily Times』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실수로 공개했다는 점은 불만신청인과 신문사 측 모두 동감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 윤리강령 5조에 따르면 언론사의 편집장은 ‘아이들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보도할 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미 두 번에 걸쳐 사과 의사가 불만신청인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으며 때로는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번 『The Otago Daily Times』지의 실수는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The Otago Daily Times』지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만신청인이 신문사와 처음 연락해 항의를 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편집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

뉴질랜드 사례

제기된 타당한 불만에 대해 신속한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언론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The Otago Daily Times』지를 상대로 아이들의 어머니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 발행 직후, 『The Otago Daily Times』지에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불만신청인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만날 수 없었고 대신 다른 신문사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만신청인은 담당 책

임자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The Otago Daily Times』지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이 보낸 최초의 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편집장은 “그 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를 통해 불만신청인의 항의 내용을 인지한 후, 공식적으로 사과를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오보’ KBS에 3,500만 원 배상 판결 ‘골프장 납치’ 관련 영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도

애꿎은 시민을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보도한 KBS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3,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골프장 납치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납치 용의자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며 한모(51) 씨가 KBS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9일 판결했다.

KBS는 지난해 3월 1일 ‘뉴스타임’의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이란 기사에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 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OO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 씨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범인들이 한 씨의 명의를 도용해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과 얼굴이 잘못 공개될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가 ‘경찰의 공식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더욱 면밀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은 지난해 2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H골프장 사장 강모 씨와 일행 2명이 괴한들에게 차량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골프장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강 씨의 외삼촌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모의해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2008년 4월 9일

수의과학검역원, 서울신문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양계협회도 “조류독감 과장 보도했다”…1인 시위 예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 서울신문 5월 21일자 1면과 8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취지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병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관은 2일 “검역원의 발표를 왜곡해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비쳐져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수의학과 교수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전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며 지난 16일 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가 유전자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고만 밝혀 조류독감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이 기사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이하 양계협회)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이준동 양계협회장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용진 오리협회 전무, 최정배 계육협회 전무는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서울신문을 찾아가 “조류독감의 위험을 과장 보도했다”며 강석진 편집국장을 만나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영훈 양계협회 자조금사업팀장은 “서울신문이 조류독감 내용을 계속 기사화하는 데 과잉보도 한 측면이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발표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인체 감염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닭·오리 생산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서울신문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도 밝혔다. 기 팀장은 “5월 21일 1인 시위를 벌일 목적으로 서울 남부경찰서에 한 달 기간(5월 21일 ~ 6월 21일) 집회신고를 냈다”며 “이미 다른 집회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잡혀 있어, 실질적으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1인 시위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진 편집국장은 “양계농가들이 기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를 작성한 김승훈 기자도 “팩트만 추린 것이고 주관적인 부분은 기사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8년 6월 2일

법원, KBS '황토팩 방송' 정정보도 판결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KBS 1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탤런트 김영애 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참토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참토원 측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판결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보도 자료 전문.

첫째, 방송내용의 첫가루 방송은 명백한 허위보도로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첫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입이 밝혀졌다.

둘째, 참토원 방영금지가처분 일부 승소결정은 사실이다. 참토원이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보도

는 명백히 허위보도이므로 이에 정정보도하다.

셋째,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방송 부분이다. 일반화장품 기준과 원료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토원 제품은 사용시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쓰면 중금속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반론보도를 하라.

넷째, 간접강제 사항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한 점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을 거부한 점 또한 본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 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간종료일로부터 매주 1회 지연 시마다 3,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김영애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선 불공정한 방송으로 인해 그간 황토솔뭍 제품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혼란을 해소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지경으로 내몰렸지만 그나마 왜곡되어졌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길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토원 관계자는 "향후 빠른 시일 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작진에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방송내용의 부당성을 바로잡아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반론보도직권결정을 내렸다.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건을 법원의 본안 소송으로 이관했고, 지난 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머니투데이 2008년 5월 14일

이렇다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본문과 전혀 다를 정도로 과장 및 윤색된 제목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5일 발간한 '2007 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에 담긴 사례다.

보고서는 지난해 접수된 조정 1,043건과 중재 12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쟁점별 내용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사례에 따르면, 기사 본문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본문의 내용과 달리 과장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독자가 허위사실을 인식

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A모 의원'으로만 표기했다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해당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

또 방송사의 나레이터가 한 말이 아니라 타인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을 뿐이라 해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제보사건을 제보자 일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보도했

다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초상권 사용에 동의했다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초상권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언론사가 경찰에게서 입수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신체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도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뉴시스 2008년 3월 27일

금창태 씨, 명예훼손 소송 패소

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4일 금 사장이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기사 삭제 행위를 접하고 시사저널의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후 이와 같은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는 시정되어야 함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모욕적인 표현들이 칼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 전 사장은 2006년 6월 시사저널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한겨레21 등이 비판적 논조로 칼럼을 쓰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협회보 2008년 5월 21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허위 보도한 오마이뉴스 1억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61단독 김진오 판사는 28일 중앙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중앙〉서 ‘문국현 3위’ 기사 빠진 까닭은?”이라는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문국현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어 3.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3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오후 10시에 지방에 배달되는 42판에는 게재했다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배달되는 43판에는 다른 기사로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를 지면이나 온라인상에 게재한 적이 아예 없었다.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중앙일보는 오마이뉴스 측에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정할 수 없다’

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정정요청이 거둬지고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원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이 이번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08년 2월 29일

인기협, ‘포털뉴스 피해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인터넷기업협회는 19일 포털 뉴스서비스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작년 10월 국회는 뉴스 게시 중지 등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이 법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차기 국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뉴스를 제작하는 주체(신문 및 방송사)와 뉴스를 유통하는 매개자(포털)는 각기 성격에 맞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입법 환경에서는 뉴스와 관련된 피해구제와 기사 삭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맡고 있는 만큼, 포털뉴스 문제 해결은 언론사나 포털사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로 ▲ 피해자가 기사를 내리도록 요청할 경우 포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식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스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 기사 삭제 혹은 정정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통보한다 ▲ 언론사는 포털에게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정정된 기사는 재송고해야 한다는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2008년 3월 19일

김 전 대통령, 로비공작설 보도한 '일요서울'에 소송제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설을 보도한 주간지 '일요서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20일 "일요서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말을 빌어 김 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대북송금,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 등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기자로서

의 직업의식을 망각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작성하고 출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도 법원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자신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같은 언론사인 '일요서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요서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대북송금,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 등을 주장한 김기삼 씨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스 2008년 5월 21일

서울시 초상권 패소로 공모전 사진작가 상금 수십 배 배상금 낼 판

서울시가 초상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공모전 입상사진의 작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금 20여만 원에 사진 소유권과 저작권을 챙긴 서울시가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작가에게 배상금을 물어내게 하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돈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 씨가 '청계천에 게시된 사진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2003년 '청계천, 그 삶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씨는 그 사진 속에서 노점상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 사진은 청계천 오간수교와 고산자교 사이 벽에 벽화로 제작돼 청계천 일대의 옛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들과 함께 전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허락없이 공공장소에 이씨가 찍힌 사진을 전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7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시는 구상권 청

구를 포함한 대처 방안을 놓고 고문번호 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전 입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상금 20여만 원에 사진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모두 시에 내준 사진작가 장모 씨가 상금의 30여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공모전 공고를 내면서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판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일반적인 행정절차이며, 고문번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2008년 5월 29일

KBS, 동아에 패소 손배·정정보도 기각

KBS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지난 19일 KBS가 동아일보 지난해 9월 10일자 <KBS 이사회, 반대의견 묵살 - 의견 강행> 제목의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동아일보와 당

당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KBS 이사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9월 동아일보가 해당

기사에서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고 보도하자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었다.

미디어오늘 2008년 3월 26일

- 강상현(2008).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실효성 문제와 향후 과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강형철(2008). 방통융합시대의 지상파 방송 규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김경호(2007, 가을). 보도기사의 저작권적 가치와 무단 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9, 324-354.
- 김대식(2008). 법 규제기구 운영에 대한 탐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김성후(2008, 4월). 언론시민단체 '오늘의 나쁜 기사' 선정, 포털사이트도 감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8호, 70-73.
- 김영덕(2008). 일본의 방송통신 정책기관의 변천과 함의.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김영욱(2008, 5월). 신문법 개정 방안 : 교차소유와 복수소유를 중심으로.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제3호, 4-32.
- 김창룡(2008). 효율적인 심리진행을 위한 조정기법.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8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논문. 2008. 6. 2. ~ 3.
- 김형일(2008, 봄). 언론보도로 인한 루머의 확대 재생산과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제106호, 92-97.
- 류한호(2008).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세미나 발제문. 2008. 4. 18.
- 박기욱(2008, 5월). 미디어 월드와이드_일본 - 미군 여중생 성폭행 보도의 윤리.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9호, 205-209.
- 박아란(2008, 봄). 미국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106호, 18-28.
- 박진우(2008, 봄). 프랑스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106호, 29-43.
- 성선제(2008, 봄). 2007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106호, 44-57.
- 안임준(2008). 방통융합시대의 공공 방송 재원과 공익성.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양문석(2008). 방송법과 IPTV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 한국방송학회·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 '제20-2차 쟁점과 토론 세미나 : IPTV법의 개정방안' 발제문. 2008. 5. 15.
- 양재규(2008, 3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4 - 기사와 형사처벌의 문제: 타인 간 대화 녹음한 경우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7호, 146-149.
- 양재규(2008, 4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5 - 자살보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8호, 142-145.
- 양재규(2008, 5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6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9호, 150-153.
- 유의선(2008). 미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윤석민, 박아현(2008). 방통융합시대의 프로그램 공익성과 창의성.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윤성욱(2007, 11월). 방송법: 편성규제. 방송문화, 통권 제315호, 48-59.
- 윤성욱(2007, 12월). 방송법: 재허가/방송평가제. 방송문화, 통권 제316호, 48-57.
- 윤성욱(2008).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

- 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이상식(2008).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이아람(2008, 5월). 밀착취재 - 총기탈취 오보 피해자의 고통스런 삶.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9호, 56-59.
- 이용성(2008). 경영과 소유규제 - 신문방송 경영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세미나 발제문. 2008. 4. 18.
- 이재진, 상운모(2008). 포털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이재진, 정영주(2007, 12월).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기업의 공익성 요건에 대한 탐색: 공익이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2, 156-191.
- 이종욱(2008, 5월). 미디어 월드와이드_유럽 - 영국 여아 실종 사건 자작극 오보.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9호, 194-199.
- 장호순(2008). 신문·방송의 경영 및 교차소유, 그 정당성과 위험성.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8년 한국언론법학회 정기학술세미나 - 방송법의 개정방향' 발제문. 2008. 6. 5.
- 장호순(2008, 봄).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언론중재, 통권 제106호, 4-17.
- 정동우(2007, 겨울). 언론보도에 대한 공적 기관과 공적 인물의 법적 대응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분석. 언론과 사회, 15-4, 86-122.
- 정동훈(2008). 포털뉴스 피해 사례 및 현황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정인숙(2008). 지상파 디지털 전환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소비자 홍보 및 복지, 재원, 편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조수정(2008).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8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논문. 2008. 6. 2. ~ 3.
- 지성우(2008). 방송법과 방송구조 개편 -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한 방송관계법의 개정과제와 전망.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세미나 발제문. 2008. 4. 18.
- 최낙진(2008).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 기사의 뉴스 구조 특성 -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제주시방토론회 발제논문. 2008. 5. 23.
- 최민재(2008, 3월). 17대 국회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과 주요 쟁점. 미디어 인사이트, 창간호, 44-71.
- 최영목(2008). 방송발전기금운영에 있어서의 법 제도론적 쟁점 고찰.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8. 4. 24. ~ 26.
- 최우정(2008).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책. 방송인총연합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미나 발제문. 2008. 2. 20.
- 표창원(2008, 5월). '범죄전문기자' 부재가 낳는 지루한 도돌이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9호, 142-145.
- 홍수원(2008, 5월). 미디어 월드와이드_미국 - 무죄추정원칙 포기한 듀크대 성폭행 스캔들 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9호, 200-204.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립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생략)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